

2022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피해자 보호 · 지원의 현황과 과제

2022.4.29. FRI
10:00-18:00

대한민국 서울
KOREA SEOUL

엘타워 멜론홀
서초구 강남대로 213

주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경찰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규원_원광대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의 전망

안성훈_형정원

한국의 피해자학과 한국피해자학회 30년

민건식_명예회장

일본 피해자 보호 · 지원의 현황과 과제

Ota Tatsuya_일본 게이오대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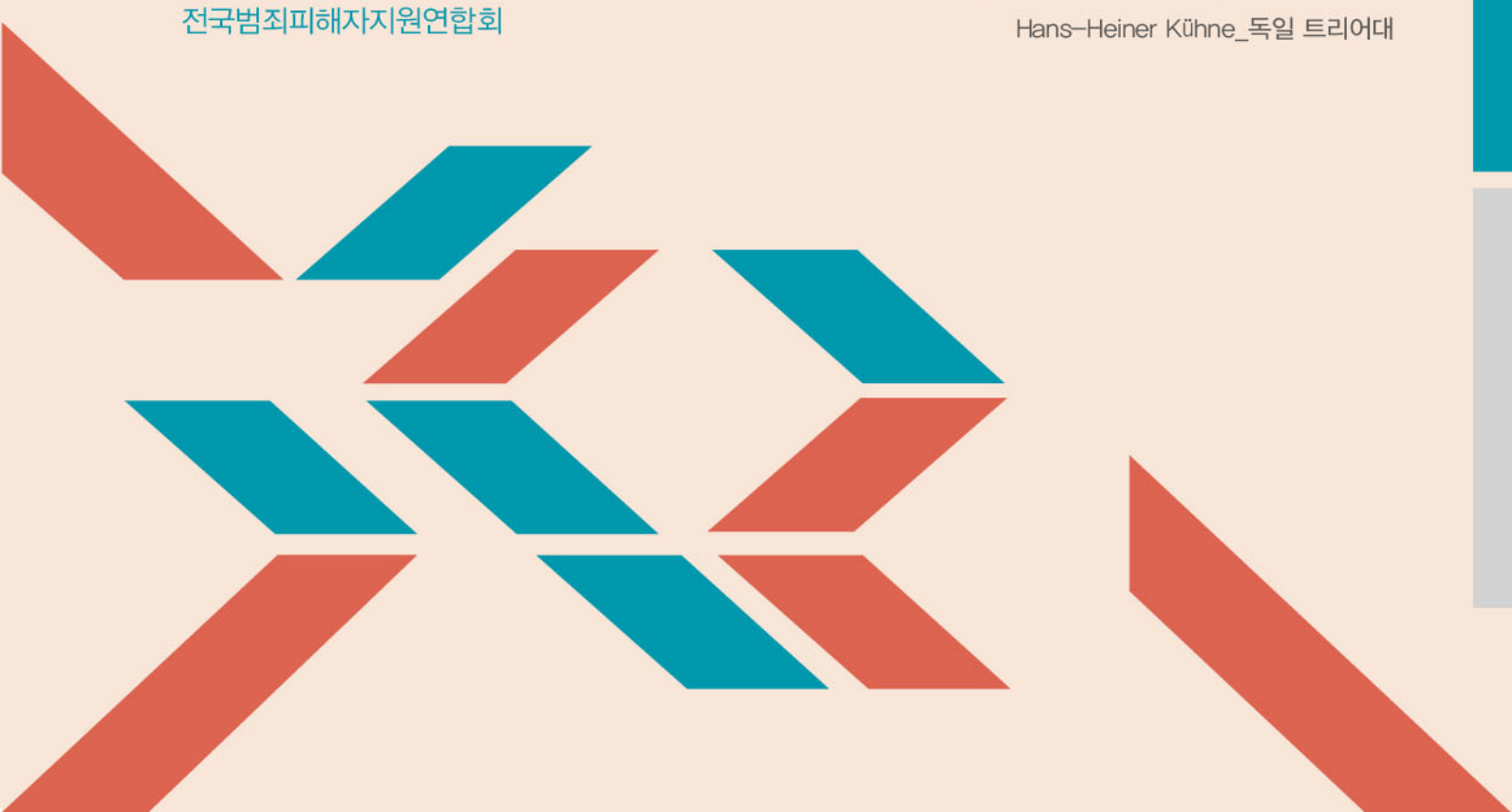
Liaw Yih-Chian_前 타이페이 피해자 지원협회장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G.S. Bajpai_라지브 간디 법학대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Hans-Heiner Kühne_독일 트리어대



2022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피해자 보호 · 지원의 현황과 과제

2022.4.29. FRI
10:00-18:00

대한민국 서울
KOREA SEOUL

엘타워 멜론홀
서초구 강남대로 213

주최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경 찰 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규원_원광대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의 전망

안성훈_형정원

한국의 피해자학과 한국피해자학회 30년

민건식_명예회장

일본 피해자 보호 · 지원의 현황과 과제

Ota Tatsuya_일본 게이오대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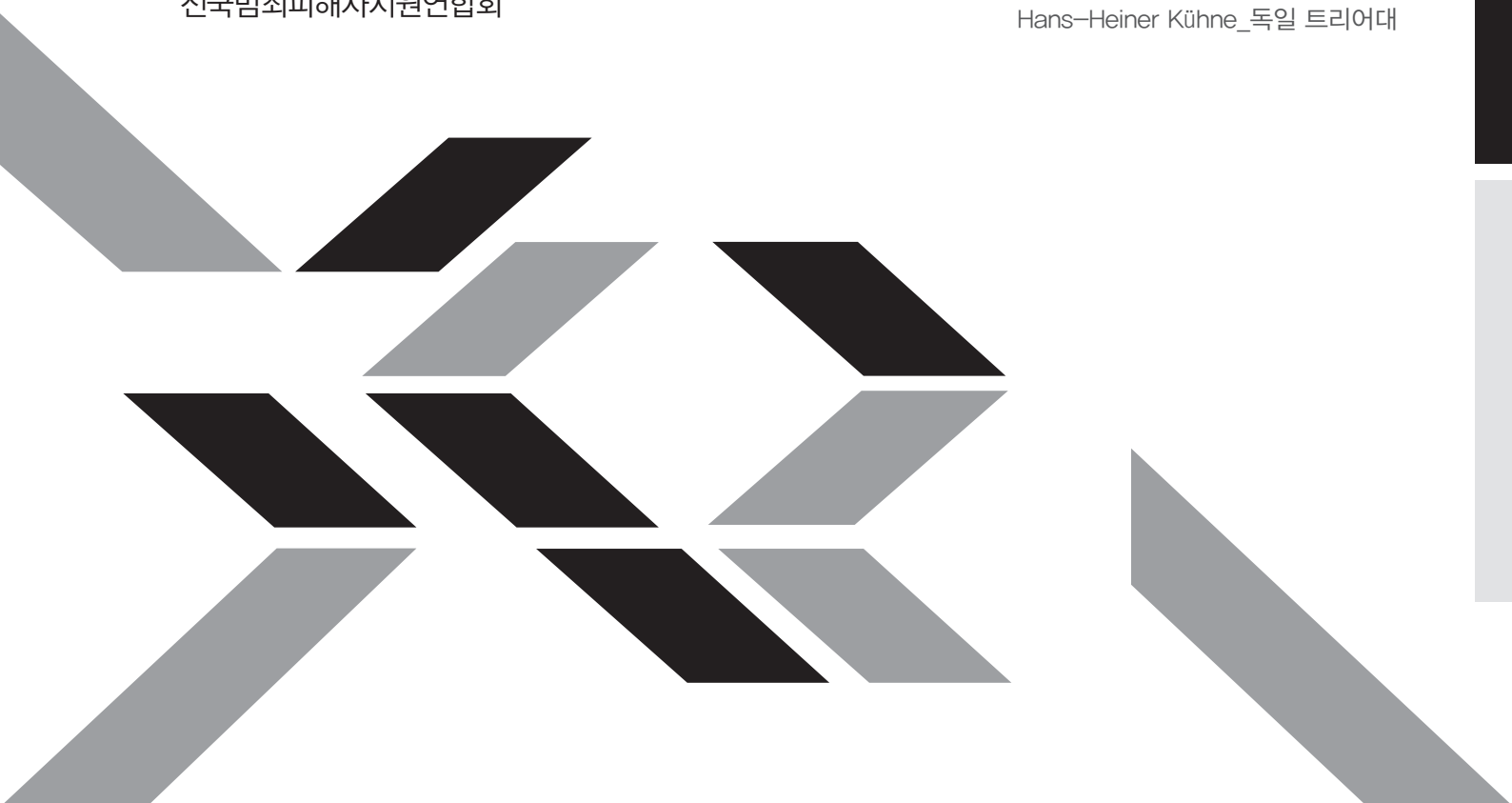
Liaw Yih-Chian_前 타이페이 피해자 지원협회장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G.S. Bajpai_라지브 간디 법학대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Hans-Heiner Kühne_독일 트리어대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22. 4. 29.(금) 10:00~18:00
- 장소 : 엘타워 멜론홀(서초구 강남대로 213)
※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중계 병행
- 주최 :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경찰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세션별 주제 및 행사 참여자>

시 간	행사 내용
09:30~10:00	◆ 참석자등록 (전체사회:김혁 총무간사)
오전행사	
개회식 10:00~10:15	◆ 개회사 - 원혜욱(한국피해자학회장) ◆ 축 사 - 유관학회 학회장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세션 (10:20~11:20)	▶ 발표제목 :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사회자 : 김혜정(영남대) 발표자 : 장규원(원광대) 토론자 : 배상균(형정원), 김혜경(계명대)
11:20~11:30	휴식
2세션 (11:30~12:30)	▶ 발표제목 :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망 사회자 : 황태정(경기대) 발표자 : 안성훈(형정원) 토론자 : 김재희(성결대), 김예원(변호사)
12:30~14:00	점심

오후행사	
환영사 등 (14:00~14:20)	◆ 환영사 - 원혜욱(한국피해자학회장) ◆ 축 사 - 박범계(법무부장관), 하태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지용(대검찰청 형사부장), 남구준(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갑식(전국범피연합회장)
기조강연 (14:20~14:40)	▶ 한국의 피해자학과 한국피해자학회 30년 강 연 자 : 민건식 명예회장
14:40~14:50	휴식
1세션 (14:50~15:50)	▶ 일본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Ota Tatsuya(일본 게이오대) ▶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 Liaw Yih-Chian(前 타이페이 피해자 지원협회장)
15:50~16:00	휴식
2세션 (16:00~17:00)	▶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G.S. Bajpai(라지브 간디 법학대) ▶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발표자 : Hans-Heiner Kühne(독일 트리어대)
17:00~17:10	휴식
종합토론 (17:10~17:50)	▶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 토론 사회자 : 김지선(형정원) 토론자 : 김진희(춘천지검), 심보영(경찰청), 송귀채(서울북부센터)
폐 회 식	
17:50~18:00	종합정리 및 폐회사

목 차

〈오전행사〉

【1세션】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1
------------------------------	---

사회자 : 김혜정(영남대)

발표자 : 장규원(원광대)

토론자 : 배상균(형정원), 김혜경(계명대)

【2세션】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망	41
--------------------------------	----

사회자 : 황태정(경기대)

발표자 : 안성훈(형정원)

토론자 : 김재희(성결대), 김예원(변호사)

〈오후행사〉

【기조강연】 한국의 피해자학과 한국피해자학회 30년	65
------------------------------------	----

강연자 : 민건식 명예회장

【1세션】 일본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	77
----------------------------------	----

발표자 : Ota Tatsuya(일본 게이오대)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전망	109
-------------------------------	-----

발표자 : Liaw Yih-Chian(前 타이페이 피해자 지원협회장)

【2세션】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147
------------------------------------	-----

발표자 : G.S. Bajpai(라지브 간디 법학대)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163
-------------------------	-----

발표자 : Hans-Heiner Kühne(독일 트리어대)

〈종합토론〉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181
---------------------------	-----

사회자 : 김지선(행정원)

토론자 : 김진희(춘천지검), 심보영(경찰청), 송귀채(서울북부센터)

1

SESSION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사 회: 김혜정 (영남대)

발 표 : 장규원 (원광대)

토 론 : 배상균 (행정원)

김혜경 (계명대)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 규 원*

한국피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世代)라는 이름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 한 세대 동안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된 한국피해자학회를 기념하고, 더욱 성숙한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회고), 새로움을 찾자는 자리라 하겠습니다(전망).

그러한 뜻깊은 자리에 ‘회고’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 했습니다. 사양해야 했고 양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능력이 따르지 않기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조 강연에 학회 창립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에 마냥 거절만 할 수 없었습니다.¹⁾ 그래서 그저 회고(回顧)의 의미대로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만용이란 것 잘 압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논문의 형식이 아닌 편한 글로써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I. 회고를 위하여

한국피해자학회 학회지 《피해자학연구》를 처음 내놓은 1992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당시의 형편을 가늠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자면, 피해자학 관련 주제가 낯설다는 이유로 학회지 원고 모집 자체가 쉽지 않았다. 물론 이전에도 피해자학 연구는 분명히 있었다.²⁾ 학위논문으로서,³⁾ 해외 파견검사 연구논문집 또는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등에 실린 파견공무원 논문으로서,⁴⁾ 그 밖의 일반논문으로서 피해자를 주제로 한

* 원광대학교 교수

- 1) 한국피해자학회의 탄생과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민건식 명예회장의 기조 강연에서 들을 수 있다. 한국피해자학회를 창립하고 이끌었고, 지금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 2) 흔히 피해자학(被害者學)은 ‘새로운 학문’이라는 이름표가 따라붙는다. 오랜 역사를 가진 법학이나 의학에 비교하면 피해자학은 젊기는 하다. 문헌상 1940년 후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에 대한 소개는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옮김, 《피해자학입문》(1999)을 참고할 수 있다.
- 3) 피해자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으로는 1973년 권문택, “刑法上 被害者 側面에 관한 研究”(박사학위)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金善惠, “犯罪被害者補償制度”(석사학위, 1982); 이창운, “刑事被害者補償制度에 관한 一考察”(석사학위, 1983); 황규옥, “피해자학연구를 위한 소고”(석사학위, 1983); 金丙柱, “犯罪被害者補償制度에 관한 研究”(석사학위, 1983); 南英燐, “被害者學小考”(석사학위, 1984); 孫基浩, “犯罪被害者の 保護-被害者補償制度를 中心으로”(석사학위, 1985); 李恩雨, “被害者學研究”(석사학위, 1985); 金英玉, “犯罪被害者補償制度”(석사학위, 1986); 韓基光, “犯罪被害者補償制度”(석사학위, 1986); 이학철, “우리나라 犯罪被害者補償制度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1988); 李福炫, “일본 범죄피해자금부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1989)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자료는 1992년 이전의 학위논문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는 의외로 상당하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새로운 학문으로서 피해자학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 즉, 연구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다. 초기의 한국피해자학회 학회지 《피해자학연구》의 사정도 당시의 피해자 연구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⁵⁾

피해자학은 피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대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⁶⁾ 그 주된 연구 분야는 범죄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피해조사를 통한 피해 취약요인 등의 경험적 연구,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역할과 양형에서 피해자 책임,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방안과 지위 향상의 방안,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피해 회복, 피해자의 보상과 권익 보호 등을 꼽는다. 이러한 피해자학 연구 성과는 형사입법과 실정 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된다.⁷⁾ 한편 전문화된 개별 지식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학도 다른 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

현재의 피해자학은 일반적으로 연구대상과 영역이 학문으로서의 분명한 자리매김을 했고, 학제 간 연구도 활발하다. 단순한 소개나 일부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범죄피해조사,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실체 형법에서의 피해자 역할, 범죄피해자 보호와 구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 국제기구에서의 피해자 운동과 입법 경향 등 가히 전방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연구의 성과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과 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진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日新又日新). 피해자학 연구는 한 세대를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도 새로워지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오늘의 주제어인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의 의미를 새겨본다. 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는 헌법에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와 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보호’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피해자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

4) 가령 金慶漢, “犯罪와 그 被害者”(1983); 卞在一, “被害者學小考”(1983); 金根大, “強力犯罪에 대한 搜查와 被害者保護”(1987); 金雄地, “犯罪被害者保護對策”(1988); 朴贊熙, “犯罪被害者保護對策”(1991) 등이 있다. 여기서 제시한 자료는 1992년 이전에 게재한 논문에 한정하였다.

5) 당시 한국피해자학회는 피해자학 연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각국의 피해자학 동향”이란 이름으로 특집을 기획 연재한 바 있다. 《피해자학연구》 제6호(1998년)에는 영국(이경재), 독일(장규원), 제7호(1999년)에는 남아프리카(이순래), 미국(최석운), 일본(김용세), 프랑스(박강우), 대한민국(김성돈), 그리고 제8호(2000년)에는 호주(노성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류전철), 캐나다(박철현), 스칸디나비아 국가(진수명)의 피해자학 연구 동향에 관한 글을 실었다.

6)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2011, 9쪽.

7) 오영근, “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 2016, 269-270쪽.

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기본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와 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조치를 꾀하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지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난처 제공, 정신적 또는 심리적 부조, 재활 지원, 그 밖의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와 피해자지원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에 한정하거나,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이유는 없다. 피해자보호나 지원의 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정신적·심리적 부조나 법률구조 등의 모든 피해자 대책을 뜻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보호와 피해자지원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피해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 대책도 형사정책 일부를 이루며 일반 사회정책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범죄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고통은 범죄자, 즉 가해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므로 피해자 대책은 범죄 대책 또는 범죄자 대책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이념을 비롯하여(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제4조, 제5조).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꾀하고 있다(제12조).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구조금 지급의 근거와 요건을 정하여(제4조~제6조 참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법인(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 참조). 우리나라 피해자지원센터의 특징은 검찰이 후원하여 많은 센터가 전국 검찰청별로 센터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범죄예방 지역협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지원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또한 형사조정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제41조~제46조). 형사조정은 회복적 이념을 실천하는 대표적 제도이다.⁸⁾ 문제는 형사조정 제도가 회복적 사법

(이념)이 꾀하는 방향에 맞느냐는 점이다.

오늘날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 필요성과 가치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피해자학은 피해자 대책을 연구하는 독자성이 있는 학문이다. 그동안 범죄자의 처벌과 처우를 통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정의를 추구했다면, 피해자학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 글은 먼저 피해자보호와 지원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자 한다(II). 본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는 범죄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이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오랫동안 범죄자(가해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죄 해결에는 피해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서서히, 어쩌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지위가 논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생긴 고착된 범죄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의 사고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III). 마지막으로 되돌아봄(회고)을 정리한다(IV).

II.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헌법은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제30조 참조).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형 집행에서 인권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1.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1)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제2조 제1항),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제2항),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제3항) 등을 가진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제의 구축과

8)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2007, 394쪽; 구현자, “경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2018, 15쪽.

운영, ②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③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제4조).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른 국가 의무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참조).

그동안 제1차(2007년~2011년), 제2차(2012~2016), 제3차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은 나름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여기서는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 변화를 살펴본다.⁹⁾

제1차 기본계획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실현, 범죄피해자의 권리 의식 확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한 인권 선진국 실현, 시민사회에 함께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꾀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과 관련해서, ① 증인신문을 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 방법 마련하여 법적 절차적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진술권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② 19세 미만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공판·구금·형 집행 상황·출소 일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알권리 강화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기본이념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즉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지원, 진술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해 변호인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원하여,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 신뢰관계인 동석 범위를 넓혀, 아동 또는 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여 가해자와 그 주변인의 위협이나 언론과 일반인의 무

9)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 2006;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2012;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2016; 김근모, “한·일 양국의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비교 연구”, 2019; 김지선·김성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2015;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관점의 변화: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설립에 즈음하여”, 2021 참고.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4차 기본계획(2022~2026)의 논의는 2021년 5월 14일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자료집을 참고할 수 있다.

분별한 호기심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사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에 피해자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①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제도의 실효성 방안 마련과 이행하지 못한 기존 정책 과제의 재추진, ②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의 성폭력, 아동과 장애인 혹은 강력범죄 피해자에서 일반 범죄피해자로 확대하였다. ③ 정책추진 체계의 기반 정비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 등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종사자의 역량과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3차 기본계획의 기본이념은 ‘범죄피해자의 인권 존중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으로 2차 기본계획의 이념과 큰 차이는 없으며, 사건 진행에 따른 정보 제공, 피해자 열람 등사권의 확대, 피해자 권리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많은 점에서 특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2장 기본권 규정에 형사절차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제12조, 제13조, 제27조~제30조).

1987년 개정 헌법에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에서 의견진술권(제27조 제5항)을 규정하였다. 헌법의 범죄피해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공판정 진술권을 규정하였다(제294조의2). 이후 범죄피해자를 위한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¹⁰⁾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이 종합적인 기획하에 체계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즉흥적, 단말마적, 압축적, 하향식’의 피해자 정책이라는¹¹⁾ 지적과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본계획이 시행된 해(2007년)를 기준으로 ‘강산이 한번은 변했다.’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이 다중의 의지를¹²⁾ 모아 기본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범죄피해자 관점의 사고(思考)가 아닌 국가 주도의 기획과 시행이라는 인상이다. 국가 공조직을 통해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꾀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행정과 사법 체계의 여러 원칙과 절차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 유독 형사 절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199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등이 있다.

11) 김근모, 앞의 글, 2019, 176쪽; 김성돈, 앞의 글, 2007, 343쪽.

12) 예컨대,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등 9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또한 실무위원회는 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하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비롯하여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시행령 제15조). 그 밖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차적 규정을 많이 기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태도에 따라 권리 중심의 피해자 정책을 피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¹³⁾

인권이나 피해자보호 또는 지원은 특히 형사사법 구성원의 절차탁마(切磋琢磨)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한 곳에 몸담고 있기에 일 처리(행정처리)에 관행적으로 풀 어갈 수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도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하고, 담당 구성원도 부단히 관행 등을 ‘깨뜨려야’ 한다.

2.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가. 형사절차와 피해자 권리

여기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를 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1)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척이나 지정고소권자 등 고 소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수사단서의 지위를 갖는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 자는 형사절차를 시작하고 종결하는 데에 있어서 그 역할은 상당하다.

피해자는 범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다고 할 수 있고, 범죄 사건의 처음과 끝을 직 접 체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서로 아는 사이라면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중요 참고인으로서 조사 대상이 된다(제221조 참조). 또한 피해 자는 중요한 증인으로서 증인신문의 대상이 된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참고인조사에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추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제246조).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와 관 련하여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가 공소제기 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소추와 처벌을 원한다 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범죄피해자로서 재정신청은 검사의 최종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권리이며, 또한 이런 피해

13) 피해자보호와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비판적 논리는 김근모, 앞의 글, 2019; 김성돈, 앞의 글, 2007; 김지선 · 김성언, 2015; 김혜경, 앞의 글, 2021 참고.

자의 권리는 공판절차 시작에 대한 참여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신청은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의미도 새길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범죄피해자가 항상 가해자, 즉 범죄자의 소추나 처벌을 원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추가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현재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그 소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의 의사는 기껏해야 정상(情狀)으로서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다. 한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약식절차는 일반적으로 형이 가벼우므로 피해자의 불만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 약식절차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가 관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소제기 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의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처벌 감정에 대한 배려도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하는 단계이다.

소송은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다. 법원은 재판하는 주체이며,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 주체이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주체이다. 소송의 주체는 나름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소송의 주체는 아니지만, 공판단계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배려가 따라야 한다.

피해자는 범죄 사건의 직접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공판절차의 단계에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는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제146조).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삼자이다. 범죄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증인이다. 증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는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고(제151조, 제161조 참조), 또한 증언거부권도 인정된다(제148조, 제149조 참조).

나. 알권리와 피해자 권리

(1) 알권리는 누구나 누리는 기본권의 하나로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알권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하나가 아니라 정보요구권과

적극적으로 정보전달체계에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⁴⁾

헌법은 알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다.¹⁵⁾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자유권과 청구권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헌재 1989.9.4. 88헌마22). 자유권적 알권리는 정보에 그 누구의 간섭 없이 접근하고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청구권적 알권리는 자기의 의사나 여론의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대상의 제거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자유권과 청구권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그의 헌법적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알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근거한다고 하였다(헌재 1991.5.13. 90헌마133; 헌재 2006헌바75, 2010.7.29. 참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알권리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알아야만 자유로운 의견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알아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므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인 권리이다. 한편 누구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알권리는 자기결정과 인격 발현의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이다.¹⁶⁾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정보접근권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여 차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요건이 된다. 즉 가해자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피해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둘 수 있고, 수사기관도 통지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 제공은 단순한 인격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 참여를 비로소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의 출발점이다.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정보 제공의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

14) 심미선,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2020, 6쪽.

15)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2011).

16) 한수웅, 헌법학, 2021, 787쪽.

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① 수사 관련 사항(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 중지, 이송 등 결과), ② 공판 진행 상황(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③ 형 집행 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④ 보호관찰 집행 상황(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이다(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기관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항).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제4항).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제259조의2). 한편 검사는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한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1항, 제259조의2 참조). 불기소처분 통고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에게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제259조).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처분의 취지는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도 새길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10.7., 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한 피의자, 사건 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69조 제1항).

‘경찰 수사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22.1.4., 일부개정)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① 신변 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②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③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범죄피해자 정보접근권의 근거 법령 상호 간에 조화를 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

송법 제259조의2는 정보 제공의 범위를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는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광범위하게 정보 제공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의 주체, 정보 제공 신청이 필요한 지 여부, 정보 제공의 제한 사유 제시 여부 등에서도 법령 간 차이가 있다.¹⁷⁾

다.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을 다시 기억해 이야기해야 하고, 자칫 말을 잘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까 두려워할 수 있다. ‘신뢰 관계있는 자의 동석 제도’란 이런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등으로 제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피해자 등에게만 인정하던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일반 범죄에도 확대하였다. 여기서 동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신뢰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나이·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위한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동석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17) 김재민,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21, 77쪽.

사를 결정하거나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나 피고인의 나이·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법관의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의2). 국적의 시정도 고려하기에 외국인 피해자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도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다.

(2)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공판절차나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한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에서 그 범위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할 때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나 노인·아동 학대 사건에서 노인·아동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할 때도 신뢰관계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제2항, 아동복지법 제28조 제2항).

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피해자 변호인 제도

(1) 성폭력 범죄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와 다르다.¹⁸⁾ 형사절차에서 당사자 지위의 피고인과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 증인에 불과한 피해자 지위에서 오는 차이 때문이다.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관리하며 헌법에 명시된 방어권을 보장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에 반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법무부가 관리 주체이며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자문 등 보충적 역할을 한다.

18)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2012, 298쪽.

피해자가 수입 비용을 부담하는 사선 변호사와 달리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낸다. 수사기관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돕는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 때 동석, 보복 위험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조치 강구, 재판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 진행에서 피해자를 배제할 때 문제 제기, 공판 검사와의 협의까지 그 역할은 상당하다.

(2)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한 보호와 지원의 제도는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제도 중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다. 피해자 변호인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적 관계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없고 그에게 부여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부여하여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한다.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평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와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변호인 조력이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된다. 제한적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피해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가능한 한 권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에 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 형사소송법도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고소권 대리 행사(제225조), 피해자 진술 비공개신청(제294조의3),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제163조의2), 공판기록 열람 등사(제294조의4) 등의 권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 즉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거나, 범죄피해구조금을 청구하는 등 변호사를 통한 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변호인의 조력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으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답변해 버릴 위험에 대해서도 방어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6f조). 이 규정에 따라 모든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조력자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피해자신문에 참여할 권리, 심리 비공개청구권,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권 등을 고유권으로 가진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 조력하는 피해자 변호인제도는 피해자의 또 다른 권리로 고려되어야 한다.

3. 피해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 처벌과 처우, 그리고 원상회복

범죄피해자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처벌(punishment)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처우(treatment)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복귀, 또는 범죄자로부터 원상회복(restitution)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듯 범죄피해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목적 중에 하나 또는 부분적 결합을 추구한다.

(1) 범죄자의 처벌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다.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형벌은 응보를 본질로 하며 책임원칙에 따르면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을 가진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응보적 책임 형벌만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범죄의 다양화, 누범과 상습범의 격증을 비롯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자, 알코올이나 마약중독자와 같이 형벌의 위하적 효과나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 못하는 범죄인에게는 제재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에 행위책임과는 별도로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방위를 위한 새로운 형사제재가 요구되었다.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보안처분이다. 형벌과 보안처분을 근본으로 하는 형사제재의 체계를 ‘형사제재의 이원주의’라 한다. 이렇듯 형사제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보복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2) 일부 범죄피해자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형사제재로 범죄자를 확실히 응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그래서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 잘 아는 사이인 연인, 가족, 친인척, 이웃, 급우, 또는 동료면 처벌보다는 그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되기를 바란다. 즉 처벌보다는 어느 정도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사회복귀는 피해자들과 사회 모두에 대해 각각 한층 진보된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책이 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는 형벌이나 사회복귀보다 원상회복을 원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고 청구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 범죄자의 원상회복은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원상회복은 일단 범죄자의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보상하여 구제한다. 이를 범죄피해 보상제도라 한다.

범죄피해자 보상의 법적 성격을 놓고, 국가가 범죄에 대한 예방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국가가 생활 곤궁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범죄피해자에게도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국가가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국민의 세금에 의한 위험의 분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등이 있다.

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②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나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제16조).

나.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의 처벌, 범죄자의 처우, 또는 자신들을 위한 원상회복이나 피해보상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건 간에 국가가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주기를 원한다.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관심 부족 또는 무관심, 권한 남용, 또는 사실 조작 등이다.

피해자의 욕구(needs)에 들어맞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활동은 국가(또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인 형사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수사, 재판, 처벌을 본질적인 업무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범

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은 ① 고소와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소환과 법원에의 출두를 비롯하여 증언 등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 ② 생계지원과 생활 부조, 취업 지원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③ 응급조치와 구호 활동,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 등의 의료 지원, ④ 즉각적인 개입과 장기적인 심리적 치료 등 심리상담과 지원 등, ⑤ 범죄피해 현장의 정리, 이사 등 다양하다.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응급조치와 구호 활동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손상이 일어나므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리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적 처우와 심리적 상담 등의 조치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피해의 결과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범죄 사건 현장이 어지럽혀져 있다. 혈흔이나 사체와 같은 사건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수사를 위한 현장보존이 필요하겠지만, 수사상 필요한 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현장 정리를 위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범죄사건 이후에 시작되는 형사적·민사적 문제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들과 더불어 일부의 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소한 이상과 같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면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는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를 위한 활동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간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민간차원의 피해자지원에는 제도적,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원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¹⁹⁾ 이에 따라 종래 산발적으로 활동해온 여러 민간단체가 전국적

19) 범죄피해자 대책에 관한 입법화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는 1960년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이다. 196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같은 해 영국,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국가보상제도가 정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는 1970년대에 시작된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활동 시기이다. 1974년 영국의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VS), 1975년 미국의 피해자보호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 1976년 독일의 WeiBer Ring 등과 같은 민간 지원단체가 등장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형사절차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유엔의 '1985년 피해자 권리선언' 등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형사 절차상의 지위 향상을 피하도록 요구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는 1990년대 이후로서 범죄피해자 등의 법적

인 연계망을 구축하게 되고 국가기관과의 협조와 재정지원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지원단체

국가란 무엇일까? 어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이고, 그런 국가의 구성원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눈을 돌려 국가가 행하는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국가는 대체로 불만의 대상이다.

(1)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놓고도 어떻게 국가를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방향과 그 답이 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리하여 말할 때, 서구사회는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문제를 이웃들이 모여 민간단체가 주도했다고 한다.²⁰⁾ 그에 반해서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정부가 민간단체의 성장에 관여하고 그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입한다.²¹⁾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이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민간)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제7조 참조), 이때 그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또한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국가는 이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감독의 권한이 있고,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그 대부분이 재정지원이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도 상당히 많다. 2019년 기준으로 59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개의 스마일센터, 72개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67개의 아동보호전문기

보호와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의 정비 시기라 할 수 있다.

20)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옮김, 앞의 책, 266-279쪽.

21) 김성언,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현실 진단: 주요 쟁점의 정리와 발전 방향의 탐색”, 2021, 14쪽.

관, 66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08개의 가정폭력 피해상담소, 168개의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32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9개의 해바라기센터, 18개의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의 많은 민간기구와 시설이 각 지역에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²²⁾

(2) 경찰과 검찰 또는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은 실정법의 한계가 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 사이에는 해소할 수 없는 정서적인 틈도 존재한다. 즉 범죄피해자의 경우 국가작용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또는 기타의 국가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꺼리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로 인하여 오히려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민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민간 지원단체의 하나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경제 지원, 심리 지원, 법률 지원, 주거 지원, 그밖에 59개 전국 지역 센터의 특성의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돕고 있다.

경제 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활비, 장례비, 학자금, 병간호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는 지원을 말한다. 심리 지원은 범죄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 또는 집단 치유프로그램(자조 모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률 지원은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또는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 모니터링, 법정 동행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특징은 검찰이 후원하여 많은 센터가 전국 검찰청별로 센터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범죄예방지역협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을 꼽을 수 있다.²³⁾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22) 김성언, 앞의 글, 3쪽.

23)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피해자지원센터는 김천·구미의 피해자지원센터를 꼽는다. 2003년 9월 설립되었으며, 의료, 법률 상담 전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재정은 김천시와 구미시의 보조금, 범죄예방지역협의회 후원금 및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조균석, “피해자지원센터의 제도약을 위한 제언: 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2016 참조.

Ⅲ. 더불어 살기

1. 분쟁 해결의 방안들

가. 사법절차의 한계

(1) 범죄가 발생하면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발견하고 증거를 찾고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죄의 사실을 놓고 따지고 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범죄자의 행위 규명과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은 사적 복수가 가능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형벌의 부과와 집행 권한’이 국가에 있다.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이 세워지기 이전, 피해자가 직접 피해보상, 즉 복수를 위해 나서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벌의 내용과 정도를 법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국가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형사사법의 정의는 이루어졌다. 근대국가 이후 권력자들은 사람을 통제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했다는 푸코(Michel Foucault)의 주장이나, 국가란 폭력과 강권력을 독점으로 행사하는 정치 결사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Max Weber)의 주장이 낯설지 않다.²⁴⁾ 그러한 국가권력 통제 기제에 따라 국가기관과 범죄자가 나뉘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2) 분쟁과 갈등이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쟁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시법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은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형사사법 절차로 진입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사법절차는 법에 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이는 곧 가해자도 그 상대방인 피해자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사법절차를 통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를 위한 배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한계 너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공동체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를 꾀하면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 행사에

24) 미셸 푸코/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2020; 막스 베버/박상훈 옮김, 소명으로서의 정치, 2021 참고.

서 소홀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도 회복의 과정에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시키자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회복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사사법 정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융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다.

나. 회복적 정의

(1) 범죄자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은 처벌이지만, 또 다른 대응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다. 고대 게르만 인들은 살인도 일정한 금전으로 속죄받았다.²⁵⁾ 분쟁과 갈등 상황의 지속은 공동체 생활에 위협하므로 피해자 가족들은 공공복리의 장점을 살려 보상체계를 받아들였다. 게르만 시대부터, 그리고 중세까지도 속죄금은 피의 복수를 받지 않기 위해 살인자나 살인자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는 금전이었고, 이는 사적 복수의 반복과 남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였다. 보상체계를 통한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것이다.

범죄자를 배척하기보다는 회복(restoration), 포섭(inclusion), 또는 보상(restitution)의 관점에서 끌어안으려 했다. 보상과 회복적 이념의 체제는 질서를 회복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평화를 되찾고,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회복적 이념의 역사적 기원은 인간이 최초로 무리를 지어 살던 시대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회복적 정의는 결코 새로운 흐름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형사제재는 돌고 도는 유행과도 같다.²⁶⁾

(2) 회복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피해자를 생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날 회복적 정의는 많은 논의를 거쳐 이제는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복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며, 그 해결 과정에 지역사회가 관여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적극적인 후원이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통제나 간섭이 아닌 최소한의 지원이나 후원자 역할에 족해야 회복적 공동체 사회를 향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회복적 절차를 통해 나온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해줘야 한다.

배척이 아닌 끌어안음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단절이

25) 박상기, 독일형법사, 1993, 37쪽 이하 참고.

26) 예를 들어 지금도 사형이 있고, 조선 시대나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교도소에 가두고 감옥에 가뒀으며 동굴에 가뒀었다. 벤담(Jeremy Bentham)이 꿈꿨던 파놉티콘은 카메라의 눈으로 곳곳에 깔려있다. 주물로 만든 족쇄는 첨단 디지털의 전자발찌로 나타났다.

아닌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회복적 정의는 충분히 존재의 의미가 있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하듯이 이전의 형태와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날 요구되는 내용으로 채워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복적 정의의 개념 정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제된다. 무엇보다도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치유를 통해 조화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같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는 가능한 한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나름의 제재를 정할 수 있고 그렇기에 관련자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3)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용어가 한데 섞여 쓰이고 있다. 저스티스(justice)는 ‘공정함’, ‘정의’, ‘사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 같은 듯 달리 이해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의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의 대응 개념이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회복’(回復)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치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듯이 회복을 사용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 사용이 의미론적으로도 낫다.

형사사법은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더 나아가서는 범죄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까지 문제 해결 주체로 끌어들이고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화해 및 피해배상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평화 회복을 화두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논의의 영역이 형사사법에 한정하거나, 연계되어 쓴다면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2. 회복적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²⁷⁾ 회복적 프로그램은 형사사법 절차의 단계마다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의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 단계에서는 시행하는

27) 잘 알려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지역사회와 가족 그룹 회의(community and family group conferencing), 지역사회 참가에 의한 판결 선고(circle sentencing), 회복적 보호관찰(reparative probation) 등이 있다.

회복적 경찰 활동, 검찰 단계에서는 시행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대표적인 회복적 프로그램이다.²⁸⁾

일반적으로 회복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말한다.²⁹⁾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참여가 가능한 모든 사람이 범죄를 둘러싼 여러 환경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이다. 둘째,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셋째, 형사절차의 결과인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이다. 넷째, 전통적 형사사법 절차와 형사제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잠재된 분쟁 원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피해자의 현실 욕구를 찾을 수 있다. 일곱 번째, 다양한 유형의 범죄와 범죄자를 대처하기 위해 적합한 접근 방법이며, 심각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새로운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홉 번째, 범죄와 사회적 무질서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회복적 프로그램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회복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고,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

(2) 회복적 사법은 가능한 공권력 개입을 자제하고 사건이나 분쟁 당사자가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피해를 복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듯 기존의 형사사법의 틀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회복적 사법은 적지 않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도 있다.

첫째, 전통적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은 근본적으로 그 작동원리가 다르다.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하는가의 논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논점의 상당 부분은 이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에 의한 범죄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의 자발적 협력’과 ‘최소한의 강제성’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는 곧 그러한 범위 내에서 회복적 프로그램과 형사사법과의 연계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회복적 프로그램이나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회복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28) 회복적 경찰 활동과 형사조정에 관해서는 손진, “경찰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0;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20;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2009; 김잔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2021; 김창렬,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2018 등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29) 이하의 내용은 장규원, 앞의 책, 2011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엄격한 규정에 따르는 형식성, 정형성에서 벗어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막상 회복적 절차에 참여하는 가해자에게 여전히 형사사법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전통적인 형사사법 절차에서 요구하는 적정절차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범죄자가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회복적 프로그램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의 논의가 제기된다.

셋째, 회복적 프로그램은 수사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경우가 많다. 이때 가해자가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책임의 시인이 전제된다. 가령 회복적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 등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가해자가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회복적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택의 결과이고,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형사제재가 아니라 자발적인 책임 인수라는 점을 들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 자발적인 선택인지의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는다.

넷째, 가해자의 회복 절차 참여 결정에 혹시나 그것을 통하여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깔려있을 수 있다. 유죄 판결과 형벌을 받게 될 위험을 회피하고 가능한 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가해자의 희망에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다섯째, 회복적 사법은 형벌의 대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회 통제망의 확대인가의 논의에 부딪힌다. 회복적 사법이 꾀하는 갈등 해결 절차와 피해 회복은 다른 한편으로 사회 통제망을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 따르면 지역 사회공동체가 범죄 문제의 해결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사회 통제망을 확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호관찰이나 다이버전(diversion)의 조건으로 회복적 절차 참여나 피해자와 화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추가 제재로 비춰질 수 있다.

IV. 피해자 권리장전

(1) 형사절차에서 그동안 ‘잊힌 존재’로 취급되어 온 피해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책은 피해자 보호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합적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본이념과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여기저기 흩어졌던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은 선언적인 성격이 띠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된 시책에 대하여 다시 특별법이나 하위법규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담긴 내용을 그와 모순되지 않게 집행하여야 하고, 또한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을 토대로 하므로 그 규범력은 충분하다.

민간자원의 피해자보호와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또는 교정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각 지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각 관련 단체들을 조직화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통적인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방안만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누리는 권리로 인식하고 그 피해자의 권리 확인과 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글로써, 문서로 권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 것이다. 선언적 의미라지만 그 규정 여부의 차이는 분명하다. 생각과 다짐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무리 지어 사는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대책의 중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장전’으로서 기본 틀을 마련하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구현자, “경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호, 15-28쪽, 안전문화포럼, 2018.
- 김근모, “한·일 양국의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비교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173-212쪽, 한국피해자학회, 2019.
-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구용역 자료), 329-436쪽, 법무부, 2007.
- _____,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261-305쪽,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김성언,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현실 진단: 주요 쟁점의 정리와 발전 방향의 탐색”,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자료집, 3-49쪽, 한국피해자학회, 2021.
- 김잔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62권 제3호 통권 109호, 135-156쪽,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김재민,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자료집, 59-84쪽, 한국피해자학회, 2021.
-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89-315쪽, 한국피해자학회, 2012.
- 김지선·김성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397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김창렬,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49-67쪽,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관점의 변화: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설립에 즈음하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141-181쪽, 한국피해자학회, 2021.
- _____,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시행평가 및 향후 과제: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이념실현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139-177쪽, 한국피해자학회, 2016
- 막스 베버/박상훈 옮김, 소명으로서의 정치, 200쪽, 후마니타스, 2021.
- 미셸 푸코/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560쪽, 나남, 2020.
-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옮김, 피해자학입문, 293쪽, 길안사, 1999.
- 박상기, 독일형법사, 270쪽, 율곡출판사, 1993.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 2006.
- _____,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2012.
- _____,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2016.

손진, “경찰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9-57쪽, 한국피해자학회, 2020.

심미선,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1-41쪽, 언론중재위원회, 2020.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13-238쪽, 한국피해자학회, 2020.

오영근, “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69-288쪽, 한국피해자학회, 2016.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살림지식총서 393), 94쪽, 살림, 2011.

조균석, “피해자지원센터의 재도약을 위한 제언: 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49-267, 한국피해자학회, 2016.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2011.

한수웅, 헌법학 (제11판), 1696쪽, 법문사, 2021.

【토론문】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배 상 균*

우선 한국 피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점에 너무나 축하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피해자학 연구가 물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으나, 과거 형사사법 절차에서 ‘잊혀진 존재’로서 취급되었던 상황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피해자학 연구가 그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기 계신 분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규원 교수님의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발표문은 한국 피해자학 연구의 역사를 담백하게 되짚는 매우 뜻깊은 글이며, 저와 같은 말학에게는 피해자학 연구의 의미와 그 실천의 역사를 공부하게 된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에도 언급된 것처럼, “현재의 피해자학은 일반적으로 연구대상과 영역이 학문으로서의 분명한 자리매김을 했고, 학제 간 연구도 활발하다. 단순한 소개나 일부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범죄피해조사,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와 실제 형법에서의 피해자 역할, 범죄피해자 보호와 구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 국제기구에서의 피해자 운동과 입법 경향 등 가히 전방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연구의 성과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과 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처럼 피해자학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면서 문제를 해소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서 형사절차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세세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헌법 제12조, 제13조, 제27조~제30조), 이를 하위 법령에서 제대로 구체화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피해자학 연구자들의 큰 헌신으로 개선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전환점 중 하나는 2005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헌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을 하고, 형사절차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 제13조).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제1차(2007년~2011년)와 제2차(2012년~2016년), 제3차(2017년~2021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제11조 참조)의 규정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2022년~2026년)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많은 정책현안 문제에 밀려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지원대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장전’으로서 더욱 다듬어 나가야 하므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냈으나, 여기서는 최근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강화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513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으로, 개정법률안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 방식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안 제294조의2)이라고 합니다.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② (생 략) 〈신 설〉	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

1)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 설〉	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3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등의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은 1987년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3955호, 1987.11.28, 일부개정])에서 신설되었으나,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독립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에 피해자 진술권의 확장, 배제사유의 축소, 진술내용의 구체화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²⁾ 2015년에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³⁾

그러나 문제는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정에서도 증인신문의 형태에 한정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는데 그친 점에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권은 학설상 증인신문의 형태와 의견진술의 형태로 보장된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①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의해 구체화된 증인의 지위에서의 진술이라는 측면과 ②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변론으로서의 의견진술권이 형사소송법적 권리로서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권리 중에서도 의견진술제도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을 형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의 증인신문절차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의 영역에서도 고소권, 고소취소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외 각국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이 다양한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점과 대부분 양형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영향진술(Victim Impact Statement,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와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가 있다.

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4조의12(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가 있다.

VIS)제도로써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참고가 됩니다.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2015년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즉 형사소송규칙에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 외 진술권을 명시하였으며, 의견진술 여부를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하였고, 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정한 피해자 등에게 신속한 의견진술기회를 직권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 134조의10).

다만, 이러한 피해자 의견진술과 관련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은 그 내용적 정합성과는 별도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이 제시한 바는 이러한 선행된 논의 결과의 반영은 물론 형사소송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으로서 그 내용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 또한 피해자학 연구의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문】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김 혜 경*

I. 들어가며

우선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피해자학이 가지는 위상과 발전의 면면을 고려한다면 우리 학회의 성장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것입니다. 보다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피해자학의 발전에 건강한 밑거름과 토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신 장규원 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항상 끊임없는 연구와 발표로 후배 학자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오늘도 역시 피해자학의 전반을 꿰뚫는 고견으로 다시 한번 배움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론자로서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학회의 큰 축제라고 생각하고, 단지 함께 즐기자는 명분 하에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피해자학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힘쓰신 선후배 회원님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을 토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장규원 교수님의 귀한 발표문에 대한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교수님께서 발표문을 통해 언급하신 피해자학 또는 피해자관련 제도에 대한 좁은 소견을 첨부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앞으로 학회와 피해자학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정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계명대학교 교수

II. 피해자학을 다시 생각한다.

1. 피해자보호 또는 대책의 기본이념은 무엇인가?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가는 가해자중심적 국가형벌권 행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범죄피해자중심적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적 운용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사회복귀 및 법적 안정성 회복에 주력하여 왔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는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와 범죄예방의무 및 국가형벌권을 통한 진실발견의무를 통하여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지난 20여년 동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과 관련한 많은 제도들이 등장하였고, 여러 국가 기관들이 앞다투어 범죄피해자보호를 기관의 목표이자 중심활동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국가기관 및 민간지원기구들의 활동을 보면 매우 시혜적이고 적극적 조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범죄피해자대책의 기본 이념을 통일할 때에만 비로소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대책의 기본 이념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시혜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근본적인 이념이 존재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굵은 방향이나 지표가 있는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에 의한 시혜적 혜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발표문에서는 피해자보호와 피해자지원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피해자 대책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 우리 법제도나 형사사법기관이 범죄피해자 대책에 관한 기본 이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설정하였다면 어떤 방향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로서,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국가에 의한 호혜적 또는 시혜적 혜택의 부여 정도로 이해되고, 그 이면에 있는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의 실패나 국가형벌권 실현 목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른 모든 국민들의 피해자보호 조력 등 다양한 함의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본질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또는 대책의 기본 이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 <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

2.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절차로서 수사절차를 포함한 공판절차 전반에서 피고인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의 한계를 이끌어 내고, 소송상 무기대응의 원칙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필요적 변호 및 국선변호인 제도에 의하여 보장된다.

발표자께서도 적절히 언급하셨듯이 소송의 주체들은 소송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소송상 가지는 지위와 권리들은 해당 주체들이 소송에서 주도자로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표로 또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추구함을 전제로 하여 나름의 형사사법이념에 일조하는 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위를 격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주변인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형사소송의 참여는 참고인이나 증인에 불과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의무를 부과받을 뿐이다. 물론 신뢰관계인의 동석이라든가 차폐시설을 이용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며, 차폐시설의 이용은 피해자보호 방안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된 피해자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일조하는 면이 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2, 제244조의5에 근거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 수사규정 제22조 등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 실천규정들을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보다도 정치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될 만하다. 더욱이 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홀로 조사받게 한 행위를 피의자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여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으며,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대책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²⁾

그리고 피해자 및 피의자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동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은 보조인제도에 의하여 보다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이를 보조하는 또는 보다 강화하는 제도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형사소송체계는 피해자를 주변인으로 파악하고, 증인 또는 목격자로서 국가형벌권 실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국가형벌권 실현의 도구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2)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3481&kind=AF01>

다. 물론 그와 같은 일도양단식의 주장은 편협해지기 쉽지만, 반대로 그와 같은 의혹들이 해당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 제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발표문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상의 정보접근권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피해자의 인격권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게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며, 가해자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의 안전도모에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상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알 권리를 기초로 알권리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표명할 수 있는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의 획득을 통해 지식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권리란 정보에의 접근과 수집 및 처리의 자유권이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동법 제3조)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통지는 피해자의 특별한 권리인가? 발표문에도 설명되어 있는 바처럼,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및 관련 법령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권리와 차이가 없다.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제공 여부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물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재판, 구금 등의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을 요청한다.

물론 어떠한 권리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필요적 또는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형태로 제도화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특별한 함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알권리가 피해자의 안전도모에 있다면 범죄예방에 실패한 국가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조력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격권과 안전을 자구할 것을 요청하는 결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법도 하다.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권리보장의 함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제도가 가지는 함의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4. 피해자보호제도는 국가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하였는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범정부차원의 국가계획으로 정책추진 및 재정원용에 관한 기본설계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정원용이나 정책추진의 면을 보면, 이는 국가에 의한 피해회복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회복과 범죄피해자의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지위회복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는 국가정책의 실현을 통한 국가이익의 달성이 저변에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는 국가중심적 사고 또는 기관중심적 사고라 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중심적 사고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국가형벌권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로부터 수납한 벌금의 일부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은 국가책무불이행의 측면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라는 개인이 범죄자라는 또 다른 개인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한 보충적 지원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이 기관간의 재정분담의 측면이 강조되고 어느 기관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가가 마치 해당 기관이 가지는 위상과도 같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이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의 기여에 있다고 함은 국가가 마치 복지국가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시혜적 성격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동법이 범죄피해자구조의 방식을 범죄자에게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보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재정담보를 함은 범죄피해 자체를 민사분쟁으로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국가사법에 협조하는 자의 피해와 이에 대한 금전적 구조와 지원을 추가하되, 그 이외에 범죄의 간접적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국가 또는 기관중심적 사고의 산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피해자 관련법들은 국가중심적 또는 기관중심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운용과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우선으로 하고 있을 뿐 범죄피해자를 중심에 위치시키지 않는다.³⁾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중심적 사고란 무엇인가에 관하여도 여전히 이론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다만 국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실발견의 보조자로

3)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형사사법절차상 각종 권리의 주체로 해석하는 견해로는 차용석,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일반론”, 법학연구 제27권, 한국법학회, 2007, 271면 이하 참조. 한편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회복적 사법이념으로 접근하는 견해로는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5면 이하 참조.

서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국가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시혜적 혜택을 부여하는 피원조자의 지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제도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한 제도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피해자를 사법에의 참여권자로서 정당한 청구권으로 볼 것인가라는 접근방식의 차이를 의미한다. 물론 부대 사소제도와 같은 피해자참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법이 범죄피해자에게 공판절차에서의 참여진술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권리고지의무를 사법기관에 부과하고, 공판기록의 열람 복사권을 인정하며,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절차에의 참여를 인정하는 취지는 그 자체가 참여권자로서 가지는 권리로 이미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행사 역시 형사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사회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여야 하는바, 최근 우리 사회의 역동적 변화는 국가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안전을 요청하는게 아닌가 한다.

Ⅲ. 더불어 살기에 대하여

발표문에서는 더불어 살기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전개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을 비판하는 많은 경우, 그것이 범죄를 개인적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한다.⁴⁾ 형사제도 및 처벌은 국가가 그러한 행위를 공식적인 기준으로서 범죄화하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국가 통제를 포기 또는 저지함으로써, 범죄가 제도적 사회문제가 아닌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회복적 사법은 지역사회의 동참을 주도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역시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인(stakeholder)’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화합이라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사법체계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는 항상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해결과정이 다분히 주관적이거나 개별적이어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

4) Donna Coker, "Transformative Justice: Anti-Subordination Processes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Restorative Justice and Family Violence* 128, Heather Strang & John Braithwaite eds., 2002, 129면; Julie Stubbs, "Domestic Violence and Women's Safety: Feminist Challenges to Restorative Justice", in Heather Strang/John Braithwaite (eds.), *Restorative Justice and Family Violence* 42, 2002, 52-54면; Evan Stark, *Insults, Injury, and Injustice: Rethinking Stat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Cases*, 10 *Violence Against Women*, 2004, 1309면. 등은 특히 가정폭력과 같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는 특정 개인문제화 될 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이 공식적으로 개입되더라도 단지 "공적 해악(public wrong)" 정도로만 묘사됨을 지적한다.

해중심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서 어떠한 범죄에 의한 어떤 치유가 필요한 피해자인가에 따라 개별 절차들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이를 통해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는 늘 의문이었다.

범죄자도 피해자도 그것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범죄의 가해자가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 소외가 범죄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범죄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범죄로 인한 손실이나 해악을 수량화하고 양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범죄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역할이나 임무를 만들지 않고, 전반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SESSION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망

사 회: 황태정 (경기대)

발 표 : 안성훈 (형정원)

토 론 : 김재희 (성결대)

김예원 (변호사)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망

안 성 훈*

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주된 관심이 범죄자의 인권보호에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법률 뿐만 아니라 예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연혁적으로 보면 1987년에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에 범죄피해구조청구권(제30조)과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제27조 제5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였고, 이에 따른 입법 형성으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가 신설되었다. 1990년대에는 여성과 아동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994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이, 1997년에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비록 특수한 영역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4년 9월에는 법무부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¹⁾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은 제1차 기본계획(2007년~2011년), 제2차 기본계획(2012년~2016년), 제3차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거쳐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발전 과정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살펴본 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검토해봄으로써 본 세션의 발표주제인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망에 갈음하고자 한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정책의 발전 경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김용세(2010), 피해자학 제4판, 형설출판사, 148쪽 이하 참조.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정책의 범주

종 류	내 용
손실복구 지원 (제7조)	의료지원,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보호시설 설치·운영,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및 정보 제공 (제8조, 제8조의2))	형사절차상 권리 및 구조금 지급,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 등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제9조)	일시보호시설 입소, 개인정보 보호, 참고인조사·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가석방 등에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등
교육·훈련, 홍보 및 조사연구 (제10조, 제11조)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범죄피해 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 등

우리나라 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은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정책(제7조~제11조)을 근거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위의 표 참조).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7~2011년)에서는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교육훈련·조사연구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 감독 및 재원조달 운영의 5개 영역 및 15개 정책과제, 9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고, 제2차 기본계획(2012~2016년)에서는 교육훈련 등과 민간단체 지원 등이 제외된 3개 영역 및 9개 정책과제, 39개 세부과제로 정책영역이 다소 축소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2017~2021년)에서는 기본적으로 2차 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을 유지하면서 손실복구 지원의 영역을 주로 민간 부분을 통해 추진되는 ‘피해회복 지원’과 국가가 가해자의 배상 촉진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피해 보상을 추진하는 성격의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으로 구분하는 한편, 이러한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정책추진 체계와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책추진체계 및 강화’를 새롭게 정책영역으로 설정하여, 제3차 기본계획은 5개 영역과 13개 정책과 68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기본계획(2022~2026년)의 정책영역은 5개 정책영역과 13개 정책과 86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정책영역의 개발보다는 제1·2·3차 기본계획에서 도입된 현행 보호·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을 유지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영역	□ 5대 정책영역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교육훈련·조사연구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조달 운영	□ 3대 정책영역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 5대 정책영역 ○피해회복 지원 ○피해배상과 국가의 보상 강화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안전 ○정책추진체계 정비 및 강화	□ 5대 정책영역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 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과제 구성	○효율적인 범죄피해 상담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 ○의료·보건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지원 ○고용의 안정 지원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신변의 안전 보장 ○피해자 정보 보호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연구 ○홍보활동 전개 ○민간단체 지원·감독 ○재원의 조달·운용	○범죄피해자 조기 지원시스템 확립 ○상담·진술·치료·경제 지원의 원스톱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각적 자활 지원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 ○전문가 조력을 통한 자유로운 진술 보장 ○신변안전 보장 ○형사절차상 2차피해 방지 ○범죄피해자 정보보호	○사건 초기개입 및 지원 강화 ○중장기적 피해회복 지원 강화 ○통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체계 구축 ○형사절차상 피해배상제도 활성화 ○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 강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전문가조력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방지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정책추진체계의 역량강화 ○정책추진 기반의 정비	○범죄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피해회복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정책기반 강화
	90개 세부추진과제	39개 세부추진과제	68개 세부추진과제	86개 세부추진과제

*법무부 제1차·제2차·제3차·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1) 제1차 기본계획(2007~2011년)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손실복구 지원 분야에서는 전국에 59개 범죄 피해자지원법인을 등록하여 전국적·통합적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전국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전담관 설치,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상담-치료-피해진술’의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등 지역적·기능적 요소를 고려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가해자 불명·무 자력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등 구조금 제도의 확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심리치유 시설을 개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및 일반 강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의 취업을 통한 자립적 손실회복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형사절차 참여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방법을 마련하여 법적·절차적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였고, 19세 미만자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범죄피해자 등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공판·구금·형집행 상황·출소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제도가 실시되었다.

셋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의 분야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안전 가옥 제공, 검찰직원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법정동행과 수형자 가석방 출소시 피해자 사전 통지 등을 비롯한 신변안전조치 확대, 피해자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심리, 공소장에 피해자 비실명 표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진술조서 양식 사용,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인적사항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의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안정적 재원조달 및 운용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매년 벌금의 4%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마련했는데, 이는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제2차 기본계획(2012~2016년)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손실복구 지원 분야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지원 전문기관인 스마일 센터를 전국 8개 광역 단위에 확대 설치하여 심리지원 체계를 확대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증설 및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피해아동 전용 심리치료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아동학대 고위험군 발굴 및 재학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부터 종래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이 아니었던 5주 이상 9주 미만 상해를 입은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등 지원이 이루어졌고, 2014년부터는 긴급생계비,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강력범죄피해자), 돌봄서비스 비용(성폭력 피해아동), 치료동행서비스 비용(13세 미만과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등이 신규 지원되었으며, 특히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 상한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인상하는 등 범죄피해자구조금 액수의 상향 조정 및 지급요건의 완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형사절차 참여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사건조회 서비스 제공,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의무화(2015년 개정범죄피해자보호법),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진술보장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 및 지원대상 확대²⁾,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및 확대 실시³⁾ 등이 이루어졌다.

셋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인 안전가옥의 확충,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전비(2012년)와 임시숙소 지원(2014년) 및 위치확인장치 제공(2012년) 등이 이루어져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가 확대 시행되었고, 2012년에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2013년에는 대법원규칙⁴⁾에 증인보호지원관제도를 두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공소장 작성 시 공소사실이 특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등 신상 관련 사항 기재를 최소화하고, 체포 구속 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영장범죄사실 중 피해자 신상 관련 부분은 삭제 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가명조서 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대상 범죄 이외에 가명조서를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가명조서 작성 대상의 확대 등도 이루어졌다.

2) 2012년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적으로 지원 조력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이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2013년), 아동학대 피해자(2014)로 확대되었다.

3) 2013년 13세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력인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2014년에는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대되었다.

4)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2468호, 2013.6.5., 전부개정) 제13조 내지 제16조

(3) 제3차 기본계획(2017~2021년)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피해회복 지원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전담경찰관 및 위기개입 상담관이 시도 경찰청에 배치되었고, 2017년에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담당관과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이 피해지원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One-Stop 지원 절차인 ‘범죄피해 수사·양형 반영 방안(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전국 16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여 강력범죄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강화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피해구조금·경제적 지원 신청시 피해자 지원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을 취득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확보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2020년 소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 외에도 주거지원(임대주택) 수혜대상 범위의 확대와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피해배상과 국가구조 강화 분야에서는 구조금 지급등급의 확대(최저 등급을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와 기준이 완화(척추 기형, 손가락 상실 등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셋째,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분야에서는 가석방 심사시 피해자의 가석방 불원 민원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에 궁박한 상태에 놓여 성매매한 아동·청소년(2019)과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모든 피해아동·청소년(2020), 아동학대범죄 피해자(2021),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2021)를 포함시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인 참고인 및 증인(2020),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2022년)를 포함시키고, 또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술조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근 진술조력인을 전국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배치하여 진술조력인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그 외에도 수사진행상황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법령상 근거 확보, 사건진행상황에 관한 통지 정보의 추가, 수사 진행중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넷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안전 분야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수사와 조사 공간의 분리 및 성폭력사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영상녹화를 시행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증인지원관 증원과 특별증인지원실 확충 등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차단하는

시설 확충 및 제도의 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 신원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그 외에도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 정보공개 방지 목적의 사건보도 지침 마련, 신변안전조치 확대 시행 및 관련 사업 고도화 등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강화 분야에서는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의 원천인 벌금 수납액 전입 비율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4) 제4차 기본계획(2022~2026년)

제1·2·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계획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⁵⁾

첫째, 제1·2·3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제1·2·3차 기본계획에서 도입된 현행 보호·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둘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피해배상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형사 절차 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셋째, 불법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와 더불어 1인 미디어나 포털 댓글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유출·공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 마련

넷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중복성, 비효율성, 지원의 지연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추진주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정책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

다섯째, 정책시행에 장애요소가 되는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시행계획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점검, 분석, 환류체계 구축,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협력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과 정책추진 기반 강화

이러한 계획수립 방향에 따른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5) 법무부(2022),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2-23쪽 참조.

1.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신속·정확한 범죄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 피해회복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 자립·자활 지원의 활성화 ○ 피해자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 대상 확대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집행체계 개선
2.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형사조정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3. 형사절차 참여 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실질화 ○ 피해자의 정보수집 권리 확대 ○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 전문가조력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 ○ 범죄피해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4.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형사절차 이외 분야로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정책의 확대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마련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체계적인 신변보호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정비 ○ 수사기관 내 신변보호 관련 인력 등 확보 ☐ 형사절차에서 2차피해 예방 ○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피해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 ○ 가해자 등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방해 방지대책 마련 ○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5.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중앙부처간 통합적 정책 기능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 ○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 지원 영역의 발전 모색 ☐ 정책기반 강화 ○ 범죄피해자 관련 통계 및 연구 기반 구축 ○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법무부(2022),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6쪽 이하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편집 작성.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평가와 과제

가. 평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선행연구⁶⁾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육체적·심리적 치료,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평온한 일상への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단편적·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될 때 보호·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의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계획을 통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기존의 단편적이고 단기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발전 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과 제도의 확대·강화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를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또한, 우리나라 기본계획상의 정책영역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 원칙」(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년 유엔총회 채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지원의 영역⁸⁾과 2010년에 작성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Justice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초안의 7가지의 정책과제⁹⁾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책영역의 유형과 범위에 있어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 원혜옥(201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58쪽.

7) 송귀재(2018),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3호, 43쪽.

8)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제4조 내지 제17조 참조.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declaration-basic-principles-justice-victims-crime-and-abuse> (방문일: 2022.4.19.)

9)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유엔 협약 초안에서는 7가지 정책과제로 ①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보장과 공정한 취급 (제5조), ② 신변안전 확보(제6조), ③ 정보제공(제7조), ④ 피해자지원(응급위기지원, 단기 지원, 중장기 지원)(제8조), ⑤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증진(제9조), ⑥ 피해자에 대한 배상(제10조), ⑦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11조)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실행체계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ttp://www.worldsocietyofvictimology.org/publications/Draft%20Convention.pdf> (방문일: 2022.4.19.)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법무부와 관계 중앙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부족한 점, 범죄피해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없는 점,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실적 점검, 평가 및 환류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복구 지원책의 미흡,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참여제도가 부족한 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참여 및 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의 상호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점, 통합적 지원 네트워크가 갖추어지지 않아 유사, 중복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¹⁰⁾ 이러한 문제점의 배경에는 지난 15년간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발굴·시행되어 정책영역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현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따라서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의 정책은 시행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환류체계 구축과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현행 정책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향후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향후 주요 과제는 현행 정책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확보이다. 현행 정책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확보와 관련한 논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고, 또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추진과제에 반영하여 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실적의 점검, 평가 및 결과의 환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실효성 확보의 문제를 넘

10) 제2·3·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한계와 향후 과제 부분 등을 참고하여 작성.

11) 법무부(2022),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2쪽 참조.

어서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해당 부처 등의 책무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하다.¹²⁾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법 제13조 2항, 동시행령 제12조 2항)을 두고 있으나, 법무부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이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¹³⁾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법무부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부분이 없고, 제3차 기본계획에 이르러서야 법무부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 성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의 최근 3년간의 주요 통계와 기관별 주요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계와 실무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인 성과지표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목표달성도를 점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¹⁴⁾ 따라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뿐만 아니라 점검·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규정과 의무보고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등기본법에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강구한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차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제10조), 이에 따라 국가공안위원회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강구했던 구체적 시책의 시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범죄피해자백서를 공표¹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고용안정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과 관련하여 제1·2·3차 기본계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고용 등 시범고용사업의 추진, 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휴가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사회적 기업 설립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취업지원비 지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12) 김지선/김성언(2015),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5쪽; 김근모(2019), “한·일 양국의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비교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184쪽.

13) 위의 보고서, 355쪽.

14) 위의 보고서, 352쪽.

15) 범죄피해자백서는 2006년부터 발간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내각부에서 발간하였고, 2016년 4월 1일부터 내각부의 범죄피해자 등 시책에 관한 사무는 국가공안위원회로 이관되어, 국가공안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국가공안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시책은 대부분 법무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는 시행계획에 일반 근로자(범죄피해자 포함)에 대한 체불정산이나 고용센터 취업지원 현황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범죄피해자에 특화된 위한 고용지원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¹⁶⁾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러한 지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의 시행계획 성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무¹⁷⁾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¹⁸⁾ 범죄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¹⁹⁾ 특히 “직장생활 중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피해로 고용불안정에 내몰린 피해자, 범죄피해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직종을 찾아야 하는 피해자,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기 힘든 피해자, 가해자를 피해서 주거를 이전해야만 하는 피해자 등 고용안정 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지원, 주거지원 등과 같은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피해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²⁰⁾ “이전 기본계획에서 자립·자활 지원 정책과제로 개발되었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근로자의 형사절차 참여 또는 치료과정을 위한 휴가 보장, 공공기관의 범죄피해자 우선고용제도,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설립 확대 등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²¹⁾

(3)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 제도의 마련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 지원제도이다. 주지하다시피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 제1·2·3차 기본계획 중 핵심과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급 금액과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는 성과²²⁾를 거두어 제도 시행 초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16) 법무부(2022),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151-158쪽 참조.

1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8) 법무부(2022),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19쪽

19) 위의 책, 30쪽.

20) 위의 책, 30쪽.

21) 위의 책, 34쪽.

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금 지급요건에서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의 삭제, 장해구조금 등급 확대, 중상해 구조금의 신설,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이나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의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장해구조금 지급범위를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을 입원기간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받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²³⁾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범죄피해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국외범죄피해자를 포함하는 구조금 지급대상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된다.

주지하다시피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속지주의와 기국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을 범죄피해구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인해 한해 약 2천 7백만 명에 이르는 해외 체류 국민²⁴⁾은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특히 우리나라는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구조대상에 대한 장소적 적용범위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의 여지를 상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²⁶⁾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지원 필요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외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달리 최근 일본에서는 「국외범죄피해자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외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종래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을 국내범죄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일본인 국외범죄피해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었고, 이에 사회 연대·공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018. 8. 30.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조금 지급

도 경제적 지원금의 현실화와 경제적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 박미숙(202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실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쪽.

24)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219쪽.

25) 안성훈(2021),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116쪽.

26) 헌법재판소는 2011.12.29. 2009헌마354 결정에서 구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국외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국내범죄피해자와 국외범죄피해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은 헌법 규정의 본질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으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성훈(2021), 앞의 논문 참조.

27) 법무부(2022),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38쪽

28) 안성훈(2021), “일본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국내적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2호, 72쪽.

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181, 임기만료폐기) 등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이 발의된 바 있어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²⁹⁾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피해자 의견진술권의 강화

우리 헌법(1987년)은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범죄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가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추권이 검사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본권이다.³⁰⁾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으로 1987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가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술자의 확대(기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도 포함), 진술배제 사유의 축소(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삭제), 진술내용의 구체화(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 진술내용의 구체화) 등과 같은 성과가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여전히 증거조사의 한 방법인 증인신문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특히 “피해를 입고 나서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진행되는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게 되면서 증인신문방식에 의한 피해자 의견진술은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³¹⁾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피해자를 증인신문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는 상황에서, 2015년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제134조의10에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는 방식의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수동적인 증인의 지위가

29) 한편 헌법 제2조의 입법 형성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1.15. 제정)이 제정되어, 2021년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법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발생시 영사의 조력 의무(제13조)와 재외국민의 긴급보호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부담(제19조)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0) 김용세(2010), 앞의 책, 153쪽.

31) 법무부(2022),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65쪽

아닌 피해자라는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지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상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근거한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한 경우와 ②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근거한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구체화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형사절차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를 강조해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위는 아직까지 형사절차의 주체나 당사자의 지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³²⁾ 또한,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³³⁾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제한적 당사자(limited standing)로서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부대공소(Nebenklage)제도가, 일본에서는 피해자참가제도라는 형태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인정되고 있다.³⁴⁾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를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하고, 제공되는 각종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범죄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생계, 주거, 고용,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손실 복구 지원(제7조), 사

32) 조균석(2017), “일본 피해자참가제도 시행 7년의 운영 성과와 그 시사점”,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70쪽.

33) 위의 논문, 170쪽.

34) 외국의 피해자참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균석(2009),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방안 - 피해자참가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I, 법무부, 547쪽 참조.

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제9조), 교육·훈련(제10조), 홍보 및 조사연구(제11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3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14조), 보조금 지급(제34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한 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피해자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보호·지원 사업의 실행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조문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자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정책과제로 정하고 조례 제정 등이 추진된 이래 범죄피해자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범죄피해자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³⁶⁾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책무와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정하고 있는데,³⁷⁾ 이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국가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으로는 지역사회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의 실태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³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규정과 협력규정을 넘어서 범죄피해자의 지원 등에 관하여 국가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호·지원 사업의 일부를 역할분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⁴⁰⁾ 조례의 규정 또한 종래의 상징적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담당부서 및 중

35) 김혁(201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60쪽.

36) 위의 논문, 70쪽.

37) 법무부(2017),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48쪽.

38) 김혁(2018), 앞의 논문, 60쪽.

39) 위의 논문, 60쪽.

40) 예컨대,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이 된 지역의 자치경찰에게 종래 국가경찰이 시행해 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일정 부분을 이전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찰은 각 도도부현의 경찰을 단위로 하는 자치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보호·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한다. 太田達也(2018), “地方自治体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と警察の役割”,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1호, 8쪽.

합상담창구의 설치, 의료, 경제, 고용, 주거 분야의 지원,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기획 및 조정, 지역관계기관과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상담 및 정보제공 활동, 홍보·계몽활동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가 주도로 실시되어 오던 행정정책들이 지역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실질적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도 이러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책임 있는 주민자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책무의 강화는 지역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피해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나가며

과거의 형사사법은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범죄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5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정책은 피해회복과 형사절차 참여, 신변보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인 약 20여 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피해자를 위해 고려되었던 기본계획상의 대부분의 정책이 제도상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보호·지원 분야의 향후 과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각종 정책의 질적 성장과 실효성의 확보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니즈(needs)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 또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상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제의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41) 위의 논문, 81쪽.

“.....4월, 5월에 정부의 기초안이 세워집니다. 이 기초안을 세울 때 정부가 합의를 해요. 바로 그게 정부계획이에요. 그때 세워진 것도, 국무총리가 도장 찍은 것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100이라면 계획안은 40도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가계획 그 40%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지난 4월 13일 JTBC 주최로 마련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토론에서 전국장애인연합회 박경석 대표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게 주장한 내용의 일부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과 같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데,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의 요구가 100이라면 종합계획의 수준은 40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컨대, 정책추진 담당자들이 범죄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분야는 2007년부터 시행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착실히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범죄피해자를 둘러싼 변화하는 상황을 잘 살피고, 또한, 범죄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러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에 따른 니즈의 정책 반영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노력한다면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토론문】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망

김 재 희*

* 성결대학교 교수

【토론문】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망

김 예 원*

* 변호사

기조강연

한국의 피해자학과 한국피해자학회 30년

강연자 : 민건식 (한국피해자학회 명예회장)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의 피해자학과 한국피해자학회 30년

민 건 식*

1. 존경하는 한국피해자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학회창립 20주년을 기념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새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학회창립 30주년을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학회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회의 서른 번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만큼, 학회의 30년 역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992년 4월 25일 저를 포함한 회원 144명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강당에서 한국피해자학회 창립총회를 열어 닳을 올리고 출항에 나섰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한 봄철의 토요일이었고, 학계와 법조계의 여러 인사가 학회창립 발기인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이수성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의 김종원 교수님과 박광민 교수님, 건국대학교의 박동희 교수님, 연세대학교의 이형국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오영근 교수님 등이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김양균 헌법재판관님과 훗날 대법관을 지내신 박일환 판사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정구영 검찰총장님, 훗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김두희 대검찰청 차장검사님, 그리고 조균석 검사님 등이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영석 원장님, 이재상 부원장님, 그리고 재야법조인이신 이용훈 변호사님, 백광현 변호사님, 임상현 변호사님 등이 학회창립을 위한 발기인명단에

* 한국피해자학회 명예회장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학회가 창립되던 날, 당시 일본피해자학회 이사장(회장)이셨던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의 미야자와 고이치(宮澤浩一) 교수님과 부이사장(부회장)이셨던 도시샤(同志社)대학의 오야 미노루(大谷實) 교수님(훗날 도시샤대학 총장 역임)이 축하 사절로 오셨습니다.

2. 1992년에 학회를 정식 설립하기에 앞서 10여 년에 걸친 예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0년 3월 저는 법무부의 단기 연수 파견의 기회를 얻어 6개월 동안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 연구검사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게이오 대학 법학부 교수님으로 계셨던 미야자와 고이치 교수님은 저의 지도교수님이셨는데, 그분으로부터 피해자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피해자학회 창립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 일본으로 출국할 때는 당시 법무부가 기획하여 실행단계에 있던 보호관찰제도를 공부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니 지도교수인 미야자와 교수님이 제게 피해자학의 관심 영역과 그 중요성을 깨우쳐주셨습니다.

미야자와 교수님은 세계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한 피해자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일본 피해자학회를 창립하여 일본에 피해자학을 이식한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20대 후반에 게이오대학의 조수 신분으로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에서 유학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멘델존 변호사가 1956년에 발표한 「생물·심리·사회학의 새로운 분야: 피해자학」이라는 논문을 접하고, 범죄피해자를 평생의 연구주제로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로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한 연구실적을 쌓고 학문적 식견을 넓힌 뒤에 이스라엘로 멘델존을 찾아가 함께 뜻을 모아 세계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였다는데, 저에게 한국 피해자학회 창립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당장은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테지만, 오래지 않아서 피해자학의 실용성이 널

리 공감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한국에 돌아가서 꼭 한국피해자학회를 만들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로서 곧바로 학회를 만들기는 어려웠을뿐더러, 학회를 창립하려면 뜻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훗날 공직을 떠난 뒤에 학회를 창립하기로 약조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3. 이후로 10년을 더 검사로 있으면서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한국피해자학회 창립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미야자와 교수님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일본의 피해자학자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야자와 교수님의 헌신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연구 경험이 일천한 저의 약점을 헤아리시고, 1982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일본형법학회와 일본범죄학회에 초청하여 학문적 소양과 식견을 넓히게 해주셨습니다.

1982년 8월에는 미야자와 교수님의 주관으로 도쿄와 교토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피해자학대회에 저를 초대하여 미국과 독일 등 유럽의 학자들과 교류의 물꼬를 트도록 교량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회에서 피해자학의 종주국 격인 이스라엘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어느 학자가, 정치적 박해, 종교적 박해, 인종적 박해 등도 피해자학의 관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대회에 참가한 다수의 인원이 ‘피해자학’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이유로 학회의 연구범위를 범죄피해자에 국한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체계적 연구의 시급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실질적인 창립 준비에도 10년 가까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먼저, 형사학전공 과정이 있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과 교류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자천타천으로, 건국대, 한양대, 경희대의 시간강사로 출강하였고, 범죄문제를 연구하는 학회들의 정기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여, 형사학 전공자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면

서, 학계의 문화와 정서를 익혔습니다.

1982년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정행정을 강의하는 동안,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학의 선구자: 12인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단행본을 강의교재로 펴내서, 장차 한국피해자학회 회원이 될 형사학도들에게 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때마침 법무부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연쇄적으로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죄피해자 문제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제27조 제5항)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자격(제30조)을 부여하여, 범죄피해자 문제를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여건에서 대략 10년 정도 준비를 갖춘 뒤에, 1991년 9월 정년이 되어 검사 생활을 마감함과 동시에 학회설립을 위한 본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학계와 법조계의 선후배들과 젊은 학도들이 흔쾌히 협조해주셔서, 약 7개월 만인 1992년 4월 25일에 부족하나마 한국피해자학회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성장 과정은 황무지를 일궈서 옥토로 만드는 일만큼이나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회를 발족하고 보니,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학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학회지발간에 필요한 연구논문을 모으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형사학 전공자들에게 투고를 부탁하고 송고를 재촉해 어렵사리 논문을 확보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악전고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모한 시도를 하였다고 염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미래를 믿고 기반을 다졌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학회지를 발간하고 봄과 가을에 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지금은 회원이 4백 명을 넘는 든든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학회창립 이듬해인 1993년부터, 미야자와 교수님의 배려로 일본학회에 초청된 외국의 석학들을 한국학회에도 참석케 하여, 피해자학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던 한국형사법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게 하였습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약 10년 동안,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올라 본대손 교수님, 독일 뮌헨대학의 클라우스 록신 교수님, 올라히 지바 교수님, 트리어대학의 한스 하이너 퀴네 교수님, 괴팅겐대학의 조르그 마친 엘레 교수님,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부르크 유타라 교수님 등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 학회의 학술행사에 참석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일본학자들과도 오랜 교류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교수님의 수제자인 게이오 대학의 오타 타츠야 교수님을 비롯하여, 매년 젊은 연구자 두세 명이 우리 학회의 행사에 오고, 국내의 젊은 연구자들도 일본학회의 행사에 가서 논문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5.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0년대 들어서는 학회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경쟁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니, 불과 10여 년 사이에 실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2003년에 학회의 유력한 후원자였던 미야자와 교수님이 70세 정년을 맞아 일본 피해자학회의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저 또한 한국피해자학회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 회장 자격으로 측면에서 학회의 발전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에 미야자와 교수님이 돌연 작고하셔서 지금까지도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학회의 제2대 회장으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오영근 교수님이 추대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회가 외국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09년에 대전대학교의 김용세 교수님이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를 출간하고, 3년 뒤인 2012년에 『피해자학』이라는 전문학술서를 연달아 출간해, 국내 학자들의 피해자 연구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너무 일찍 타계하셔서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92년 11월에 「한·일 피해자학 심포지엄」 발표원고 6편과 2편의 투고논문을 가지고 어렵게 창간한 『피해자학연구』는 이번에 통권 제47호가 발간됨으로써 30년 동안 623편의 우수논문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그 가운데 40여 편은 해외학자의 논문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학회창립 초기 계몽기 때에 투고되어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학회지는 2003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가 되고, 2018년에 정식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6.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린 논문들과 각종 학술행사에서 거론된 내용들은 국가의 형사정책과 대학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006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그다음 해인 2007년에 당시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던 조균석 검사님이 김천과 구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민간주도로 운영되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열여덟 개 지방검찰청과 마흔두 개 지청 모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설되어,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2011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법과 형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제출,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사절차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경찰과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단계에서 현장검증이나 증언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차적으로 피해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백여 개 대학이 피해자학 강좌를 개설할 정도로 피해자학 연구의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상대로 피해자학을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다는 방증(傍證)일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피해자학 강의를 위해 출간된 기본서가 열세 종이나 되고, 범죄피해의 발생실태 혹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등을 주제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도 수백 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7. 우리 학회의 연구실적과 연관되는 모든 성과는 특정인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2대 학회장 오영근 교수님(한양대학교), 제3대 학회장 박광민 교수님(성균관대학교), 제4대 학회장 조균석 교수님(이화여자대학교), 5대 학회장 장규원 교수님(원광대학교), 6대 학회장 오경식 교수님(강릉원주대학교), 제7대 학회장 조영곤 변호사님(서울중앙지방법 검찰청 검사장 역임), 그리고 현재 학회장이신 원혜욱 교수님(인하대학교)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학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회의 간사 역할을 맡아서 회장단을 성심껏 보필하신, 서강대학교의 이호중 교수님, 대구대학교의 박순진 교수님, 원광대학교의 장규원 교수님, 영남대학교의 김혜정 교수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천현 · 강석구 · 안성훈 박사님, 성결대학교의 김재희 교수님, 그리고 부경대학교의 김혁 교수님 등이 계셨기에 30년 만에 학회의 기틀이 오늘과 같이 튼튼하게 갖추졌다고 평가합니다.

그 외에 전공분야가 다양한 여러 회원님들의 열렬한 동참과 학회 밖에서 물심양면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법무부, 대검찰청, 사법부, 언론기관,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학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 주지하듯이 범죄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태초부터 인간사회에 자생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의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게다가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고, 인간관계가 복잡다기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충동을 못 참아 언제 어디서 누구를 공격할는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구의 선진국들은,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들이 충분한 보호와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면,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손실을 메워주고 유족의 생계를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형사정책을 다루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혹은 치료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질, 성향, 경제력, 신체조건, 가정환경, 판단능력 등이 천차만별이고,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입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면, 한국피해자학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각종 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직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학회가 이룩한 성과의 핵심은 범죄피해자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마침 범죄피해자 문제에 이해가 많으신 새 대통령이 여성정책과 치안정책의 역점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기왕에 산재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를 통합하는 국가관리의 피해자 관리청을 신설한다면 복지정책에도 부합하고 국가 품격도 몇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들어졌어도, 우리 학회는 회원 모두가 예지와 신념으로 발전의 수레바퀴를 열심히 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30년 전 학회를 창립할 당시에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우리 학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성원해주리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학회의 창립과 성장 과정에서 지도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다 먼저 앞서가신 국내외 선후배님들의 영령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애하는 회원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1

SESSION

일본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Ota Tatsuya(일본 게이오대)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발제문/원문】

日本における被害者学と被害者支援—過去・現在・未来

太田達也*

翻訳 김 혁**

I 日本における被害者学と被害者支援の歴史的経緯

日本では、1960年前後に東京医科歯科大学の中田修教授と慶應義塾大学の宮澤浩一教授によって被害者学が日本に紹介され¹⁾、被害受容性や被害者化に関する研究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が²⁾、学問としての被害者学が認知されるようになって、犯罪被害者を支援する制度を導入する機運はまだ熟していなかった。

犯罪被害者に対する支援制度が初めて導入されたのは1980年のことであった。同年、被害者に給付金を支給する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当時の名称）が制定され、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死亡した被害者の遺族及び重障害を負った被害者に給付金を支給する制度が導入されることとなった³⁾。

しかし、その後、犯罪被害者の支援について進展は見られず、犯罪被害者に関する研究も盛り上がりを欠いたことから、1990年、宮澤浩一教授によって日本被害者学会が設立され、被害者学を議論する学術的な場が設けられるに至った⁴⁾。その直後、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制度発足1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の席上で犯罪被害者遺族の大久保恵美子氏が犯罪被害者に対する支援の必要性を訴えたことに端を発し、創設されたばかりの日本被害者学会のメンバーが中心となって、犯罪被害者の実情について日本初の総合的な実態調査が行われ、犯罪被害者の経済的な窮状に加え、犯罪被害者が捜査や訴追、公判の過程で様々な二次的な被害を被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⁵⁾。

* 日本被害者学会理事長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 釜慶大学校教授

1) 中田修「Mendelsohn氏の被害者学」犯罪学雑誌24巻6号(1958) 8頁以下、宮澤浩一『被害者学の基礎理論』世界書院(1966)。

2) 主な業績は、以下の論文集に収められている。宮沢浩一編著『犯罪と被害者第1巻・第2巻・第3巻』成文堂(1970・1972・1979)。

3) 浅野信二郎「犯罪被害給付制度の基本的考え方」警察学論集33巻11号(1980)1頁以下。先行研究として、大谷實＝宮澤浩一名共編『犯罪被害者補償制度』成文堂(1976)。

4) 太田達也「日本被害者学会の経緯と展望—矯正との連携を模索して」矯正研究5号(2022予定)。

5) 宮澤浩一ほか編『犯罪被害者の研究』成文堂(1996)。

この研究成果を受け、1996年に警察庁が被害者対策要綱（現在は2021年の犯罪被害者支援基本計画）を策定し、捜査の過程において犯罪被害者に二次的被害を与えないようするための様々な施策を導入するとともに、捜査や被疑者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被害者連絡制度を導入している⁶⁾。この施策を契機として、以後、刑事手続における被害者の保護や支援、更には手続参加に関する様々な制度が導入されることとなった。

被害者への情報提供については、1999年に検察庁が犯罪被害者に不起訴の理由や公判日程等について情報提供を行う被害者等通知制度を設け⁷⁾、懸案となっていた刑事施設や少年院における被収容者の処遇状況や仮釈放・仮退院を含む釈放情報の提供についても、2007年の制度改訂により可能となっている⁸⁾。また、被害者が公判中の公判記録を閲覧・謄写をしたり（当時の名称で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⁹⁾、少年（20歳未満）保護事件記録を閲覧・謄写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のほか¹⁰⁾、被害者が公判を優先的に傍聴したり、それまで非公開とされてきた少年審判の傍聴を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が実現している¹¹⁾。

他方、犯罪被害者が刑事手続の過程で二次被害を受け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制度も整備されている。捜査過程における先の制度に加え、公判におけるものとしては、被害者の遮へい措置、証人の付添人、ビデオリンク証言が導入されたほか¹²⁾、被害者や証人を特定することとなる事項を秘匿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決定を行うことで、被害者や証人の氏名や住所等を被告人や傍聴人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¹³⁾。

さらに、被害者が一定の形で刑事手続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も設けられている。最初に導入されたのが、アメリカなど海外で導入されていた意見陳述制度である。当初は、量刑が重くなることを危惧する弁護士会等が反対していたが、被害者の心情充足と適正な量刑実現のため、2000年の刑事訴訟法改正によって公判における意見陳述制度が設けられたのに続き¹⁴⁾、少年法の改正で少年保護手続（審判に限られない）における家庭裁判所又は調査官による被害者意見聴取制度が実現している¹⁵⁾。さらに、2007年の更生保

6) 阿部信三郎「警察における被害者連絡制度」警察学論集 52巻5号(1999)47頁以下。

7) 八澤健三郎「被害者等通知制度について」警察学論集52巻5号(1999)64頁以下。

8) 櫛引唯一郎＝藤原尚子「被害者等に対する加害者の処遇状況等に関する通知について」刑政119巻12号(2008)25頁以下。

9) 飯島泰「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の概要」ジュリスト1185号(2000)8頁以下。

10) 飯島泰「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等」ジュリスト1195号(2001)2頁以下。

11) 飯島泰「少年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ジュリスト1364号(2008)76頁以下、長嶺陽一「犯罪被害者等による少年審判の傍聴—少年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立法と調査281号（2008）3頁以下。

12) 神村昌通「刑事訴訟法及び検察審査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等」ジュリスト1185号(2000)2頁以下。

13) 白木功「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ジュリスト1338号(2007)48頁以下、保坂和久「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8年法律第54号)について(2)」法曹時報69巻3号（2017）39頁以下。

14) 神村昌通・前掲注(12)2頁以下。

15) 飯島泰・前掲注(10)2頁以下。

護法により、仮釈放審理の段階における被害者聴取制度も設けられている¹⁶⁾。

日本の被害者支援施策の上でもう一つの大きな転換点となったのが2004年に制定された犯罪被害者等基本法であった¹⁷⁾。同法は犯罪被害者に対する政府の責務や基本政策を定めたほか、同法に基づき2005年から5年おきに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が策定されることとなり、司法に限らず、医療、保健、住宅、福祉、雇用、教育といった様々な分野において被害者支援の制度が大きく前進することとなった。

特に、基本法によって刑事手続への参加の機会を拡充すべきことが規定されたことに加え、被害者遺族から強い要望が政府に提出されたことから、2007年の刑事訴訟法改正により被害者参加制度が導入されている¹⁸⁾。日本の被害者参加制度は、ドイツの公訴参加制度と異なり、被害者参加人は、事実認定に関わる取調べに関与することはできず、上訴権もない。しかし、犯罪事実以外の情状（一般情状）に関して証人に反対尋問を行ったり、意見陳述に必要な範囲で被告人に質問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立法過程においては被告人の防御権を侵害するとか、検察官の立証活動の妨げになるといった批判がなされたが、導入後、被害者参加人は、検察官と打ち合わせを行ったうえで、被害者参加弁護士の支援を受けながら権限の行使を行っており、制度は概ね良好に運用されている。

また、日本では起訴便宜主義（起訴裁量主義）が採用され、起訴猶予が極めて広く行われていることもあって、被害者が検察官の行った不起訴に対し不満がある場合、被害者からの申立に基づき、一般市民11人から無作為に抽出された検察審査員から成る検察審査会が不起訴の相当性を判断するものとされている。検察審査会が起訴相当や不起訴不当（再捜査相当を意味する）の議決を行っても、検察官はその議決に拘束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が、2004年の検察審査会法の改正により、2009年から、検察審査会が一度目の起訴相当議決に続き、二度目の起訴議決を行った場合、裁判所が指定した弁護士が検察官として被疑者を起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起訴強制の制度が導入されている¹⁹⁾。これは、被害者支援というより、裁判員裁判と同様、刑事司法制度に国民を参加させる司法参加の一環として導入されたものである。もっとも、2009年の制度施行から2020年までの間に起訴強制に至ったのは15件しかなく²⁰⁾、しかも起訴後の刑事裁判では無罪や免訴判決が多くを占めていることから、制度改正を求める声もある。

被害者に対する経済的支援としては、被害者が犯罪者から損害賠償を得ることが難しく、旧刑事訴訟法にあった附帯私訴が戦後の現行刑事訴訟法で廃止されていたことから、2007年

16) 河原誉子「更生保護法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施策」法律のひろば60巻8号(2007)38頁以下。

17) 井川良「犯罪被害者等基本法」ジュリス1285号(2005)39頁以下。

18) 白木功・前掲注(13)48頁以下、椎橋隆幸「犯罪被害者等の刑事裁判への参加」ジュリスト1338号(2007)56頁以下。

19) 辻裕教「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16年法律第62号)について(4)」法曹時報58巻8号(2006)31頁以下。

20) 検察審査会「検察審査会の受理件数、議決件数等（平成29年～令和3年）」（2022）。

の法改正（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により，刑事裁判を担当した裁判所が刑事記録を調べるなどして刑事裁判に引き続き4回以内の審理で損害賠償命令の決定を行う損害賠償命令申立制度が導入されている²¹⁾。

前述した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制度発足1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を受けて，民間における被害者支援も始まっている。東京医科歯科大学の山上皓教授が1992年に犯罪被害者支援相談室を設置して，犯罪被害者に対する相談や支援を開始し，これが後の被害者支援都民センター（東京）の創設（2000年）に繋がっている。その後，各地に被害者支援センターが設置されるようになり，1998年には当時開設されていた8箇所の被害者支援センターが連携して全国被害者支援センターが設立されている。2001年の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の改正により，被害者支援の民間団体が提供する支援の質と水準を維持向上させるとともに，警察がもつ被害者の個人情報をも民間団体に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被害者の同意は必要），犯罪被害者等早期援助団体制度ができ，全国48箇所の被害者支援センターのうち47団体が既に早期援助団体の指定を受けている。

このように，日本では，この40年間の間に様々な被害者支援の制度が導入されてきている。しかし，まだ課題も残されている。2021年4月から施行第4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においても，多くの制度の改善や導入が提案されている²²⁾。特に，現在，日本では，被害者支援の問題として，犯罪者による被害者への損害賠償の実効化，地方公共団体による被害者支援，刑の執行段階における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教育が議論されていることから，本報告では，主に以上の点について日本の現状を紹介することにする。

勿論，このほかにも，DV加害者に対する保護命令の対象及び禁止行為の拡大，インターネット上の誹謗中傷やリベンジポルノの被害者の保護や支援，児童虐待の被害児童に対する一時保護の司法審査制導入，民間支援団体の基盤強化など種々の犯罪被害者に対する支援策も検討されていることが，ここでは指摘するだけに止める。

Ⅱ 被害者に対する経済的支援

1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制度（犯給制度）

日本では，1980年に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2008年の改正により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へと名称変更）が成立し，故意の

21) 白木功・前掲注(13)48頁以下，奥村正雄「犯罪被害者等の損害回復と損害賠償命令制度」ジュリスト1338号(2007)63頁以下。

22) 内閣「第4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2021）。

犯罪行為により死亡した被害者の遺族や障害が残った者、一定の加療を要した被害者に対し、それぞれ遺族給付金、障害給付金、重傷病給付金を支給している（表1）。

アメリカやフランス、台湾等と異なり、被害者の被った損失の一部を補填する制度ではなく、犯罪被害の早期軽減と被害者の回復のため、韓国の改正後の犯罪被害者救助金制度と同様、被害者の被害当時の収入と被害の程度に基づいて算出した一時金を一括で支給する制度である（但し、重傷病給付金だけは損失補填型）。性犯罪等によるPTSDといった精神的被害の場合でも、一定の障害等級に該当すれば、障害給付金の支給対象となり、医療機関で治療を受ければ重傷病給付金の支給対象にもなる。しかし、医療に当たらない心理カウンセリングの費用は重傷病給付金の支給対象になっておらず、一度は犯給制度に組み込むことも検討されたが²³⁾、最終的には各都道府県警が独自の予算で支援を行っている。

犯給制度は、各都道府県の警察を監督する公安委員会が裁定機関である。一般の国家予算（警察庁予算）を財源とし、アメリカやカナダのように犯罪者から裁判に基づいて徴収する特別付加金(special assessment)や、韓国のように罰金の一部（8%）を財源とする犯罪被害者基金を設置して、そこから被害者補償や被害者支援の予算に当てる制度はない。

犯給制度は、施行後、被害者の実情や物価変動等に応じて支給額を引き上げるとともに、支給要件を改正するなど制度の改善を行ってきているが、残された課題もある。まず、犯給制度は、故意犯の被害者にしか適用がなく、過失犯の被害者は支給の対象にならない。それは、過失犯の大半を占める過失運転致死傷（立法時は業務上過失致死傷）には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に基づく保険金の制度があることや犯給制度が当時発生した通り魔事件を想定して制度化されたこと、過失犯の場合、予見可能性や結果回避義務可能性の認定が難しいことなどが理由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²⁴⁾。しかし、理論的には絶対に過失犯を除外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なく、海外の犯罪被害者補償制度は過失犯も対象にする例が多いこと²⁵⁾、交通事件以外の重過失致死といった過失事件の被害者も重大な損害を被り経済的支援を必要としていること、事故災害の場合、加害企業が倒産し、被害者への賠償がなされないことがあることなどから、過失犯の被害者も給付の対象にすべきと考える。日本では、ビルから飛び降り自殺した人に直撃されて死亡した被害者の遺族に対しても、加害者には未必の故意(bedingter Vorsatz, willful negligence)があるとして、

23) 犯罪被害者等に対する心理療法の費用の公費負担に関する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2013）。

24) 太田達也「犯罪被害者補償制度の研究（2・完）—改正・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制度の課題—」法学研究74巻6号(2001)69-70頁。

25) 内閣府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平成23年度諸外国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に対する経済的支援に関わる制度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2012）。日本の犯給制度をモデルにした台湾の犯罪被害者補償制度は、過失犯の被害者も支給対象としている。太田達也「台湾の犯罪被害者補償制度—犯罪被害者保護法の運用状況」法律のひろば54巻6号(2001)48-49頁。

給付金を支給した例があるし、2001年に導入された危険運転致死傷罪は同じ交通事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故意犯であることから支給の対象になっており、被害者の観点からは過失運転致傷と区別する合理的理由は見いだし難い。

また、犯給制度は、日本国内で発生した犯罪被害にしか適用がない。2013年にアルジェリアのテロ事件やグアムで起きた日本人を含む無差別殺人事件を契機として、同年に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が成立し、国外の犯罪行為において死亡した者の遺族に対しては国外犯罪被害弔慰金を、また障害が残ったものは国外犯罪被害障害見舞金を支給する制度が成立した。しかし、支給額は固定額であり、しかも低額である。

海外における犯罪行為の被害者に給付金を認めない理由は、事件に関する詳細を確認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こと、海外に永住している日本人に支給することが適当でない場合があることとされている。しかし、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法でも永住者は支給対象から除外されているし、事実関係が確認できない場合は個別に不支給決定すればよい。海外で犯罪被害を受けた場合でも被害者が被る経済的損害の大きさは同じかそれ以上であるから、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法の支給額や算定方法を犯給法と同様のものとすべきである²⁶⁾。

2 損害賠償の実効化

重大犯罪の場合、犯罪者による被害者への損害賠償は、賠償能力と賠償意思の欠如から、ほとんど行われていない。重大事件の犯罪者には死刑や長い自由刑が科せられることから、被害者への賠償という点ではこれも障壁となる。近年の実務では、仮釈放になる無期受刑者が少なく、仮釈放される場合でも、刑事施設に30年から37年もの間収容された後であるから²⁷⁾、賠償は更に非現実的なものとなる。

日本では、被害者が犯罪者から迅速、簡易・簡便、低費用で損害賠償を得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2008年から損害賠償命令制度が導入され、刑事裁判（有罪判決）に続いて同じ裁判所が刑事裁判の記録等に基づいて被害者に損害賠償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れは、フランスの制度に倣って明治時代に導入したが第2次世界大戦後の現行刑事訴訟法で廃止された附帯私訴に類似した制度である。これによって被害者は不法行為の損害賠償責任の立証責任から解放され、刑事裁判後4回以内の審理で損害賠償が決定される。実務でも、大半のケースで、損害賠償を命じる決定がなされている（表2）。

しかし、損害賠償命令によって被害者が債務名義を得ても、犯罪者に資力がなければ意

26)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法成立前に犯給制度を改正して国外における犯罪被害も対象に含めるべきとの見解として、太田達也・前掲注(22)76-77頁。

27) 法務省保護局「無期刑の執行状況及び無期刑受刑者に係る仮釈放の運用状況について」（2021）。

味が無く、日本弁護士連合会が行った調査でも、損害賠償命令が履行されているケースは極めて少ないことが示されている²⁸⁾。

これまで、日本の刑事司法制度では、犯罪者には資力がないから損害賠償ができなくても仕方が無いと考えられ、犯罪者が被害者に損害賠償に向けた努力すらしなくても当然のように受けとめられてきていた。しかし、近年、刑事司法や民事の分野において、犯罪（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の実効化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ている。まず、2019年に民事執行法が改正され、2003年にできた債務者への財産開示手続（裁判所に出頭して陳述）の対象者の拡大や罰則を強化したのを始め、裁判所の命令に基づき、債務者以外の第三者たる金融機関、登記所、市町村、年金機構から預貯金債権や株式、土地・建物、給与等に関する情報を取得する手続を新設した。これによって、強制執行の前に債務者の財産を特定することが容易になった。

しかし、これも犯罪者に本当に財産や所得がなければ意味が無い。そこで、2021年から施行された第4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は、刑事施設における「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教育」において賠償に向けた具体的な行動を促すための指導の充実に努めることとの提言が行われ、2021年に法務省でも具体的なプログラムの再検討を策定している²⁹⁾。

また、仮釈放後の保護観察や全部執行猶予の保護観察においては、被害者への損害賠償に向けた指導を行うことはできるが、2007年に成立した更生保護法（保護観察に関する法律）では、「被害者への賠償に努めること」という特別遵守事項が設定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その理由は、短い仮釈放期間に損害賠償に向けた努力を行うことは難しいこと、賠償に努めたか否かの判断が難し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少年法の適用年齢引き下げと犯罪者処遇制度の見直しを審議した法制審議会部会でも、改めてこの問題が検討されたが、損害賠償を特別遵守事項として義務付ける制度は採用されなかったものの³⁰⁾、代わりに保護観察において設定される生活行動指針の中に具体的に損害賠償の計画を立て、就労や貯蓄、被害者への送金等を設定して指導を行っていくことと、さらに損害賠償を含め被害者への損害回復責任の指導に関わる事実について保護観察対象者が保護観察官等に報告し、又は資料を提示することを遵守事項に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改革案が採択され、現在、更生保護法改正案が国会に提出され、近く成立する見込みである。

しかし、日本は、ドイツ等と異なり、仮釈放後の保護観察期間が残刑期間に限られる残刑期間主義をとっているため、保護観察期間が数か月から半年ときわめて短く、被害者への賠償に向けた指導するのも、その履行を監督する期間としても余りにも短い。そのた

28) 日本弁護士連合会「損害賠償請求に係る債務名義の実効性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集計結果」(2015)。

29) 刑事施設における「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教育」検討会資料及び議事録(2020-2021)。

30) 不良措置の威嚇力を背景として損害賠償を強制することが適当でないとの理由が示されている。法制審議会少年法・刑事法（少年年齢・犯罪者処遇関係）部会第3分科会第3回議事録12-13頁。

め、残刑期間に関わらず一定の期間を保護観察期間とすることができるドイツのような考試期間主義³¹⁾を採用することが法制審議会部会でも議論されたが、将来の課題として積み残しとなっている。

Ⅲ 刑の執行段階における被害者支援

1 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教育

刑事施設でも、以前から交通刑務所における合同焼香や合同慰霊祭、被害者を課題とした内観や集団討議が行われていたが、2001年からはゲストスピーカー制度が導入され、少年院でも贖罪教育や被害者をテーマとした役割交換書簡法等が試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さらに監獄法に代わって2005年に制定された刑事収容施設法や2014年の新しい少年院法の下では特別改善指導や矯正教育の一つとして受刑者や少年に被害者の痛みや苦しみを理解させることに主眼が置いた「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教育」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そして、既に述べたように、2021年から施行されている第4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においては、この教育を賠償や贖罪に向けた具体的な行動を促すための内容にしていくことが提案され、プログラムの見直しが行われている。

2 刑の執行段階における被害者意見聴取・心情伝達制度

刑事施設側は、被害者や損害賠償の状況について正確な情報を有していないため、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教育を行うにしても、一般論に終始せざるを得ない。しかし、第4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においても被害者への賠償等に向けた具体的な指導を行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また、日本では、仮釈放意見聴取制度が2007年の更生保護法によって導入され、被害者は、申出によって、自身の心情や仮釈放に関する意見を地方更生保護委員会（仮釈放を審査・決定する委員会）に聴取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れにより、被害者の心情や意見を踏まえたうえで、帰住先の調整、特別遵守事項の設定等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しかし、仮釈放の審査は刑の執行終了が近い時点（刑期の80%台から90%台）で行われることから、被害者の心情や意見を刑事施設における矯正処遇に活かすことはできない³²⁾。また、殆どの被害者が仮釈放に反対するが、仮釈放が認められないことは

31) 太田達也『仮釈放の理論－矯正・保護の連携と再犯防止』慶應義塾大学出版会(2017)127頁以下。

殆どないことから、却って被害者を落胆させるばかり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もある。

日本では、2007年の更生保護法により、被害者の心情や要求を被害者から聴取して保護観察対象者に保護観察官が伝達する被害者心情伝達制度も導入されたが、自由刑の受刑者の場合、仮釈放にならなければ心情伝達を行うことはできない。また、長期刑の受刑者の場合、20年も30年も刑事施設で受刑した後、仮釈放になり、保護観察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段階で、被害者から心情をぶつけられるため、却って反発したりするなど、感銘力に欠けるという問題もある³³⁾。

そこで、現在、刑事収容施設法の改正法案が国会で審議されており、これが成立すれば、刑（や保護処分）の執行段階で、希望する被害者から心情や意見を聴取し、矯正処遇を行う上での参考にするとともに、被害者が希望する内容については、受刑中に受刑者に伝達する制度が導入されることとなる。これによって、刑事施設側は、被害者の状況や要望を踏まえたうえで、矯正処遇を行うことができ、仮釈放の申出（刑事施設長による）や審査もこうした矯正処遇の成果を踏まえて判断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少なくとも、殆ど評価されない仮釈放に関する被害者の意見を仮釈放審査の段階になって聴くより余程良い。

このように、日本では、刑の執行の初期段階から被害者に関与を認めることで、被害者の心情充足や損害回復を促すとともに、受刑者の真の更生に向けた働きかけを充実させることとしている。

IV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被害者の生活支援

1 犯罪被害者支援条例と基本計画の制定

日本では、近年、地方公共団体による被害者支援制度の整備が進んでいる。

地下鉄サリン事件、神戸児童殺傷事件、和歌山毒入りカレー事件など1990年代中盤以降に発生した重大事件を契機として、犯罪被害者を支援するための条例を制定する地方公共団体が現れるようになったが、地方公共団体による被害者支援制度の整備が進んだのは、2004年に制定された犯罪被害者等基本法が被害者支援に関する地方公共団体の責務を規定してからである。

当初、地方公共団体が制定した犯罪被害者支援条例は、犯罪被害者に見舞金や支援金

32) 制度の限界について、太田達也「自由刑の執行過程における被害者の意見聴取及び伝達制度—修復的矯正・修復的保護観察への発展可能性を含めて—」山口厚等編『高橋則夫先生古稀祝賀論文集』成文堂（2022）906頁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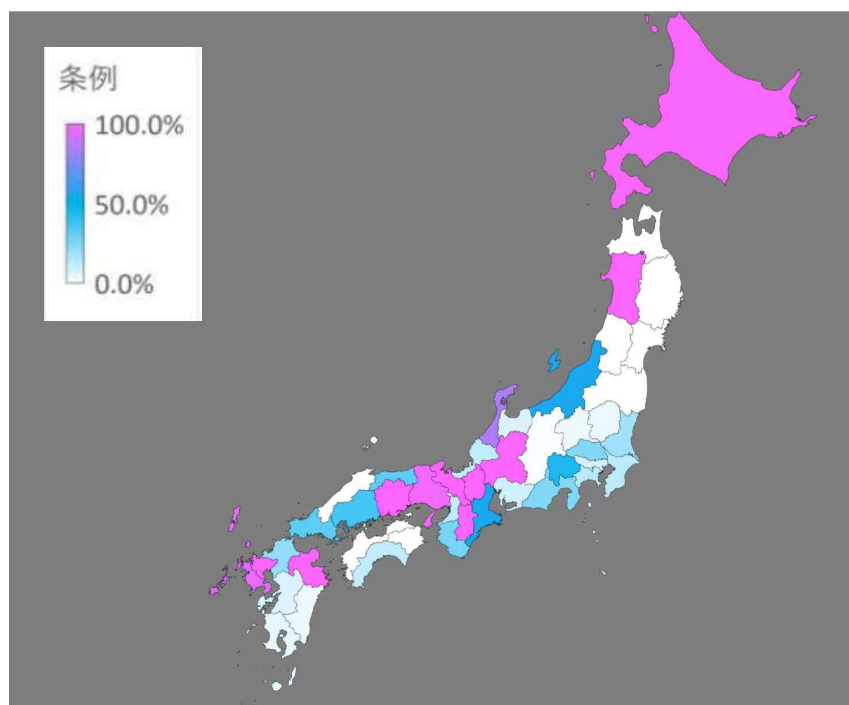
33) 同上910頁以下。

を支給するだけのものが多く、安全まちづくり条例のなかに被害者支援の規定を入れるに止まるところもあった³⁴⁾。しかし、犯罪被害者等基本法が成立してからは、地方公共団体の責務や被害者支援基本計画の策定、具体的な被害者支援制度などを定めた総合的な被害者支援条例が制定されてい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しかし、図1や図2に示すように、犯罪被害者支援条例や計画の制定が進んでいる地域もあれば、そうでない地域もあり、地域格差が激しい。内閣府が地方公共団体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調査に拠れば、こうした地域格差の原因は、重大事件の発生が少ないため被害者支援制度の必要性がないと考えている自治体や、既存の一般の福祉や社会制度で十分対応できると考えている自治体が多いことによる³⁵⁾。しかし、被害者支援制度は、地震などの自然災害対策と同じで、きちんと整備しておき、犯罪被害が発生したとき、直ちに適用できる状態に常にしておくことが重要である。

特に、条例の制定は、地方公共団体内の各部署が被害者支援の制度を設ける動機付けとなったり、関係機関に対して協力を求めやすくなったりするほか、導入された被害者支援制度が継続的・安定的に行われることが担保され、予算的な措置も取りやすくなるため、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被害者支援制度を整備する上で取るべき最初の施策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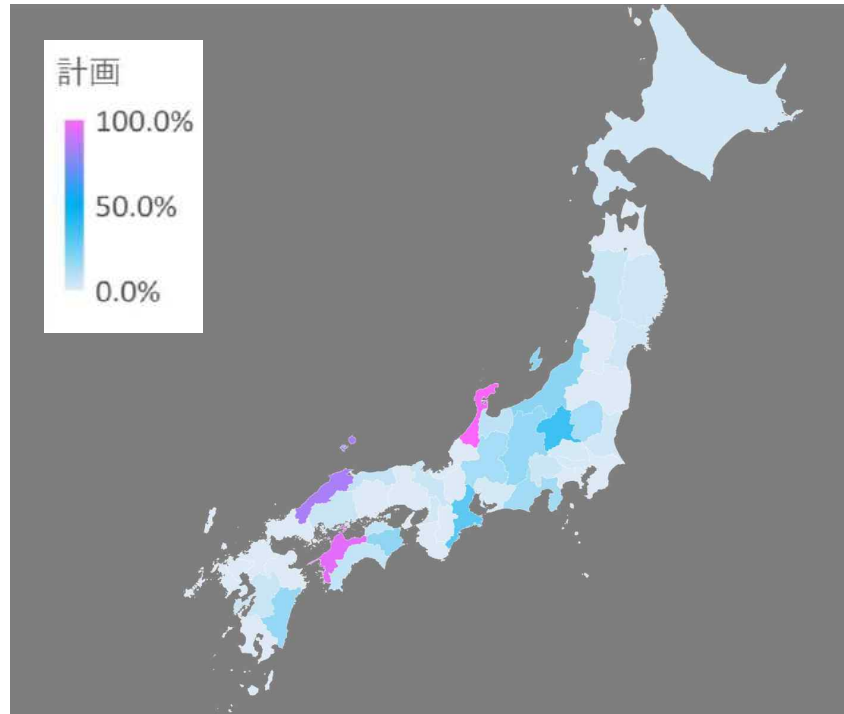
図1-1 市町村における被害者支援条例の制定状況（2021年4月1日現在）



34) 太田達也「地方公共団体による被害者支援の意義と課題－犯罪被害者支援条例の分析を中心として」法学新報（渥美東洋先生退職記念論文集）112巻1・2号（2005）759頁以下。

35) 内閣府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平成21年度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施策に関する調査報告書」（2010）。

図 1—2 市町村における被害者支援計画の作成状況（2021年4月1日現在）



資料 警察庁『犯罪被害者等施策主管課の確定状況，総合的対応窓口の設置状況，条例・計画等の制定・策定の状況及び見舞金・貸付金制度の導入状況（市区町村）』（2021）を元に作図。

図 2 犯罪被害者等支援条例の地域格差と競合



2 地方公共団体による被害者支援の内容

比較的早い段階で犯罪被害者支援条例を制定した市町村を含め、多くの地方公共団体が被害者に死亡の場合は30万円、傷害の場合は5万円といった固定額の見舞金又は支援金を支給する制度を設けている。こうした見舞金制度は、犯給制度に比べ迅速な支給が可能であるという利点もあり、今後もより多くの地方公共団体が見舞金制度を設けるべきであるという意見が多い³⁶⁾。確かに、犯罪被害者にとっては、見舞金がないよりあった方がよいかもしれないが、本当に被害者がこうした金額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あれば、全国一律に適用できる犯給制度を拡充すべきである。しかも、見舞金制度を設けている地方公共団体の殆どは、犯給制度と同じ要件を定めているため、犯給制度の上乗せ的なものとなってしまっており、反対に言えば、犯給制度の支給対象にならない者は条例に基づく見舞金の対象にもならない。

むしろ地方公共団体による経済的支援は、犯給制度といった国の制度にはない制度や要件を設定し、国の制度の不足部分を補うべきである。ごく一部の自治体は、国外で犯罪被害を受けた被害者や遺族にも見舞金を支給したり、過失犯の被害者も支給の対象としており、こうした制度もその一例である。支援の内容としても、見舞金的なものより、一部の自治体が導入したような生活資金の貸付けであるとか、家事・介護費用、配食サービス費用、一時保育費用、転居費用、ハウスクリーニング費用、精神医療費用、カウンセリング費用、犯罪行為に関する情報の提供を公衆に求めるための費用、被害者参加弁護士費用、消滅時効を防ぐための損害賠償請求の再提訴費用といった、各種の費用の助成制度を設けることも検討すべきである。また、被害者の子どもの高校や大学進学のための奨学金を支給する自治体も僅かながらあり、こうした制度も拡充していくべきである。

兵庫県の明石市では、犯罪被害者等支援条例により、加害者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に係る債務名義を取得した犯罪被害者等から当該請求権を譲り受けることを条件として、その金額と同額の立替支援金を支給するという制度を導入している。犯罪者の損害賠償を市が立て替える制度であり、事後に市が犯罪者に求償していくものである。日本では、国がこうした損害賠償の立替制度を設けるべきとの主張が被害者からなされており、明石市の条例の運用も注目されている。しかし、明石市のように300万円以下という限られた損害賠償の立て替えならまだしも、重大事件の損害賠償となると、犯罪者は長期の受刑をすることになるだけでなく、釈放後は国や自治体からの求償から逃れるため、住民登録もせず、雲隠れして、社会生活が送れなくなる可能性が高いなど、問題無しとしない。

経済的支援以外の支援としては、この外、一部の自治体でホームヘルパーの派遣といっ

36) 齊藤実「犯罪被害者支援条例と経済的支援」獨協法学114号(2021)352頁。

た生活支援，独自のカウンセリング制度，法律相談などが導入されている。

3 基礎自治体（市区町村）と広域自治体（都道府県）の役割分担と連携

地方公共団体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条例の制定や支援制度の創設が進むなか，都道府県とその下にある市区町村がそれぞれ被害者支援制度を設けることになってきている（図2）。その場合，基礎自治体（市区町村）と広域自治体（都道府県）のどちらがどのような支援制度を設けるべきかという問題が生じている。

結論的には，法律相談やカウンセリング，住居支援といった支援は，提供機関を一つに限る必要は無く，基礎自治体と広域自治の双方が制度を整備することが望ましい。それから，基礎自治体と広域自治は，それぞれ教育，福祉，保健，労働などの所管事項を有しているから，当該所管事項に関連した被害者支援は担当の自治体が行うことになろう。これに対し，見舞金の支給のような経済的支援は，両者がたぶって制度を設ける意味があまりないように思われる。

広域自治体は，都道府県下の各市町村が被害者支援を進めるうえで，情報交換や助言，職員の研修など，調整・支援的な役割を果たすべきである。もし市町村が被害者支援の上で財政的な問題を抱えているのであれば，市町村が行う被害者支援に対し補助の制度を設けることも一案である（新潟県，大分県）。

〈謝辞〉

この度は，韓国被害者学会設立30周年，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創設者の閔建植名誉会長様，歴代の会長様，会員の皆様に御祝い申し上げるとともに，韓国被害者学会の今後の更なる発展をお祈り致します。

日本被害者学会理事長 太田達也

表 1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状況

年	申 請 者 数				支 給 裁 定 者 数				不支給 裁定者数	支給平均額 (単位1,000円)		
	総 数	遺 族	障 害	重傷 病	総 数	遺 族	障 害	重傷 病		遺 族	障 害	重傷 病
2017	390	111	108	171	353	114	89	150	44	6,285	2,787	244
2018	386	123	103	160	295	89	83	123	34	6,140	1,734	274
2019	385	132	96	157	316	116	91	109	59	6,139	3,196	242
2020	369	118	88	163	263	103	62	98	33	5,900	3,199	245

資料 警察庁

表 2 損害賠償命令制度

年	終局 総件数	請求金額					終局区分									
							決 定					和解	放棄	認諾	取下	その他
		500 万円 まで	1000 万円 まで	5000 万円 まで	1億 円 まで	1億 円超	認 容	棄 却	却 下	終 了	そ の 他					
2009	162	89	18	34	18	3	71	0	1	21	1	30	1	7	30	0
2010	239	109	40	41	26	23	125	0	1	30	0	47	0	10	24	2
2011	237	103	45	40	36	13	130	2	7	30	1	37	0	5	24	1
2012	246	120	36	45	35	10	130	0	4	30	0	43	0	13	26	1
2013	312	137	60	61	43	11	151	2	6	41	0	62	0	11	37	2
2014	264	124	52	49	25	14	118	0	2	42	2	57	0	14	28	1
2015	307	171	46	46	28	16	127	2	1	42	0	77	0	15	40	3
2016	306	169	54	52	22	9	99	0	7	43	0	107	0	11	39	0
2017	295	163	63	38	22	9	142	1	1	36	0	85	0	9	20	1
2018	309	185	51	51	14	8	141	0	6	41	0	74	0	13	33	1
2019	318	172	60	47	34	5	144	0	7	38	0	75	0	19	35	0
2020	289	155	55	44	27	8	118	1	2	44	0	75	0	9	37	3

【발제문/번역문】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 과거·현재·미래

오오타 타츠야*

번역: 김 혁**

I.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의 역사적 경위

일본에서는 1960년대 전후에 도쿄의과치과대학의 나카타 오사무(中田修) 교수와 게이오대학의 미야자와 코이치(宮澤浩一) 교수에 의해 피해자학이 소개되어¹⁾, 피해수용성과 피해자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²⁾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피해자학이 인지되었다고는 하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같은 해, 피해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당시의 명칭)이 제정되어,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³⁾

그러나 그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한 진전은 없었고,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1990년 미야자와 코이치 교수가 일본피해자학회를 설립하여 피해자학을 논의하는 학술적 장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⁴⁾ 그 직후,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제도 발족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석상에서 범죄피해자 유족인 오쿠보 에미코(大久保恵美子)씨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일본피해자학회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범죄피해자의 실상에 관한 일본 최초의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곤궁에 더하여 수사, 소추, 공판 과정에서 다양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⁵⁾

이 연구성과를 토대로 1996년 경찰청은 피해자대책요강(현재는 2021년 범죄피해자 지

* 일본피해자학회 이사장,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 부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1) 中田修「Mendelsohn氏の被害者学」犯罪学雑誌24卷6号(1958) 8頁 이하; 宮澤浩一『被害者学の基礎理論』世界書院(1966).

2) 주된 업적은 이하 논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宮澤浩一編著『犯罪と被害者第1巻・第2巻・第3巻』成文堂(1970・1972・1979).

3) 浅野信二郎「犯罪被害給付制度の基本的考え方」警察学論集33卷11号(1980)1頁 이하. 선행연구로는, 大谷實・宮澤浩一名共編『犯罪被害者補償制度』成文堂(1976).

4) 太田達也「日本被害者学会の経緯と展望—矯正との連携を模索して」矯正研究5号(2022예정).

5) 宮澤浩一ほか編『犯罪被害者の研究』成文堂(1996).

원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는 한편, 수사 및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연락제도를 도입하였다.⁶⁾ 이 대책을 계기로 이후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나아가 절차 참가에 관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해서는 1999년 검찰청이 범죄피해자에게 불기소의 이유 및 공판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신설하였으며⁷⁾, 현안이었던 형사시설 및 소년원에서의 피수용자 처우상황, 가석방·가퇴원을 포함한 석방정보의 제공에 관해서도 2007년 제도개정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⁸⁾ 또한 피해자가 공판 중인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하거나(당시 명칭으로는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⁹⁾, 소년(20세 미만) 보호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뿐만 아니라¹⁰⁾, 피해자가 공판을 우선적으로 방청하거나 그전까지 비공개로 되어있던 소년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현되었다.¹¹⁾

한편,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되었다. 앞서 언급한 수사과정에서의 제도에 더하여,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차폐(가림) 조치,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제도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¹²⁾, 피해자나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나 증인의 성명, 주소 등이 피고인 또는 방청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¹³⁾

더욱이 피해자가 일정한 형태로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다.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것은 미국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의견진술제도였다. 당초에는 양형이 무겁게 될 것을 우려한 변호사회 등이 반대하였지만, 피해자의 심정 충족과 적절한 양형 실현을 위하여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공판에서의 의견진술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¹⁴⁾,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보호절차(심판에 한정되지 않음)에서의 가정재

6) 阿部信三郎 「警察における被害者連絡制度」 警察学論集 52卷5号(1999)47頁 이하.

7) 八澤健三郎 「被害者等通知制度について」 警察学論集52卷5号(1999)64頁 이하.

8) 櫛引唯一郎 = 藤原尚子 「被害者等に対する加害者の処遇状況等に関する通知について」 刑政119卷12号(2008)25頁 이하.

9) 飯島泰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の概要」 JURIST 1185号(2000)8頁 이하.

10) 飯島泰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等」 JURIST 1195号(2001)2頁 이하.

11) 飯島泰 「少年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JURIST 1364号(2008)76頁 이하; 長嶺陽一 「犯罪被害者等による少年審判の傍聴—少年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立法と調査281号 (2008) 3頁 이하.

*역주: 원문에는 부첨인(付添人)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어법에 맞지 않아 우리 제도에 해당하는 신뢰관계인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그 외의 재판소, 검찰관, 가퇴원 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의 경우, 우리 제도인 법원, 검사, 임시퇴원 등으로 의역하지 않고 원문 한자 표기 그대로 번역하였다.

12) 神村昌通 「刑事訴訟法及び検察審査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等」 JURIST 1185号(2000)2頁 이하.

13) 白木功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JURIST 1338号(2007)48頁 이하; 保坂和久 「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8年法律第54号)について(2)」 法曹時報69卷3号 (2017) 39頁 이하.

14) 神村昌通 · 前掲注(12)2頁 이하.

판소 또는 조사관에 의한 피해자의견청취제도가 도입되었다.¹⁵⁾ 또한 2007년 갱생보호법에 따라 가석방 심리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청취제도도 마련되었다.¹⁶⁾

일본의 피해자지원대책 중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2004년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의 제정이었다.¹⁷⁾ 같은 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기본정책을 규정한 것 외에도, 같은 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5년 마다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 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 주택,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지원제도가 크게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기본법에 형사절차에 대한 참가 기회를 확충할 것이 규정되어 있었던 데 더하여,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강한 요망이 정부에 제출되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참가제도가 도입되었다.¹⁸⁾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와 달리 피해자참가인이 사실인정에 관한 조사에 관여할 수 없고, 상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사실 이외의 정상(일반 정상)에 관하여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하거나 의견 진술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거나, 검찰관의 입증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도입 후 피해자참가인은 검찰관과 사전 협의한 후에 피해자참가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제도는 대체로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소편의주의(기소재량주의)를 채용하여 기소유예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불기소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심사회가 기소상당 또는 불기소부당(재수사상당을 의미)으로 의결하더라도 검찰관은 그 의결에 구속되지 않았으나, 2004년 검찰심사회법이 개정되어 2009년부터 검찰심사회가 처음의 기소상당의결에 이어 두번째 심사에서도 기소의결을 한 경우 재판소가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관으로서 피의자를 기소하여야 하는 기소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¹⁹⁾ 이는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재판원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제도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사법참가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2009년 제도 시행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동안 기소강제가 이루어진 것은 15건밖에 없고²⁰⁾, 그마저도 기소후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제도개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형사소송법에 있었던

15) 飯島泰・前掲注(10)2頁 이하.

16) 河原答子「更生保護法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施策」法律のひろば60巻8号(2007)38頁 이하.

17) 井川良「犯罪被害者等基本法」ジュリス1285号(2005)39頁 이하.

18) 白木功・前掲注(13)48頁 이하; 椎橋隆幸「犯罪被害者等の刑事裁判への参加」ジュリスト1338号(2007)56頁 이하.

19) 辻裕教「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16年法律第62号)について(4)」法曹時報58巻8号(2006)31頁 이하.

20) 検察審査会「検察審査会の受理件数, 議決件数等(平成29年~令和3年)」(2022).

부대상소가 전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2007년 법개정(「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소가 형사기록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재판에 이어 4회 이내의 심리에서 손해배상명령을 결정하는 손해배상명령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²¹⁾

전술한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제도 발족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양향을 받아 민간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시작되었다. 도쿄의과치과대학의 야마가미 히로시(山上皓)교수가 1992년에 범죄피해자지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개시하였고, 이는 이후 피해자지원도민센터(도쿄)의 설립(2000년)으로 이어졌다. 그 후 각지에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1998년에는 당시 개설되어 있던 8개 피해자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전국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2001년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질과 수준을 유지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민간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피해자의 동의 필요)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48개 피해자지원센터 중 47개 단체가 조기원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지난 40년간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과제도 남아 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제4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에서도 제도의 개선 및 도입에 관한 많은 제안이 있었다.²²⁾ 특히 현재 일본에서는 피해자지원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 형의 집행단계에서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이 논의되고 있는데, 본 보고에서는 주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일본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그 외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의 대상 및 금지행위의 확대,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증상이나 보복 음란물(revenge porn)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의 사법심사제도 도입, 민간지원단체의 기반강화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지적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II.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제도(범급제도)

21) 白木功・前掲注(13)48頁 이하; 奥村正雄「犯罪被害者等の損害回復と損害賠償命令制度」ジュリスト1338号(2007)63頁 이하.

22) 内閣「第4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画」(2021).

일본에서는 1980년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2008년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이 제정되어,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 장애가 남은 사람, 일정한 가료를 요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유족급부금, 장애급부금, 중상병급부금을 지급하고 있다(표 1).

미국, 프랑스, 대만 등과 달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조기경감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의 개정 후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수입과 피해의 정도에 기초하여 산출한 일시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이다(단, 중상병급부금은 손실보전형). 성범죄 등에 의한 PTSD와 같은 정신적 피해의 경우에도 일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장애급부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중상병급부금의 지급대상도 된다. 그러나 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 카운슬링 비용은 중상병급부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범급제도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²³⁾ 최종적으로는 각 도도부현 경찰이 독자적인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범급제도는 각 도도부현 경찰을 감독하는 공안위원회가 재정(裁定)기관이다. 일반 국가예산(경찰청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미국 또는 캐나다와 같이 범죄자로부터 재판에 기초하여 징수하는 특별부가금(special assessment) 제도나 한국과 같이 벌금의 일부(8%)를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기금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피해자보상이나 피해자지원의 예산에 충당하는 제도는 없다.

범급제도는 시행 후 피해자의 실정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요건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있다. 먼저, 범급제도는 고의범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과실범의 피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과실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실운전치사상(입법 당시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보험금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범급제도가 당시 발생하였던 문지마 범죄(通り魔)를 상정하고 제도화되었던 점, 과실범의 경우 예견가능성이나 결과회피가능성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²⁴⁾ 그러나 이론적으로 과실범을 제외하여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으며, 해외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과실범도 대상으로 하는 예가 많다는 점²⁵⁾ 교통사건이외의 중과실치사와 같은 과실사건의 피해자도 중대한 손해를 입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 사고재해의 경

23) 犯罪被害者等に対する心理療法の費用の公費負担に関する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2013).

24) 太田達也「犯罪被害者補償制度の研究(2・完)－改正・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制度の課題－」法学研究74巻6号(2001)69-70頁.

25) 内閣府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平成23年度諸外国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に対する経済的支援に関わる制度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2012). 일본의 범급제도를 모델로 한 대만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과실범의 피해자도 지급대상이 된다. 太田達也「台湾の犯罪被害者補償制度－犯罪被害者保護法の運用状況」法律のひろば54巻6号(2001)48-49頁.

우 가해기업이 도산하여 피해자에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실범의 피해자도 급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는 사람에 맞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bedingter Vorsat, willful negligence)가 인정된다고 하여 급부금을 지급한 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도입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동일한 교통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이므로 지급의 대상이 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과실운전치사와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범급제도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13년 알제리 테러사건, 캄에서 발생한 일본인을 포함한 무차별살인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국외범죄피해자조위금을, 또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범죄피해 장애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지급액이 고정액일 뿐만 아니라 액수도 적다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의 피해자에게 급부금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외 범죄피해 조위금 등 지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불지급결정을 하면 된다.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크기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에 「국외 범죄피해 조위금 등 지급에 관한 법률」의 지급액 및 산정방법을 범급법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²⁶⁾

2.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

중대범죄의 경우 배상능력과 배상의사의 결여로 인하여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에의 손해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대사건의 범죄자에게는 사형이나 장기의 자유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는 이 점이 또한 장벽이 된다. 최근 실무에서는 가석방되는 무기수형자가 적고, 가석방되는 경우라도 형사시설에서 30년에서 37년 정도 수용된 이후이기 때문에²⁷⁾ 배상은 더욱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신속, 간이·간편, 저비용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손해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사재판(유죄판결)에 이어 동일한 재판소가 형사재판의 기록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제도에 착안하여 메이지시대에 도입되었다가 제2차세

26) 「국외 범죄피해 조위금 등 지급에 관한 법률」 성립 전에 범급제도를 개정하여 국외에서의 범죄 피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견해로는, 太田達也・前掲注(22)76-77頁.

27) 法務省保護局「無期刑の執行状況及び無期刑受刑者に係る仮釈放の運用状況について」(2021).

제대전 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폐지되었던 부대사소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형사재판 후 4회 이내의 심리에서 손해배상이 결정된다.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사례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2).

그러나 손해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가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범죄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손해배상명령이 이행된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지금까지 일본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죄자에게는 자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사고 하에,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법이나 민사 분야에서 범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2019년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2003년 도입된 채무자에 대한 재산개시절차(재판소에 출석하여 진술)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소의 명령에 근거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금융기관, 등기소, 시정촌, 연금기구에서 예·저금채권이나 주식, 토지·건물, 급여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범죄자에게 정말로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에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은 형사시설에서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에 있어 배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지도를 충실히 하도록 제언한 바 있고, 2021년 법무성에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책정하고 있다.²⁹⁾

또한 가석방 후의 보호관찰이나 전부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지도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2007년에 제정된 갱생보호법(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단기간의 가석방기간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배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소년법의 적용연령 인하와 범죄자 처우 제도의 개선을 심의한 법제심의회 부회에서도 재차 이 문제가 검토되었는데, 손해배상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는 채용되지 않았지만³⁰⁾, 그 대신 보호관찰에서 설정되는 생활행동지침 내에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계획을 세워 취업, 저축, 피해자에 대한 송금 등을 설정하여 지도할 것과 나아가 손해배상을 포함한 피해자에의 손해회복책임의 지도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28) 日本弁護士連合会 「損害賠償請求に係る債務名義の実効性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集計結果」(2015).

29) 刑事施設における「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教育」検討会資料及び議事録(2020-2021).

30) 불량조치의 위하력을 배경으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法制審議會少年・刑事法(少年年齢・犯罪者処遇関係)部会第3分科会第3回議事録12-13頁.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 등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시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 채택되어, 현재 갱생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곧 성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 등과 달리 가석방 후의 보호관찰기간이 잔형 기간으로 한정되는 잔형기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기간이 수개월에서 반년으로 매우 짧아, 피해자에의 배상을 위해 지도하기에도 또한 그 이행을 감독하기에도 지나치게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잔형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을 보호관찰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독일과 같은 고시기간주의³¹⁾를 채용하는 안이 법제심의회 부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Ⅲ. 형 집행단계에서의 피해자지원

1.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

형사시설에서도 이전부터 교통형무소에서의 합동 분향이나 합동 위령제, 피해자를 과제로 한 반성(공감), 집단토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2001년부터는 외부강사제도가 도입되어 소년원에서도 속죄교육이나 피해자를 주제로 한 역할교환서간법(role-lettering) 등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감옥법을 대신하여 2005년에 제정된 형사수용시설법과 2014년 새로운 소년원법 하에서는 특별개선지도나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수형자 또는 소년에게 피해자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이해시키는 것에 주안을 둔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육을 배상 또는 속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형 집행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청취·심정전달제도

형사시설 측은 피해자나 손해배상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반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4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1) 太田達也『仮釈放の理論－矯正・保護の連携と再犯防止』慶應義塾大学出版会(2017)127頁 이하.

또한 일본에서는 가석방 의견청취제도가 2007년 갱생보호법에 의해 도입되어,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심정이나 가석방에 관한 의견을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석방을 심사·결정하는 위원회)가 청취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심정이나 의견을 고려하여 귀주처의 조정, 특별준수사항의 설정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는 형의 집행종료가 가까운 시점(형기의 80%에서 90%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정이나 의견을 형사시설에서의 교정 처우에 활용할 수는 없다.³²⁾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석방에 반대하는데,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를 낙담시킬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갱생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심정이나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청취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이 전달하는 피해자심정전달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자유형 수형자의 경우 가석방 되지 않으면 심정전달을 실시할 수 없다. 또한 장기형의 수형자의 경우 20년 또는 30년 이상 형사시설에서 수형한 후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된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심정을 전달받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하는 등 감명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³³⁾

이에 현재 형사수용시설법의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개정법안이 성립하면 형(또는 보호처분) 집행단계에서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심정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교정 처우에 있어 참고로 삼으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형 중에 있는 수형자에게 전달하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형사시설 측은 피해자의 상황이나 요망을 고려하여 교정 처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가석방 신청(형사시설장에 의한) 또는 심사도 이러한 교정 처우의 성과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는 거의 평가되지 않는 가석방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가석방 심사 단계에서 청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형 집행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정충족이나 손해 회복을 촉진함과 동시에 수형자의 진정한 갱생을 위한 개입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다.

32) 제도의 한계에 관하여, 太田達也「自由刑の執行過程における被害者の意見聴取及び伝達制度－修復的矯正・修復的保護観察への発展可能性を含めて－」山口厚等編『高橋則夫先生古稀祝賀論文集』成文堂(2022) 906頁 이하.

33) 同上910頁 이하.

* 역주: 지하철 사린 사건은 1995년 신흥종교단체인 오진리교가 도쿄의 지하철 내에서 신경가스인 사린(sarin) 가스를 살포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고베아동살상사건은 1997년 고베시에서 당시 14세였던 중학생이 다수의 초등학생을 살해하거나 중경상을 입힌 문지마 살인사건으로 당시 중학교 정문에 목이 잘린 남자 아이의 머리가 든 비닐봉지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명문을 끼워 넣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사건은 1998년 와카야마시에서 개최된 여름 축제에서 주민들 다수가 독극물이 혼입된 카레를 먹고 사상한 사건이다.

IV.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피해자의 생활지원

1. 범죄피해자지원조례와 기본계획의 제정

일본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제도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사린사건, 고베아동살상사건,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사건* 등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발생한 중대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제도의 정비가 활성화된 것은 2004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부터 이다.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범죄피해자지원조례는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규정한 조례가 많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조례」 중에 피해자 지원 규정을 삽입하는 데 그친 곳도 있었다.³⁴⁾ 그러나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의 책정,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규정한 종합적인 피해자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피해자지원조례나 계획의 제정이 활성화된 지역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내각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간 편차의 원인은 중대사건의 발생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기존의 일반적인 복지 또는 사회제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데에서 기인한다.³⁵⁾ 그러나 피해자지원제도는 지진 등 자연재해대책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정비해 놓은 다음, 범죄 피해가 발생한 때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를 상시화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부서에게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할 동기를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력을 요구하기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도입된 피해자 지원제도가 계속적·안정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으며, 쉽게 예산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피해자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있어 취해야 할 최초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34) 太田達也「地方公共団体による被害者支援の意義と課題－犯罪被害者支援条例の分析を中心として」法学新報(渥美東洋先生退職記念論文集) 112卷1・2号(2005) 759頁 이하.

35) 内閣府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平成21年度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施策に関する調査報告書』(2010).

그림 1—1 시정촌에서의 피해자지원조례의 제정현황(2021년 4월 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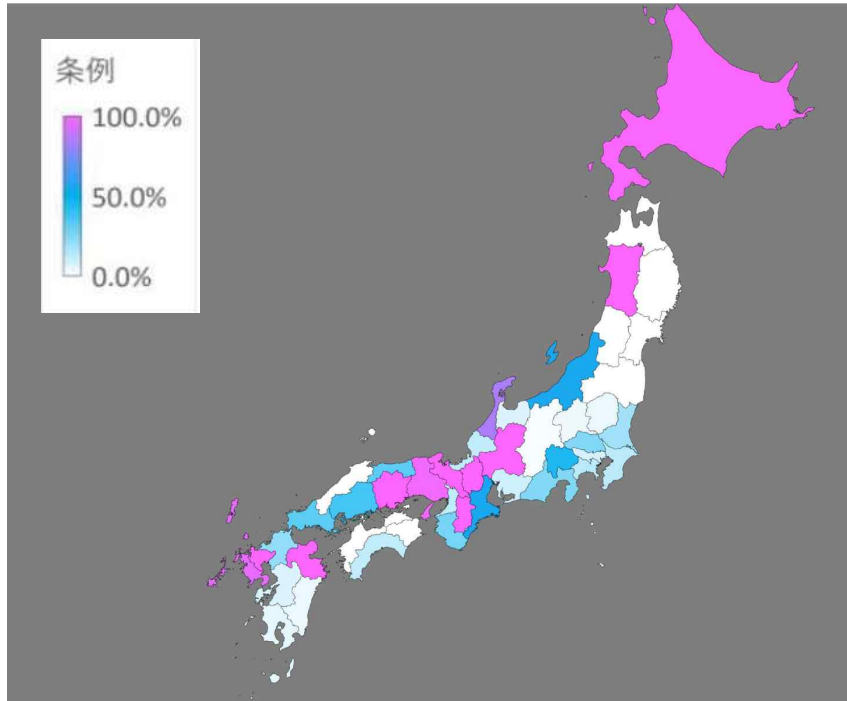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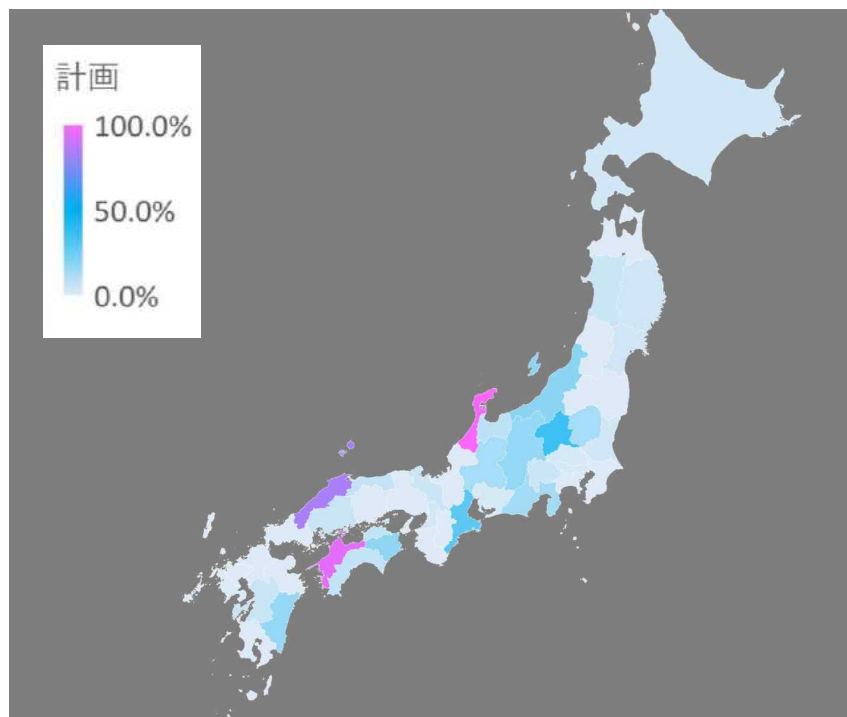


그림 1—2 시정촌에서의 피해자지원계획의 작성 현황(2021년 4월 1일 현재)



자료: 警察庁『犯罪被害者等施策主管課の確定状況, 総合的対応窓口の設置状況, 条例・計画等の制定・策定の状況及び見舞金・貸付金制度の導入状況(市区町村)』(2021)을 기초로 작도.

그림 2 범죄피해자 등 지원조례의 지역별 편차와 경합

도쿄도와 자치단체(62개 단체)

도쿄도와 5개 구·시만이 범죄피해자지원조례를 제정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의 내용

비교적 조기에 범죄피해자지원조례를 제정한 시정촌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엔, 상해의 경우 5만엔이라고 하는 고정액의 위로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위로금 제도는 범금제도에 비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위로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³⁶⁾ 분명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로금이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정말로 피해자가 이러한 금액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금제도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위로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지급요건을 범금제도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범금제도에 덧붙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범금제도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조례에 근거한 위로금의 지급대상도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은 범금제도 등 국가제도에 없는 제도나 요건을 설정하여 국가제도의 부족부분을 보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극히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과실범의 피해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그 일레가 될 수 있다. 지

36) 齊藤実「犯罪被害者支援条例と経済的支援」獨協法学114号(2021)352頁.

원의 내용으로도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보다는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것과 같이 생활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가사·개호비용, 배식 서비스 비용, 일시 보육비용, 이사비용, 청소비용, 정신의료비용, 카운슬링 비용,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공중에게 요구하기 위한 비용, 피해자참가변호사 비용,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의 재제소비비용과 같은 각종 비용의 조성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소수이기는 하나 존재하는데, 이러한 제도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효고현의 아카시(明石)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등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취득한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당해 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금액과 같은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범죄자의 손해배상액을 시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사후에 시가 범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아카시시의 조례 운용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카시시와 같이 300만엔 이하라고 하는 제한된 손해배상액의 대신 지급이라면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지만, 중대사건의 손해배상이라면 범죄자는 장기간 수형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석방 후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구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적 지원 이외의 지원으로는 그 외에도 일부의 지자체에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등의 생활지원, 독자적인 카운슬링제도, 법률상담 등이 도입되어 있다.

3.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조례의 제정 및 지원제도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도부현과 그 아래에 있는 시구정촌이 각각 피해자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그림 2).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중 어느 쪽이 어떠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법률상담이나 카운슬링, 주거지원과 같은 지원은 제공기관을 하나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소관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소관사항에 관련된 피해자 지원은 담당 지자체가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로금의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양자가 중복하여 제도를 마련할 의미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된다.

광역자치단체는 도도부현 아래의 각 시정촌이 피해자 지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정보 교환이나 조언, 직원 연수 등 조정·지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시정촌이 피해자 지원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시정촌이 실시하는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보조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니가타, 오이타현).

〈감사의 말씀〉

한국피해자학회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립자이신 민건식 명예회장님, 역대 회장님, 회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국피해자학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피해자학회 이사장 오오타 타츠야

〈표 1〉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현황

연도	신청자수				지급 재정자수				불지급 재정자수	지급평균액 (단위1,000엔)		
	계	유 족	장 해	중상 병重 傷病	계	유 족	장 해	중상 병重 傷病		유 족	장 해	중상병
2017	390	111	108	171	353	114	89	150	44	6,285	2,787	244
2018	386	123	103	160	295	89	83	123	34	6,140	1,734	274
2019	385	132	96	157	316	116	91	109	59	6,139	3,196	242
2020	369	118	88	163	263	103	62	98	33	5,900	3,199	245

자료: 경찰청

〈표 2〉 손해배상명령제도

연도	총 국 총 건 수	청구금액					종국 구분									
							결 정					화 해	포 기	인 락	취 하	기 타
		500 만엔 이하	1000 만엔 이하	5000 만엔 이하	1 억엔 이하	1억 엔 초과	인 용	기 각	각 하	종 료	기 타					
2009	162	89	18	34	18	3	71	0	1	21	1	30	1	7	30	0
2010	239	109	40	41	26	23	125	0	1	30	0	47	0	10	24	2
2011	237	103	45	40	36	13	130	2	7	30	1	37	0	5	24	1
2012	246	120	36	45	35	10	130	0	4	30	0	43	0	13	26	1
2013	312	137	60	61	43	11	151	2	6	41	0	62	0	11	37	2
2014	264	124	52	49	25	14	118	0	2	42	2	57	0	14	28	1
2015	307	171	46	46	28	16	127	2	1	42	0	77	0	15	40	3
2016	306	169	54	52	22	9	99	0	7	43	0	107	0	11	39	0
2017	295	163	63	38	22	9	142	1	1	36	0	85	0	9	20	1
2018	309	185	51	51	14	8	141	0	6	41	0	74	0	13	33	1
2019	318	172	60	47	34	5	144	0	7	38	0	75	0	19	35	0
2020	289	155	55	44	27	8	118	1	2	44	0	75	0	9	37	3

1

SESSION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전망

발 표 : Liaw Yih-Chian(前 타이페이 피해자 지원협회장)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발제문/원문】



台灣犯罪被害人保護及支援現況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in Taiwan

—以犯罪被害人保護協會之活動為中心—

— Focusing on the events of the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報告人：廖 益謙 2022.4.22

Presenter : Liaw, Yih-Chian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沿革History

1. 1998 : 犯罪被害人保護法

1. 1998 :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 1999 : 法務部捐助創立基金

新台幣4000萬成立犯罪被害人保護協會

財團法人，受法務部指揮監督

2. 1999 : Ministry of Justice donated 40 Million NTD for the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Found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Ministry of Justice

2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3. 2003 : 組織改制，聘用民間人士擔任總會部分董事、分會主任委員及委員

總會在台北，全國共有22個分會
(每個地方檢察署設立一個分會)

3. 2003: Organization reform.

Recruit civilian personnel to serve as board director, chapter director, sub-committee chairperson and committee members.

Committee located in Taipei with a total of 22 chapters nationwide.
(An office established at each District Prosecutor Office nationwide)

3



2、組 織 Organization

總會：董事會 (董事25人)	Committee : Board of Directors (25 Directors)
(董事長：台高檢檢察長)	Chairman: (Taiwan High Prosecutors Office Chief Prosecutor) :
官方	Official personnel
專家學者	Scholars and experts
社會人士	civilians
被害人代表	victim representative
專職人員12名	12 Full-time staff.

4



分會:委員會 (委員23人)	Chapter:Committee (23 committee members)
榮譽主任委員:地檢檢察長	Honorary Chairman: District Attorney General
主委、委員:民間人士	Chairman, committee members: Civilian personnel
專職人員共 70名	70 Full-Time Staff

5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志工：787名

政府機關和民間團體
共同合作的一個組織

Number of Volunteers : 787

An organiz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collaborates together.

政府機關包括：

檢察機關、
縣市政府、
警察機關、
司法機關、
內政部、
衛福部

Government Agencies include:

Prosecutors Office,
County and city government,
Police units,
Judiciary committee,
Ministry of the Interi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犯保馨角色：
愛心鳥
2021 公開製作

Mascot：
LOVELY BIRD
2021 Open Audition





3、經費來源Funding Source

- | | |
|--|--|
| 1. 基金孳息 | 1. Fund Yield (income of interest) |
| 2. 政府補助：
法務部、
衛福部編列預算、
各地檢署公務預算 | 2. Government Subsidy:
Designated budget from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located annual budgets from
each Prosecutor's Office |
| 3. 民間捐助款 | 3. Community Donation |

8



4、保護對象Protected Object

加害人：更生人
Perpetrator : Ex-Offender

- 被害人：**馨生人**
Victim : Rehabilitated Person

9



4-1 重傷受害者本人

1. Seriously injured victims.

4-2 因犯罪行為被害而死亡者之遺屬，依下列順序定之：

2. Survivors of deceased victims according to the following orders:

- 1) 父母、配偶及子女
- 2) 依賴被害人扶養之祖父母
- 3) 依賴被害人扶養之孫子女
- 4) 依賴被害人扶養之兄弟姐妹

- (1) Parents, spouse and children
- (2) Grand parents
- (3) Grand children
- (4) Brothers and sisters

* Items (2) (3) (4) limited to who are dependents of the deceased victims

重傷之定義：毀敗視能、聽能、語能、味能或四肢、生殖器官之機能，及其他對身體或健康有重大不治或難治之傷害

serious injury defined as :destruction or disablement of visual ability, hearing ability, sense of taste, sense of smell, or the functions of limbs or genital organs, or other material incurable or difficult-to-cure injury to human body or health

10



4-3 性侵害、家暴、兒虐、外籍配偶、外勞、人口販運之被害人

3.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foreign spouse, foreign workers, victim of human trafficking.

4-4 在境外因他人之故意行為而被害死亡之遺屬

4. Testament of the deceased victim who passed away abroad due to another's intentional act.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5、服務項目 Service Items

■金錢補償：

犯罪被害補償金、
扶助金

■ Compensation:

Victim support compensation,
aid.

■保護服務：

1. 安置收容

■ Protection Service

1. Settlement and
accommodation arrangement ,

2. 社會救助

2. Social Assistance/ Relief

3. 醫療服務

3. Medical Care,

4. 法律協助

4. legal Assistance,

5. 申請補償

5. Compensation Application,

12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保護服務：

■ Protection Service

6. 協助調查

6. Investigation Assistance,

7. 安全保護

7. Safeguard,

8. 心理輔導

8. Psychological counseling,

9. 生活重建

9. Life Rehabilitation,

10. 信託管理

10. Trust Fund Management,

11. 緊急資助

11. Emergency Funding,

12. 出具保證書

12. Providing Letter of Guarantee

13. 訪視慰問

13. Comforting Visit,

14. 其他

14. others.

13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6、創新服務項目 Innovative Service Items

- | | |
|-----------------|--|
| 1. 緊急紓困補助 | 1. Relief subsidy |
| 2. 小額貸款(5萬~10萬) | 2. Small loan
(50 Thousand~100 Thousand) |
| 3. 重傷被害人物資捐贈 | 3. Provide relief supplies for
the severely injured |



14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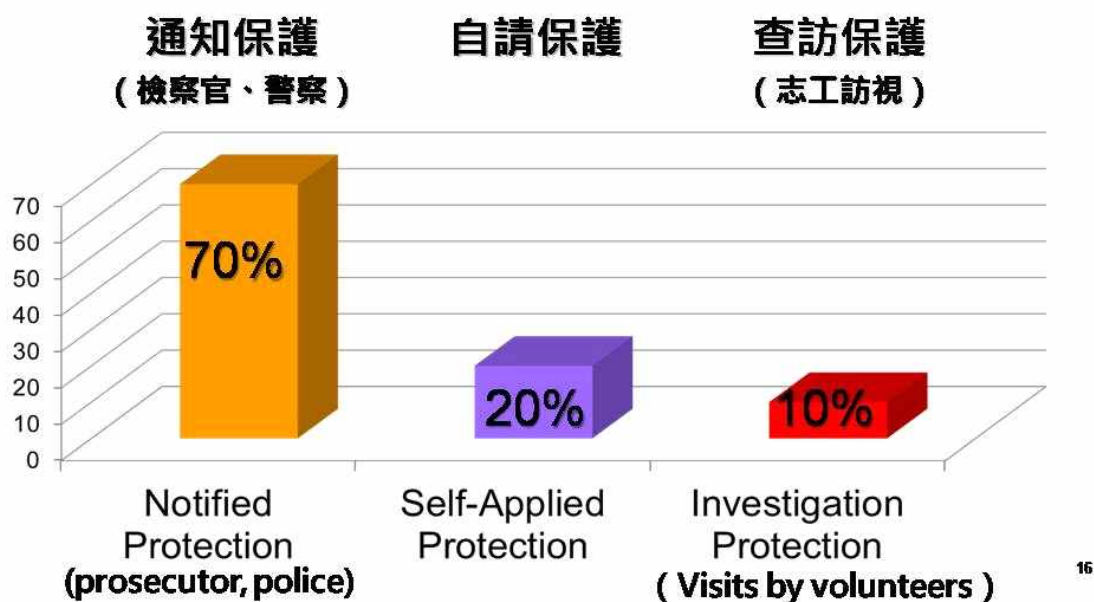
- | | |
|----------------|--|
| 4. 年節關懷、歲末感恩晚會 | 4. Holiday Care Services,
Year-End Appreciation Party |
| 5. 技藝、才藝訓練 | 5. Skills and Talent Training |
| 6. 獎、助學金 | 6. Scholarships and Grants |
| 7. 「馨生人」樂團 | 7. Victims' Music Band |



15



7、個案來源 Case Sources 2009 ~ 2021



0800全國免付費服務專線

0800 Toll-Free Services

0800-005-850

鈴鈴我 保護您

Call Me, Protect You



★ 依發話區域，自動轉接至各地轄區分會

Calls will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local Chapter according to area of jurisdiction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8、歷年服務案件 Previous Service Cases 1999 ~ 2021

- 受理案件總數：42,202件

(約2.000件/年)

Total accepted cases : 42.202 Cases

(Approximately 2.000 cases per year)

- 提供服務總人次：1.236.987人次

(約80.000人次/年)

Total people served : 1.236.987 people

(Approximately 80.000 people per year)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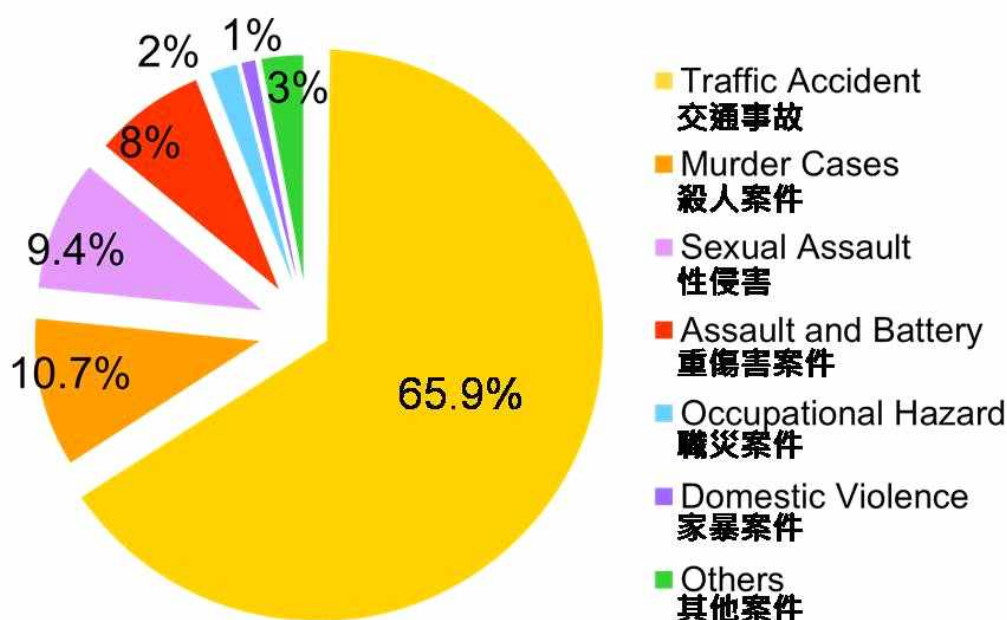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9、案件類型Case Types

- | | |
|---------------|----------------------------------|
| ■ 交通事故： 65.9% | ■ <u>Traffic Accident:</u> 65.9% |
| ■ 殺人案件： 10.7% | ■ <u>Murder Cases:</u> 10.7% |
| ■ 性侵害： 9.4% | ■ <u>Sexual Assault:</u> 9.4% |
| ■ 重傷害案件： 8% | ■ <u>Assault and Battery:</u> 8% |
| ■ 職災案件： 2% | ■ <u>Occupational Hazard:</u> 2% |
| ■ 家暴案件： 1% | ■ <u>Domestic Violence:</u> 1% |
| ■ 其他案件： 3% | ■ <u>Others :</u> 3% |

19



20



10、相關法律改進措施 Related Law Enhancements

- 《犯罪被害人保護法》
2002、2009、2011、2013、2015
20年來共 **5次修法**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2、2009、2011、2013、2015
Amended **5 times** within 20 Years
- 《2017司法改革國是會議》
「保護被害人與弱勢者的司法」
《2017 National Conference on Judicial Reform》
「Law that protects victims and the disadvantaged」

21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加強犯罪被害人保護方案》
推廣「修復式司法」
強化工作人員教育訓練
《 Enhanc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Program》
Promote “Restorative Justice”
Enhance Staff Education Training
- 警察單位增設：
「犯罪被害**保護官**」
Increase Police Units：
「Crime Victim Protection Officer」

22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刑事訴訟法》增訂：
「被害人**訴訟參與權**」
「審判中隱私保護及隔離遮蔽」
「被害人陪同措施」
「訴訟參與人詢問被告之權利」
- 《 Code of criminal procedure 》 Revised：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Privacy protection and isolation during trial」
「Companion measures for victims」
「Litigation participant's right to question the defendant」

23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加重**再犯**酒駕致重傷刑責》

原 1年以上7年以下 改 3年以上10年以下

《Stiffen penalty for repeated offenders of drunk driving resulting in serious injury》

From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7 years to more than 3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 《加重**再犯**酒駕致死刑責》

原 3年以上10年以下 改 無期徒刑或5年以上

《Stiffen penalty for repeated offenders of drunk driving resulting in death》

From more than 3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to life imprisonment or more than 5 years

24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犯罪被害人保護法》：

2022即將修法~~~

《 Crime Victim Protection Act 》：

Amendments to be made in 2022

25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1、課 題Tasks

- | | |
|----------------|---|
| 1. 加強媒體宣導 | 1. Enhance propaganda through media |
| 2. 志工持續教育訓練 | 2. Continuous education training for volunteers |
| 3. 結合相關民間社福團體 | 3. Collaborate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 4. 廣結善緣，籌措財源 | 4. Make good affinity with others and raise funds |
| 5. 擴大保護對象 | 5. Expand protected objects |
| 6. 補償申請從寬辦理 | 6. Lenient measures for compensation application |
| 7. 會務人力有待增加 | 7. Increase committee staff. |
| 8. 舉辦、參與國際交流活動 | 8. Host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因應疫情之特別服務

Special Servic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 | | |
|---------------|--|
| 12-1 視訊方式教育訓練 | 12-1 Online education training |
| 12-2 關懷活動線上辦理 | 12-2 Care services applied online |
| 12-3 電話方式代替家訪 | 12-3 Phone calls in replacement of visits |
| 12-4 物資紓困弱勢家庭 | 12-4 Provide relief supplies to disadvantaged families |
| 12-5 電台方式宣導 | 12-5 Promote through radio |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1 視訊方式教育訓練 Online education training



28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2 關懷活動線上辦理 Care services applied online



29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3電話方式代替家訪

Phone calls in replacement of visits



30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4物資紓困弱勢家庭

Provide relief supplies to disadvantaged families



31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5電台方式宣導 Promote through radio



32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3、Keyword

政府重視，民間支持！

Valued by the government,
supported by the community!



33



財團法人犯罪被害人保護協會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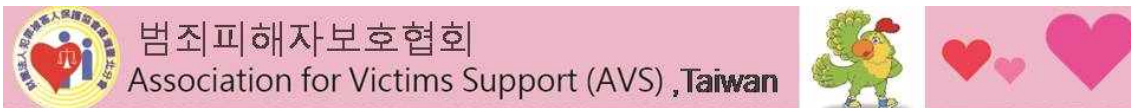
We Can Help



謝謝聆聽

Thank You

【발제문/번역문】



대만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in Taiwan

—범죄피해자보호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Focusing on the events of the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발표자 : 라오 이치안 2022.4.22

Presenter : Liaw, Yih-Chian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 연혁 History

1. 1998 : 범죄피해자보호법

1. 1998 :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 1999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협회 창립 기금 4천만 대만달러 지원

법무부 감독을 받는 재단법인

2. 1999 : Ministry of Justice donated 40 Million NTD for the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Found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Ministry of Justice

2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3. 2003 : 조직 개편. 이사회 이사, 분회 이사,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민간인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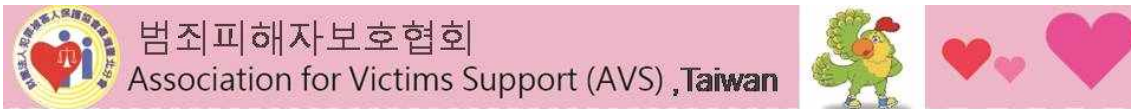
**총회는 타이페이에 위치, 전국에 22개 분회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에 분회 사무소 위치)**

3. 2003: Organization reform.

Recruit civilian personnel to serve as board director, chapter director, sub-committee chairperson and committee members.

Committee located in Taipei with a total of 22 chapters nationwide.
(An office established at each District Prosecutor Office nationwide)

3



2. 조직 Organization

총회:

이사회 (이사 25인)

이사장:

(대만 고검 검사장)

공무원
학자 및 전문가
민간인
피해자대표

상근 직원 12명

Committee :

Board of Directors (25 Directors)

Chairman:

(Taiwan High Prosecutors Office
Chief Prosecutor) :

Official personnel
Scholars and experts
civilians
victim representative

12 Full-time staff.

4



분회: 위원회

(위원 23인)

명예 위원장:

지검 검사장

위원장 및 위원: 민간인

상근 직원 70명

Chapter:Committee

(23 committee members)

Honorary Chairman:

District Attorney General

Chairman, committee members:

Civilian personnel

70 Full-Time Staff

5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자원봉사자: 787명

정부기관 및 비정부단체가
협력하는 단체

Number of Volunteers : 787

An organiz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collaborates together.

정부기관:

검찰,
지방정부(현/시),
경찰,
사법원,
내정부,
보건복지부

Government Agencies include:

Prosecutors Office,
County and city government,
Police units,
Judiciary committee,
Ministry of the Interi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마스코트 :
애심조
2021년 공모

Mascot :
LOVELY BIRD
2021 Open Audition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3. 재원 Funding Source

- | | |
|--|--|
| 1. 기금 수익(이자) | 1. Fund Yield(income of interest) |
| 2. 정부 보조:
법무부,
복지부 편성 예산,
각 지검별 배정 예산 | 2. Government Subsidy:
Designated budget from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located annual budgets from
each Prosecutor's Office |
| 3. 민간기부금 | 3. Community Donation |

8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4. 보호대상 Protected Object

범법자: 갱생인(更生人)

Perpetrator : Ex-Offender

■ 피해자 : **형생인(馨生人)**

Victim : Rehabilitated Person

9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 중상해 피해자
2. 다음 순서에 따른 사망
피해자 유족:
 - (1)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조부모
 - (3) 손자녀
 - (4) 형제자매

* 2, 3, 4번 항목은 사망
피해자의 부양가족에 한정

1. Seriously injured victims.
2. Survivors of deceased victims.
according to the following
orders:
 - (1) Parents, spouse and children
 - (2) Grand parents
 - (3) Grand children
 - (4) Brothers and sisters

* Items (2) (3) (4) limited to who are
dependents of the deceased victims

중상해의 정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사지 또는 생식기의 기능, 그 밖에 인간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중대한 불치 또는 난치의 손상
serious injury defined as: destruction or disablement of visual ability, hearing
ability, sense of taste, sense of smell, or the functions of limbs or genital organs,
or other material incurable or difficult-to-cure injury to human body or health

10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3.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자
4. 타인의 고의 행위로
외국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3.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foreign spouse, foreign
workers, victim of human
trafficking.
4. Testament of the deceased
victim who passed away
abroad due to another's
intentional act.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5. 지원 항목 Service Items

■ 경제적 보상:

범죄피해보상금,
지원금

■ Compensation:

Victim support compensation,
aid.

■ 보호 지원:

1. 정착 및 주거 알선

■ Protection Service

1. Settlement and accommodation
arrangement ,

2. 사회적 지원/구호

2. Social Assistance/ Relief

3. 의료 지원

3. Medical Care,

4. 법률 지원

4. legal Assistance,

5. 보상 신청

5. Compensation Application,

12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보호 지원:

■ Protection Service

6. 조사 지원

6. Investigation Assistance,

7. 안전 보호

7. Safeguard,

8. 심리 상담

8. Psychological counseling,

9. 재활

9. Life Rehabilitation,

10. 신탁 관리

10. Trust Fund Management,

11. 긴급 자금 지원

11. Emergency Funding,

12. 보증서 발행

12. Providing Letter of Guarantee

13. 위로 방문

13. Comforting Visit,

14. 기타

14. others.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6. 혁신 지원 항목 Innovative Service Items

- | | |
|---------------------|--|
| 1. 긴급구제 보조금 | 1. Relief subsidy |
| 2. 소액대출
(5만~10만) | 2. Small loan
(50 Thousand~100 Thousand) |
| 3. 중상해 피해자 물품 지원 | 3. Provide relief supplies for
the severely injured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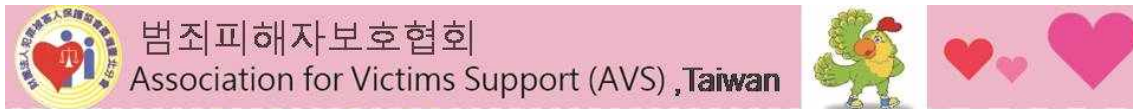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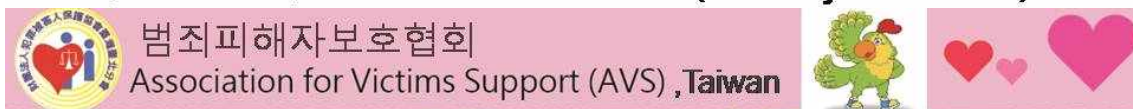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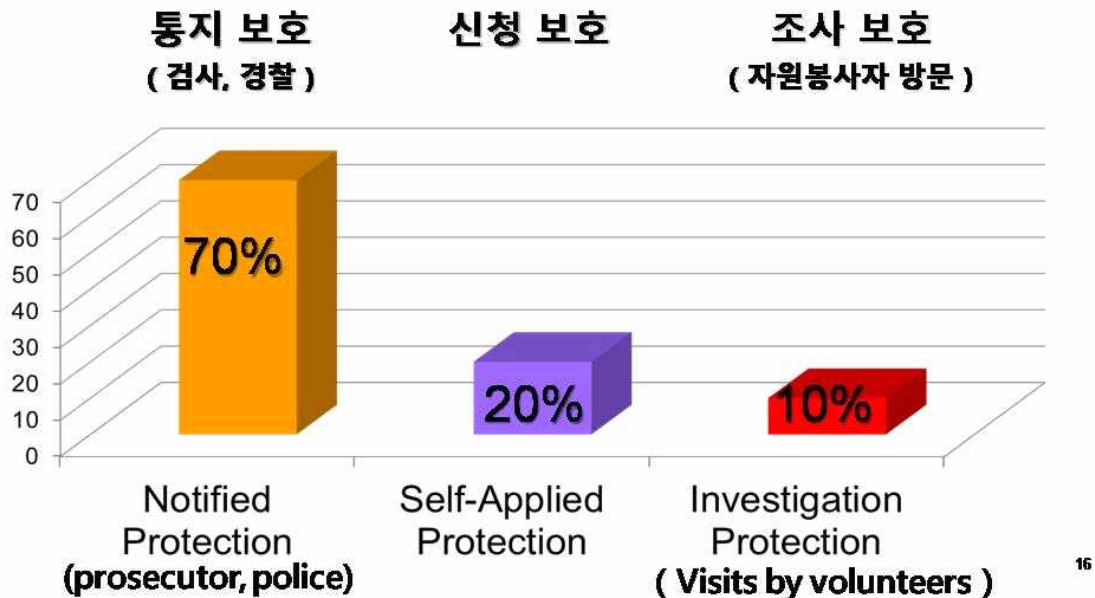
- | | |
|--------------------------|--|
| 4. 공휴일 돌봄 서비스, 연말
사은회 | 4. Holiday Care Services,
Year-End Appreciation Party |
| 5. 기술 및 직업 훈련 | 5. Skills and Talent Training |
| 6. 장학금 및 지원금 | 6. Scholarships and Grants |
| 7. 밴드 「형생인」 | 7. Victims' Music Band |



15



7. 사건 출처 Case Sources 2009 ~ 2021



0800 전국 무료 전화

0800 Toll-Free Services

0800-005-850

전화 주세요. 지켜드립니다.

Call Me, Protect You



★ 전화 시 자동으로 관할 지역에 따라 해당 분회로 연결

Calls will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local Chapter according to area of jurisdiction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8. 과거 지원 사례 Previous Service Cases 1999 ~ 2021

- 총 접수 건수: 42,202건
(매년 약 2,000건)

Total accepted cases : 42.202 Cases
(Approximately 2.000 cases per year)

- 총 지원 피해자 수: 1,236,987명
(매년 약 80,000명)

Total people served : 1.236.987 people
(Approximately 80.000 people per year)

18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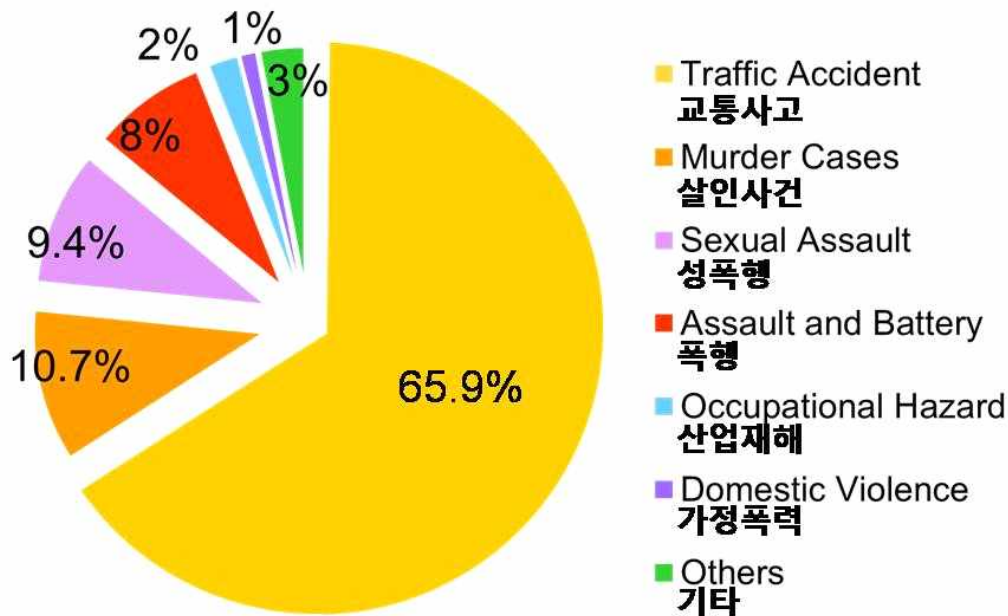
9. 사건유형 Case Types

- | | | | |
|---------|-------|-------------------------------|--------------|
| ■ 교통사고: | 65.9% | ■ <u>Traffic Accident:</u> | <u>65.9%</u> |
| ■ 살인사건: | 10.7% | ■ <u>Murder Cases:</u> | <u>10.7%</u> |
| ■ 성폭행: | 9.4% | ■ <u>Sexual Assault:</u> | <u>9.4%</u> |
| ■ 폭행: | 8% | ■ <u>Assault and Battery:</u> | <u>8%</u> |
| ■ 산업재해: | 2% | ■ <u>Occupational Hazard:</u> | <u>2%</u> |
| ■ 가정폭력: | 1% | ■ <u>Domestic Violence:</u> | <u>1%</u> |
| ■ 기타: | 3% | ■ <u>Others :</u> | <u>3%</u> |

19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20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0. 관련법 강화 Related Law Enhancements

■ 《범죄피해자보호법》

2002, 2009, 2011, 2013, 2015

20년간 다섯 차례 개정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2, 2009, 2011, 2013, 2015

Amended 5 times within 20 Years

■ 《2017년 사법개혁 국가회의》

「범죄피해자 및 취약자 보호법」

《2017 National Conference on Judicial Reform》

「Law that protects victims and the disadvantaged」

21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범죄피해자보호 방안 강화》
「회복적 사법」 확대
직원 교육훈련 강화

《 Enhanc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Program》
Promote “Restorative Justice”
Enhance Staff Education Training

■ 경찰 단위 확대 :
「범죄피해자보호관」

Increase Police Units :
「 Crime Victim Protection Officer 」

22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형사소송법》개정 :

「피해자소송참가권」
「재판 중 사생활 보호 및 분리」
「피해자 동행」
「참가인의 피고인 신문권」

《 Code of criminal procedure 》 Revised :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Privacy protection and isolation during trial」
「Companion measures for victims」
「Litigation participant's right to question the defendant」

23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중상해 유발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1년 이상 7년 이하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Stiffen penalty for repeated offenders of drunk driving resulting in serious injury》

From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7 years to more than 3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 《사망 유발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3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또는 무기

《Stiffen penalty for repeated offenders of drunk driving resulting in death》

From more than 3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to life imprisonment or more than 5 years

24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 《범죄피해자보호법》:

2022년 개정 예정

《 Crime Victim Protection Act 》 :

Amendments to be made in 2022

25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1. 과제 Tasks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디어 홍보 강화 2.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3. 비정부단체 협력 4. 인연 맺기, 자원 확보 5. 보호대상 확대 6. 보상신청 적극 고려 7. 협회 인력 확대 8. 국제 교류 활동 주최 및 참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nhance propaganda through media 2. Continuous education training for volunteers 3. Collaborate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4. Make good affinity with others and raise funds 5. Expand protected objects 6. Lenient measures for compensation application 7. Increase committee staff. 8. Host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
|---|---|

26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 팬데믹 대응 특별 지원 Special Servic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1 온라인 교육훈련 12-2 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12-3 가구 방문, 전화로 대체 12-4 취약가구 구호물품 전달 12-5 라디오 홍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1 Online education training 12-2 Care services applied online 12-3 Phone calls in replacement of visits 12-4 Provide relief supplies to disadvantaged families 12-5 Promote through radio |
|---|--|

27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1 온라인 교육훈련 Online education training



28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2 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Care services applied online



29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3 가구 방문, 전화로 대체 Phone calls in replacement of visits



30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4 취약가구 구호 물품 전달 Provide relief supplies to disadvantaged families



31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2-5 라디오 홍보 Promote through radio



32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13. 키워드 Keyword

정부로부터 가치를 인정 받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Valued by the government,
supported by the community!



33



범죄피해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Victims Support (AVS), Taiwan



We Can Help



감사합니다

Thank You

2

SESSION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G.S. Bajpai(라지브 간디 법학대)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발제문/원문】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in India

G.S. BAJPAI*

Until 1970s the victims of crime were not considered as an essential par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attitude started to change after the formation of the standalone discipline of victimology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victimology. From the past few decades, the field of victimology has witnessed a huge growth and also created revolution in many countries to deal with victims of crime. All over the world, countries have started recognizing the need for victim's services to help them in criminal justice system, to overcome the effects of crime victimization and to provide justice. But in India, still victims are not recognized as victims and there is no significant improvement of victim's posi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bout Victim's Services

Generally, victims of Crime, their families and dependents receive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e traumatic incident from social workers, counselors, psychologists, and other helping professionals across a range of settings, such as law enforcement, the court systems and community. Police based victim services are very essential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services at critical time i.e. immediately after the offense and during the investigation. Victim assistance services at the court level are provided during the hearings and focus primarily on case notification and advocacy, witness testimony, and crisis intervention. During the court processes, survivors, family members, and significant others may experience re-traumatization as a result of the court proceedings that bring up memories, emotional reactions, and psychological disturbance.

* Rajiv Gandhi National University of Law, Punjab (India) Vice-Chancellor

How victim's services can be organized in India

There is a need for collective and comprehensive effort by law enforcement agencies, policymakers, communities, etc. to provide services victims. Victim's services in India can be organized by having a separate legal and policy framework respects to victims, through which a specialized organization or institution can constituted to handle victims, ensure their rights, ensure their safety & security of victims, protect re-victimization and also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s to the victims of crime. Government can also organize victim's services through local self government to provide community based services to victims.

TYPES OF VICTIM'S SERVICES

India is still in the developmental phase with respect to recognizing victims as an essential part of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lso providing services to them. Services to victims are very limited and also some services are crime specific. Victim's services in India can be classified as followings:

1. Financial Assistance:

Victim's Compensation Scheme: After section 357 of CrPC, the following section has been inserted, namely- Victim compensation scheme- "357A. (1) Every State Government in co-ordin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prepare a scheme for providing funds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on to the victim or his dependents who have suffered loss or injury as a result of the crime and who require rehabilitation.

Restitution: Section 359 of the Code is regarding order to pay costs in non-cognizable cases. Under the Section whenever any complaint of a non-cognizable offence is made to a court, the court, if it convicts the accused, may, in addition to penalty imposed upon him, order him to pay to the complainant, in whole or in part, the cost incurred by him in the prosecution, and may further order that in default of payment, the accused shall suffer simple impriso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irty days and such costs may include any expenses incurred in respect of process-fees witnesses and pleader's fees which

the court may consider reasonabl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also be made by an Appellate Court or by the High Court or Court of Session when exercising its powers of revision. Other acts under which restitution is provided to provided to victims:

2. Medical Assistance: The criminal law amendment act, 2013 has made a provision under section 357C for providing treatment to victims. It provides that all hospitals, public or private, whether run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ate Government, local bodies or any other person, shall immediately, provide the first-aid or medical treatment, free of cost, to the victims of any offence covered under section 326A, 376, 376A, 376B, 376C, 376D or section 376E of the IPC.

3. Legal Assistance: The victim has a right to be represented by an advocate of his choice; provided that an advocate shall be provided at the cost of the State if the victim is not in a position to afford a lawyer. The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shall, inter alia, include:

- To produce evidence, oral or documentary, with leave of the Court and/or to seek directions for production of such evidence.
- To ask questions to the witnesses or to suggest to the court questions, which may be put to witnesses?
- To know the status of investigation and to move the court to issue directions for further investigation on certain matter or to a supervisory officer to ensure effective and proper investigation to assist in the search for truth.
- To be heard in respect of the grant or cancellation of bail.
- To be heard whenever Prosecution seeks to withdraw and to offer to continue the prosecution.
- To advance arguments after the Prosecution has submitted arguments.
- To participate in negotiations leading to settlement of compoundable offences.

4. Witness Protection Scheme: As victims in India are considered as witness, this scheme is available to victims as well, which protects the victims and their interests in some way. The scheme envisages that adequate security measures should be there for the safety of the witnesses.

5. Volunte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India, Volunte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lay a major role providing services to victims of crime as fail government provide services and assistance to victims are critical time. Mos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rovide following assistance and services to victims of crime:

- Help victims in filing a proper case
-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rights
- Help in legal process
- Med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 Coping skill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and PTSD

Guidelines for Victim Assistance – Rape Victims

In *Bodhisattwa Gautam vs. Subhra Chakraborty* (AIR 1996 SC 92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 court trying an offence of rape has jurisdiction to award compensation at the final stage, the Court also has the right to award interim compensation. The court, having satisfied the prima facie culpability of the accused, ordered him to pay a sum of Rs.1000 every month to the victim as interim compensation along with arrears of compensation from the date of the complaint. It is a landmark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issued a set of guidelines to help indigenous rape victims who cannot afford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 Declaration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 i) The complainants of sexual assault cases should be provided with a victim's Advocate who is well acquainted with the CJS to explain to the victim the proceedings, and to assist her in the police station and in Court and to guide her as to how to avail of psychological counselling or medical assistance from other agencies;
- ii) Legal assistance at the police station while she is being questioned;
- iii) The police should be under a duty to inform the victim of her right to representation before any questions are asked of her and the police report should state that the victim was so informed;
- iv) A list of Advocates willing to act in these cases should be kept at the police

station for victims who need a lawyer;

- v) The Advocate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rt, in order to ensure that victims are questioned without undue delay;
- vi) In all rape trials, anonymity of the victims must be maintained;
- vii) It is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Directive Principles contained under Art. 38 (1)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to set up a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Rape victims frequently incur substantial financial loss. Some, for example, are too traumatized to continue in employment;
- viii) Compensation for victims shall be awarded by the Court on conviction of the offender and by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whether or not a conviction has taken place. The Board will take into account pain, suffering and shock as well as loss of earnings due to pregnancy and the expenses of childbirth if thi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rape.

UJJAWALA: A Comprehensive Scheme for Prevention of Trafficking and Rescu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for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The components of scheme and pattern of assistance

1. Prevention: formation of community vigilance Groups to prevent victims from trafficking and creating awareness in the society through various media and techniques.
2. Rescue: Through formation of network of Police, NGOs, Women's Groups, Youth Groups, Panchayat, Hotels and tour operators etc., to gather information on traffickers, suspicious people and vulnerable families to rescue victims. The scheme will provide food, shelter, toiletries, clothing, trauma care/counselling, medical aid etc. during the interim period between rescue and production before the concerned authorities.
3. Rehabilitation:
 - Setting up of Protective and Rehabilitative (P&R) Homes – The P&R Homes would be set-up by the agency
 - Basic amenities – to provide basic amenities such food, clothing and other

items of personal use.

- Medical Care – This Scheme would provide Doctor’s fee, cost of medicines, hospitalization, appropriate linkages to de-addiction centres. Since the victims of trafficking undergo immense psychological trauma, professional counselling services would be provided through a qualified clinical psychologist and psychiatrist.
- Legal Aid– As victims are the main witnesses against the trafficker/pimp/perpetrator, or to claim their right to property, marital rights, divorce, maintenance and custody of children, they will need to be provided with legal aid which would include court work and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victims court case.
- Administrative Costs – To support small contingencies arising out of the project.
- Education – As a large proportion of the rescued victims are children, they will need to be inducted in to the formal or open school system, for which some expenditure on text-books, notebooks, stationary, school uniform and other incidental expenses may have to be incurred.
- Vocational Training and Income generation activities – in order to completely rehabilitate the victim it is necessary to provide alternate livelihood options. Therefore,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is provided.

4. Re-integration

- Setting of Half-Way Home – Half-Way Home is a Home within the community, where a group of victims, ready for reintegration, live and work out of this place. This is to facilitate smooth transition from the life in P&R Home to an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A Half-Way Home is for a group of victims who are gainfully employed and can live semi-independently with minimum supervision. This is a phased approach to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 Restoration to Families – The scheme would cover travel of the victim and an escort from destination area to her hometown/village, expenses incurred towards her food during her travel and incidental expenses.

5. Repatriation

- Facilitate repatriation procedures – The scheme would provide for expenses

incurred in fulfilling various formalities for obtaining repatriation order for the victim.

- Repatriation to country of origin – The scheme would cover travel of the crossborder victim and an escort from destination area to her country of origin or border, expenses incurred towards her food during her travel and incidental expenses.

EFFECTIVE METHODS IN DELIVERING VICTIM'S SERVICES

Following are the effective methods in delivering victims services:

Police Based Services: Immediately after the crime, victims first approach police for the filing case. Police should be trained and oriented in a way that they can provide proactive services to victims in that critical time. Police team should also have a social worker and psychologist to provide support and assistance to victims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of crime.

Victim's Services Organization: Government should create a specialized and national organization, which can provide services to victims and ensure that the services are reaching to victims at right time. India can also constitute a special post like "Victims Commissioner" like the United Kingdom or Australia to provide victims services and justice to victims.

Community Based Services: Government should empower local self government to provide community based services to victims of crime which will ultimately help in victims in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especially in case of victims of family and sexual violence, child victims.

ISSUES/CHALLENGES IN DELIVERING VICTIM'S SERVICES

- Victims are recognized as witnesses rather victims
- Inadequacy of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 in providing victim's services
- No specialized government organization to focus on victims and providing services to them.
-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courts are not trained to handle victims and

also to provide services to them.

- Lack of collabo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academia, which can help providing training and development support respect to providing services to victims.

【발제문/번역문】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G.S. 바즈파이*

1970년대까지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학 및 피해자 연구가 독립 분야로 형성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피해자학은 대대적으로 성장해 많은 국가의 범죄 피해자 지원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형사사법체계에 들어온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고 정의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외상을 겪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부양가족은 사회복지사, 상담사, 심리학자, 그 밖에 법집행, 법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피해자 지원에 기반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범죄 직후 및 조사 기간과 같이 중요한 시점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원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은 주로 심리 단계에서 제공되며, 사건 경과 안내, 피해자 변호, 증인 진술, 위기 시 개입 등에 중점을 둔다. 법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생존자, 그 가족, 연인 등은 사건에 관한 기억, 정서적 반응, 심리적 저해요인이 다시 나타남에 따라 또 다시 외상을 겪을 수 있다.

인도의 피해자 지원 조직 방식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 정책 입안자, 지역사회 등이 집단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의 경우 피해자에 관한 별도의 정책 및 법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통해 피해자 전문 조직 또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며,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 편자브 라지브 간디 국립법대 부학장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조직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유형

인도는 피해자를 형사사법체계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지원은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인도의 피해자 지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금전적 지원:

피해자 보상 제도: 형사소송법전(Code of Criminal Procedure, CrPC) 개정을 통해 제357조에 이어 피해자 보상 제도에 관한 제357조의 A를 삽입했다. (1) 모든 주 정부는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범죄로 인해 손실 또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서 재활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원상회복: 형사소송법전 제359조는 비인식 범죄 사건(non-cognizable case)에서의 비용 지급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비인식 범죄(non-cognizable offence)에 대한 기소가 법원에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 외에 고소인에게 기소로 발생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나아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30일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동 비용에는 법원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증인 수수료 및 청구 수수료 등 절차에 관해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은 항소법원(Appellate Court) 또는 수정권(power of revision)을 행사하는 고등법원(High Court)나 최고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이 내릴 수 있다. 피해자에 관한 원상회복을 규정한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2. 의료 지원: 2013년 형법 개정법(Criminal Law Amendment Act)에 따라, 피해자 치료에 관한 조항이 제357조의 C에 삽입되었다. 동 조항에 따르면 공공/민간 병원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역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를 불문하고,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 IPC) 제326조의 A, 376조, 376조의 A, 376조의 B, 376조의 C, 376조의 D 또는 376조의 E에서 규정한 여하한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또는 치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3. 법률 지원: 피해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피해자

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주 정부기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 관련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법원의 허가가 있을 시 구두 및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증거 제출에 관한 지시를 구할 권리
- 증인에게 질문하거나 법원을 대상으로 증인에게 제기할 질문을 제안할 권리
- 조사 현황을 알 권리 및, 법원에 대하여 특정 사안을 추가 조사하도록 지시할 것을 신청하거나, 담당 경관으로 하여금 진실 규명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올바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할 것을 신청할 권리.
- 부석 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검사측이 기소를 철회할 경우 의견을 제출하고, 기소 계속을 제안할 권리
- 검사측이 변론을 제출한 후 변론을 제기할 권리
- 합의 가능 범죄(compoundable offence)의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권리

4. 증인 보호 제도: 인도에서는 피해자도 증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 제도를 이용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증인 보호 제도에 따르면 증인과 피고인이 조사 또는 재판 중에 대면하지 않고, 증인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자원봉사자와 비정부 단체: 인도에서 자원봉사자와 비정부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가 중요 시점에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NGO가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고소 지원
- 피해자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
- 법적 절차 지원
- 의료 및 심리 지원
- 2차 가해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방지를 위한 대응 기술

피해자 지원 지침 - 강간 피해자

Bodhisattwa Gautam vs. Subhra Chakraborty (AIR 1996 SC 922) 사건에서, 대법

원(Supreme Court)은 강간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최종 단계에서 배상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면, 법원은 중간 배상을 인정할 권한도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일응 추정(prima facie) 조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중간 배상금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0루피아 및 고소일로부터의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기념비적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1985sus 유엔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상의 원칙에 따라 범죄 피해자 및 법률, 의료, 심리 지원을 구할 수 없는 강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침을 판시했다.

- i) 성폭행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에 정통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경찰과 법원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타 기관에서의 심리 상담 또는 의료 지원 이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 ii) 경찰에서의 피해자 신문 중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 iii) 경찰은 피해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경찰 조서에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했음을 기록해야 한다.
- iv)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변호사의 목록을 경찰서에 비치해야 한다.
- v) 법원은 피해자가 지체 없이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한다.
- vi) 강간 사건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성명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 vii) 인도 헌법(Constitution of India) 제38조 1항에 따른 지시 원칙(Directive Principle)에 따라, 범죄 피해 배상 위원회(Criminal Injustice Compensation Board)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강간 피해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따라 외상이 심해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 viii) 피해자 배상은 유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피해 배상 위원회가 인정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고통, 충격을 고려하며, 강간 결과 자녀를 임신 및 출산했을 경우 임신으로 인한 수입 상실과 출산 비용을 고려한다.

우자왈라(Ujjawala): 상업적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납치 방지 및 구조, 재활 및 재통합을 위한 포괄적 제도

제도의 구성요소와 지원 양상

1. 방지: 지역사회 감시단(community vigilance group)을 조직해 피해자 납치를 방지하고 각종 언론 및 기술을 통해 사회적 인식 고취

2. 구조: 경찰, NGO,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판차야트(Panchayat), 호텔 및 여행사 등으로 구성된 연결망을 구성하여 납치범, 수상 거동자, 취약 가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구조 이 제도는 또한 구조 이후 관계 당국 출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식품, 보호소, 화장실, 의복, 외상 치료/상담, 진료 등을 지원한다.

3. 재활:

보호재활소(Protective and Rehabilitative, P&R) 설치 - 해당 기관에서 보호재활소 설치

- 기본 편의 - 식량, 의복 및 그 밖의 개인용품 등 기본 편의 제공
- 의료 지원 - 진료비, 약제비, 입원, 중독치료센터 연결 등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임상 심리학자 및 정신과의사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률 지원 - 피해자는 피해자/포주/범죄자의 범죄에 관한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또한 재산권, 혼인권, 이혼, 자녀 양육권 등 주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법정 업무 및 문서 지원을 포함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행정 비용 -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정의 부대 비용 지원
- 교육 - 구조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식 학교 또는 개방형 학교 체계를 통한 교육을 받게 하고, 교과서, 공책, 문구류, 교복 및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을 지원한다.
- 직업 훈련 및 소득 창출 활동 -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생계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4. 재통합

- 사회적응시설(half-way home) 설치 - 사회적응시설은 여러 피해자가 재통합을 준비하며 생활하고 일하는 지역사회 내 시설이다. 사회적응시설의 목적은 보호재활소 생활에서 지역사회 내 독립 생활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응시설은 유급직에 고용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감독 하에 반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듯 지역사회에 대한 재통합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 가족 복귀 - 상기 제도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의 여비 지원, 그리고 고향까지의 동

행, 이동 중 식비 및 부대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5. 본국 송환

- 본국 송환 절차 촉진 - 상기 제도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소환 명령 획득을 위한 여러 절차 완료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지원한다.
- 출신국으로의 복귀 - 상기 제도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의 국제 여비 지원, 그리고 출신국 또는 국경까지의 동행, 이동 중 식비 및 부대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과적 전달 방식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과적 전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찰 기반 지원: 범죄 직후, 피해자가 우선 경찰에 신고해 고소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 중요한 시점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훈련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경찰 조직 내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를 두어 범죄 발생 직후에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단체: 정부는 국가 단위의 전문 단체를 설립해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원이 피해자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도에서도 영국 또는 호주의 "피해자 총감(Victims Commissioner)"와 같은 특별 직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지원: 정부는 지방 자치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기반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재활 및 재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전달에 관한 문제점/과제

- 피해자는 현재 피해자이기 보다는 증인으로 여겨진다.
- 피해자 지원 제공을 위한 정책 및 법률 제도가 미흡하다.
-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에 주력하는 전담 정부 조직이 없다.
- 법집행 기관 및 법원이 피해자를 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는다.
- 피해자 지원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 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법집행 기관과 학계 사이의 협력이 미흡하다.

2

SESSION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발 표 : Hans-Heiner Kühne(독일 트리어대)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발제문/원문】

The position of the victim in German Criminal Proceedings

Hans-Heiner Kühne*

I. Introduction

First of all, I have to thank the organization of this conference for the invitation which I have gladly accepted. This opportunity gives me the chance to look back and to hail the achievements of the early master minds of this valuable organization. These were Min KunSik and Miyazawa Koichi, two dear friends of mine for more than forty years. Miyazawa Koichi is, *he las*, no longer with us. But his spirit and the memory of his friendship is still very much alive. In spite of all historically based tensions between their two countries, Miyazawa and Min have founded this organization which has flourished for such a long time. These two great personalities as well as all of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have achieved very much in social, legal and political fields. It is my honor and privilege to support these activities by delivering my humble presentation.

II. The modern origins of victims' support in criminal law.

It is widely known that in the early sixties of the last century the US-President's commission on victim's rights has initiated world-wide a new interest in victims of criminal acts and their position in criminal proceedings. This was the beginning of a new scientific field: victimology. We will not dive into the discussion whether victimology is a scientific field of its own or a part of criminology, which is of mere theoretical interest. Nor will we look into the broader area of victimology, which comprises victims of any illegal or undesirable circumstances.

So, let us take the focus on victims of crime. Here the victimological discussion

* Prof. Dr. Dr. h.c.mult. University of Trier

has led to a number of amendments in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as other neighboring laws as victim compensation acts. I will try to give a short overview over these two fields in Germany and present the related discussion.

III. Victims' rights in Germany

1. In criminal proceedings

The initial critique regarding the position of a victim as a simple witness came from the Us, a system which is greatly different from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 number of problems by considering the US American points of criticism and amending the German law accordingly were arising there from. We will come later to that. But the starting point of the basic criticism was the same: the position of the victim in criminal position as a mere witness. It has been argued that this meant psychologically as well as legally a disappropriation of the victim's case. This argument seemed to be convincing and had psychological strength. Hence, in Germany and elsewhere the procedural position of the victim was enhanced – and still is in the process of being further developed.

Very soon this activity was seen to endanger the basic system of Germ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strengthening of the victim's procedural position collided with the position of the prosecutors. For very good reasons, about two hundred Years ago the prosecutorial authorities had taken over the position and the interests not only of the state but as well of the victim. The latter was very important to stop revenge and the spiral of counter-revenge by conveying the duty and the power of prosecuting a perpetrator to the state has been and still is the basis of social peace. Hence, the victim has not been disappropriated by the prosecutorial authorities, in the contrary, these authorities had to act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victims and to pursue their interests – yet, without the emotional involvements of a victim, which would be understandable, but socially detrimental.

So, was the new positioning of the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law just a misunderstanding?

A lawyer might agree to this question, because formally all interests of the victim

are cared for by the prosecutorial authorities. A sociologist or a psychologist might disagree, because in forensic practice the victim does not feel very much of being cared for. He/she is being questioned as a witness by the police and later by a judge, that is all. The victim hardly ever is given the feeling that it is his/her proceedings. In the contrary, criminal procedure law prior to the victimological movement was nearly exclusively dealing with the position of the accused. The bad historical experiences justifying this, the abuse of criminal law against innocent people for mostly political reasons, could be no real consolation for the victim, nor could forensic reality make this evident to the victim.

So, at the end of the day, it can be stated that the prosecutor as representative of the victim has not done a good job with regard to emotional sensitivities or, as psychologists would name it, existential orientations of victims.

Therefore it would have been nearby to include the victim procedurally into the work of the prosecutor, thus making him/her even legally more than a witness. Yet, the legislator in Germany as in most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has chosen a different approach. The position of the victim has been promoted to an actor on own rights in main trial.

a. Victims' Rights in German Criminal Procedure Law

According to actual law the victim is endowed with the following rights:

- Private prosecution by the victim is possible in minor crimes, which the prosecutorial authorities mostly do not prosecute. Here the victim can take the prosecutor's position, yet without having access to the police and their support. Additionally, the victim has to forward procedural costs. The victim, then, may apply for main trial at the regional court – which mostly is not successful. The prosecutor may take over the case any time. For these reasons private prosecution never has been attractive. Indeed, private prosecution has never intended to protect the victim but meant to grant to the prosecution exceptions from the principle of legality, referring to the old Roman principle of “*minima non curat praetor*”.
- Accessory prosecution is reserved for serious criminality and high personal damages, exclusively enlisted in § 395 I StPO. Here the victim may decide

to formally second the prosecution. The appli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has to be granted by the court, § 396 StPO. In other case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victim, the victim may apply as well for this position, but the court has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negative impact of the crime has been sufficiently strong, §§ 395 III, 396 II StPO. The right of application in special cases is conferred to close relatives of the victim, § 395 II StPO. Since the Law for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for Victims in Penal Proceedings as of December 24th, 1989, § 397 I StPO the accessory prosecutor has the right to inspect files with the assistance of a lawyer, and to apply to the court, which includes motions to take evidence or applications for remedies. Additionally, the victim in this position has the right to be assisted by a counsel who will be paid by the state. Yet, the access to police is reserved for the main prosecutor, but the accessory prosecutor is free to motivate the latter to ask the police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 in main trial, to ask the court to take evidence. Since 2017 the 3. Victim's Protection Law as of 2015 provides the possibility to grant to the victim an expert for psycho-social support, if the court sees a necessity.

- In general, every victim has the right to be informed about the details of proceedings and their result. Especially the latter is of great importance. The victim of violent acts has a natural interest to get to know, whether an accused has been tried or acquitted – and in the former case how long a prison service will protect him/her from further acts of violence or revenge.
- Any victim has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a lawyer of her/his choice in main trial or during investigations when the victim is interrogated, § 406 f StPO. The position of such lawyer is not at all identical with the one of the accused's defense counsel, but much more limited. §§ 409 f StPO is enumerating these options. Accordingly, the victim's lawyer has a right to inspect files only as far as the court or the prosecutor accept the necessity of such a demand; yet, the counsel has the right to presence in main trial, but during investigation only at the occasion of the interrogation of the victim – if this will not endanger investigations. Although the right to ask questions in main trial is not mentioned in the law, the Supreme Court has held (BGH NStZ 2005, 3222) that the presiding judge may allow this. § 406 g StPO is

authorizing the court to assign a psycho-sociological assistant to the victim during main trial. This may be done *motu proprio*, this means on the initiative of the court's, or prompted by an application of the victim, if the court finds that there is such a necessity. On special application the victim has to be informed about the outcome of the proceedings as far as they concern him/her, § 406 d I StPO .

b. Assessment

We have seen, that a strong position of the victim is only given when the victim is able to enter as accessory prosecutor. The strongly hailed possibility to assign a psycho-sociological assistant to the victim – notwithstanding his/her procedural position – certainly will help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to better endure proceedings in which he/she has to report in detail about the painful experienc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since long German policemen, prosecutors and judges – the latter on a voluntary basis – are being trained in a sensitive conduct wi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Putting aside the before mentioned structural problems, the extent of victim protection in German Criminal Procedure Law is not too bad.

2. In Compensation Law

For sure, all victims have their legal rights to be compensated for their damages by those who have caused the damage, the perpetrators. But we know, that those who are responsible mostly do not have the mean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refor regularly it does not make sense for victims to raise a damage claim – this normally would mean that the victim additional to the original damage will have to pay as a substitute debtor for fees and other procedural costs. This is why state-run compensation scheme are extremely important, demonstrating that the state is not limiting its efforts by sanctioning the perpetrator and by this satisfying emotional but is willing to compensate economic needs of the victims, too. Both needs are in many cases of existential importance. It seems to be evident that it is

easier to satisfy economic damages. But, looking at the German Criminal Compensation Act, this assumption proves to be not quite right. Although, material as well as immaterial damages can be compensated the assignment of a respective title is only conceded under a number of basic restrictions which make it complicated as to the factual proof of damage as well as to the administrative course of actions which at the end of the day are finalized by the Social Court (Sozialgericht). The whole Act should rather be called Damage compensation inhibiting Act.

Especially § 2 OEG is demonstrating this by identifying reasons which are excluding any compensation.

Whereas it basically does make sense to exclude damages which have been caused by the victim, a wide field to deny any claims is opened by the second part of § 2 I OEG, when it reads that no compensation shall be granted if this would be unequitable (unbillig). Especially in cases of sexual crimes this provision makes it easy to assume that due resistance of the victim could not be seen, making compensation demands unreasonable or unequitable. Unnecessary to explain that this is the least we could need in the field of sexual violence!

At first sight § 2 I No 3 OEG is justified when excluding any compensation for victims who have been victimized as active or former members of organized crimes or groups of violent activities, unless the victim proves that such a membership is not 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victimization. But as such a membership must not be proven to a full extent like by a former conviction, a mere suspicion will be sufficient to apply this exclusion. Criminology shows that with an absolute majority, crimes occur in underprivileged groups within the lower stratum of society. Consequently, these members of society are widely excluded from victim compensation.

At last, § 2 II OEG excludes any claims if the victim has not sufficiently cooperated in the investigation or has not immediately notified the police. Another open field for subjective assessments. I must not remind you that in cases of sexual violence, which are perpetrated frequently between persons socially or personally well relate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victim to decide to inform the police and might take some time.

Another obstacle follows indirectly from § 2 ORG. In a number of cases the

perpetrator cannot be identified, or evidence does not suffice to try a suspect in court. Here the compensation authorities up to the social courts have a strong tendency to take these circumstances as instruments to deny any claim. In both cases the negative argumentation uses to be: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damage of the applicant has been caused by a crime. A real victim of a crime will find this cynical and would counter-argue: why should I suffer from the deficits of police and prosecutors' work? Yet, the argumentation of the authorities does serve as a formal and decisive deliberation – and it is saving state's money.

After all, it is not surprising when the expenses out of the budget of state-based victim compensation at a yearly basis are relatively low. Statistics, *helas*, are insufficient as due to the federal structure of Germany different data systems which are not comparable are used. Additionally, there are different budgets available for economic damage, for psychological damages, for advice and so on. Yet,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victim care report that best chances for victim compensation are with police officers who have suffered damages on duty, whereas “private” victimized persons mostly fail to comply with the complicated requirements of the law.

In contrast the most prominent private German victims' support organization, the White Ring (Weiner Ring) is much easier ready to support victims of crime. Furthermore, it is granting benefits to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easing pain of victims by paying for vacations in health or wellness resorts. That organization leaves the decision to help and to compensate to the discretion of the local staff members who mostly are working at an honorary basis. Thus, help can be granted fast and efficiently. The organization has decided for this scheme and accepted the danger of abuse. As I have been working as an expert for the White Ring for a number of years, I dare say that the experience of the staff members together with the fact that they are normally approached shortly after the crime, has produced many more correct decisions than those of the official compensation authorities ever have achieved. Hence, in Germany the private organization White Ring is granting more, easier and better help to victims of crime as the official compensation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OEG. It could be speculated whether or not this situation has left the legislator at ease and prevented a necessary renovation of the

OEG.

3. General social support

In spite of the above-mentioned deficiencies, it cannot be ignored that Germany's social law provides a close meshed net for the needy. Hence, nobody in Germany, be he/she a victim of crime or of adverse circumstances, has to suffer from hunger, homelessness or lack of health-care. The federal and state-based social budgets, accordingly, are extremely big and fully exhausted every year.

【발제문/번역문】

독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한스-하이너퀴네*

I. 서론

우선 이번 심포지엄에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이 귀중한 학회를 초창기부터 이끌었던 두 석학의 업적을 돌아보고 기릴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은 바로 저와 40년 넘게 소중한 우정을 나눈 민건식 교수와 미야자와 고이치 교수입니다. 미야자와 고이치 교수는 슬프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그리고 그와 나눈 우정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미야자와 교수와 민건식 교수는 이 학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그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미야자와 교수와 민건식 교수를 비롯한 피해자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사회, 법률, 정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활동에 이번 발표를 통해 힘을 보태게 되어 영광입니다.

II. 형법상 피해자 지원의 현대적 기원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미국 피해자권리 위원회는 범죄 피해자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점하는 지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문 분야인 피해자학이 생겨났습니다. 피해자학이 그 자체로 학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범죄학의 일부에 불과한가는 단순한 이론적 문제이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모두 망라하는 광의의 피해자학을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이번 발표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해자학 논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과 피해자보상 관련법 등 다양한 인접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독일을 대상으로 방금 말씀 드린 두 가지 분야를 간단하게 개관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트리어대학교 명예교수

Ⅲ. 독일에서의 피해자 권리

1.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피해자를 단순한 증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은, 대륙법계와 매우 다른 법체계를 지닌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독일법을 개정하는 데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비판의 시작점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법에서 피해자가 단순한 증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증인으로만 보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탈전유(disappropriation)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심리학적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가 강화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강화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위협한다는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 강화가 검사의 지위와 충돌했던 것입니다. 약 200년 전, 당시 검찰은 국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와 이익도 대변하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기소 의무와 권한을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사적 보복과 그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회의 평화를 위한 기본에 해당합니다. 즉, 검찰이 피해자를 탈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이익을 대변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회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은 오해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법조인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형식상 피해자의 모든 이익은 소추기관이 돌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는 아니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실무에서 피해자는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그다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그저 경찰로부터, 그리고 이후에는 판사로부터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을 뿐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절차를 자신의 절차로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학 운동 이전의 형사소송법은 거의 전적으로 피의자의 지위만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유로 무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형법을 악용한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역사적 근거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 이러한 역사가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검사는 피해자의 정서적 감수성 내지는, 심리학자가

할 법한 말이지만, 피해자의 실존적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검사의 업무 절차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증인 이상의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자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위를 재판 절차상 고유한 권리를 지닌 주체로 승격한 것입니다.

a.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의 피해자 권리

실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닙니다.

- 경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적 기소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적 기소의 경우 피해자가 검사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경찰의 지원은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해당 절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한 피해자는 지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 검사가 어느 때에나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적 기소는 과거에도 지금도 매력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사실 사적 기소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minima non curat praetor* (법관은 사소한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로마법상 원칙에 따라 기소법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보조 기소(accessory prosecution)는 범죄가 중하거나 인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로서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1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식으로 참여의 의사표시(second)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소 참여 신청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6조).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우에도 기소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참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95조 3항 및 396조 2항). 경우에 따라 신청권은 피해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5조 2항). 1989년 12월 24일에 형벌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개선을 위한 법률(Law for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for Victims in Penal Proceedings)이 시행된 이후로, 보조기소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증거 조사 신청 또는 구제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소인인 피해자는 국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지원은 검사에게 국한됩니다. 다만, 보조기소인은 자유롭게 검사로 하여금 경찰의 추가 조사를 요청하

거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2015년 피해자보호법(Victim's Protection Law)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에게 전문가의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절차 경과와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절차 결과에 대한 정보입니다. 폭력행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유죄일 경우, 피의자가 수감되어 자신이 또 다른 폭력행위나 보복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 모든 피해자는 재판 과정이나 수사중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변호인의 지위는 피의자 변호인과 다르며, 훨씬 제한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09조의 f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인은 법원이나 검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조사 중에는 조사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 신문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신문권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대법원은 주심판사가 피해자 변호인의 신문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BGH NStZ 2005,3222). 또한 형사소송법 제406조의 g에 따라 법원은 재판 중에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학 전문가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motu proprio*에 의하여, 즉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 신청의 경우, 피해자가 관련된 절차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6조의 d 1항).

b. 평가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자의 지위 강화는 피해자가 보조기소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회심리학 조력인을 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절차상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진술해야 하는 경험을 더욱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언급할 중요한 사실은 오랫동안 독일의 경찰, 검사, 판사는 (성)폭력 피해자 감수성 교육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판사의 경우 필수 교육은 아님).

앞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를 차치하면, 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의 수준은 나쁘지 않습니다.

2. 보상법상 지위

피해자가 모두 자신에게 피해를 준 범법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배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각종 수수료 및 절차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운영하는 보상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상제도는 국가가 범죄자를 제재하고 피해자의 감정만을 돌보는 데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적 필요까지 보상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감정적 필요와 경제적 필요 모두 실존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일견 두 가지 피해 중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일 형사보상법(Criminal Compensation Act)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의 경중을 떠나 보상은 가능하지만, 보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따라서 복잡한 피해 사실 입증 및 사회법원(Sozialgericht)에서 최종 판결되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보상법을 차라리 '형사보상제한법'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점은 제2조에 규정된 보상 배제 사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유발한 피해는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동법 제2조 1항의 2문의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unbillig)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체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않아 보상 청구가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쉽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일은 성폭력 영역에서 전혀 필요치 않은 일입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 1항 3호에 따르면 범죄조직 또는 폭력단체의 전현직 일원으로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그 소속 사실이 피해 과정과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일견 이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 및 단체 소속 사실은 전과 등에 의해 완전히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소외집단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자 보상 범위에서 대거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 2항의 경우 피해자가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폭력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도 간접적으로 형사보상에 대한 장벽에 해당합니다. 사건에 따라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법원에 있는 보상 결정권자들은 해당 상황을 청구 기각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두 경우 공히,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피해가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범죄의 실제 피해자는 이 주장에 냉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사가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인데 왜 제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사회법원의 주장은 정식 결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도 절약해 줍니다.

국가 피해자 보상 예산에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관련 통계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 피해, 심리적 피해, 자문료 등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돌봄 관련 실무자들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직무 중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피해자들은 법률에 규정된 복잡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 가장 저명한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하얀 고리(Weiner Ring)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준비를 더욱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또는 웰니스 리조트에서 휴양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사회적, 심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얀 고리에서 보상 및 지원 결정은 대부분 명예직으로 근무하는 현지 직원이 재량적으로 내립니다. 따라서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얀 고리는 이 제도를 결정하고, 남용의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하얀 고리에서 전문가로 여러 해 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말씀 드리자면, 하얀 고리 직원들의 경험, 그리고 범죄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만난다는 점으로 인해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보상 당국이 내리는 결정에 비해 훨씬 정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민간 단체인 하얀 고리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공식 보상당국에 비해 더 많은, 그리고 더 쉽고 더 나은 지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입법부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형사보상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일반 사회적 지원

위에서 언급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회법이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촘촘한 안

전망을 마련해 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범죄 피해자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배고픔이나, 집이 없거나, 진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사회 예산은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소진됩니다.

종합토론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사회자 : 김지선(행정원)

토론자 : 김진희(춘천지검), 심보영(경찰청)

송귀채(서울북부센터)

한국피해자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경찰청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종합토론】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김진희*

I. 서론

해외의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발표자의 상세한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일선 실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또 우리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도입하였고,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해외 각국의 피해자지원제도와 비교하여 우리 법상 개선할 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1. 개관

검찰은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①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구조금, 경제적 지원, ②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적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심리지원, ③ 주거지원 ④ 신변보호 ⑤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지원과 법률지원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절차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단계 내용	범죄발생 직후	수사단계	공판단계	형집행	출소 후	
손실복구 (경제지원)	경제적 지원 치료비(5주 이상)·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지원					
심리치유	심리치료 정신건강 치료비, 심리상담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경제적 지원 中 심리치료비)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 지원					
	범피센터 연계 자조모임 등 상담지원					
주거지원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신변보호	이전비 이사비 실비 지원					
	위치확인장치 손목착용형 위치확인장치 지원					
	보호시설 일정기간 거주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금 치료비·생활비·전직비용 등을 지원					
	수사기관동행 참고인 진술		법정동행 증인출석 시			
	경찰 신변경호 등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가명조서 - 인적사항 불기재	공판조서 - 인적사항 불기재 등 - 비공개증언			
피해자 의사확인	피해자 수요 확인, 정보제공 필요 확인					
형사절차참 여	피해자인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해자 참석·진술, 참고인 진술	피해자 공판절차 진술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처분결과, 구금상황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출소통지		
그 외 지원		형사조정				
			배상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법률상담				

2. 주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내용

가. 경제적 손실 보상

1) 범죄피해구조금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⁵⁾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액수는 피해자의 월 평균 임금 및 피해의 정도,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2)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인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일정 기간 동안의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범죄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바, 현재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는 검찰에서, 그 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범죄피해자가 범죄에 관한 진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절차와 대위소송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지원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각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제적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권리를 대위하며,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직접 가해자를 대상으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소송)을 직접 진행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나. 심리지원

범죄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피해자는 검찰,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된 심

5)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정

리치료전문가(기관)에서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특화된 스마일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

1)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통지⁶⁾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를 조사, 면담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의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형기 종료 후 출소상황 등을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2) 신뢰관계자의 동석, 가명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시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고⁷⁾,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에 피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⁸⁾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 및 기소 후 증거 제출 전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법률상 권리는 아니나 대검찰청의 ‘사건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⁹⁾ 등에 따라 일정한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판절차진술권¹⁰⁾

피해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 (2017. 3. 14.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7)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

8)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9) 동 지침 제3조 제1항, 제4조

10)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사생활의 비밀,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비공개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해자를 참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관에게 요청하고, 공소제기 이후 공소유지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법관에게 피해자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서 선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참여 시 의견진술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의견진술권, 증거보전절차 의견진술권, 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 의견진술권,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등의 법률상의 권한을 가집니다.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범죄피해자 중 ① 13세 미만의 아동,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진술조력인¹¹⁾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 및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피해자,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검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할 수 있고(피해자 보호시설), 거주를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전비).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정 출석 시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법정동행), 비상시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위치확인장치를 교부받거나, 경찰로부터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은, 각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이 형사분쟁에 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11)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바. 주거지원

범죄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LH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추천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우선공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가.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운영

검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절차적인 편익을 위하여, 범죄발생 직후 응급지원부터 단계별 필요한 법률 지원과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지원은 수사 및 공판절차, 재판 종료 이후까지도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심리지원 등)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나. 범죄피해자지원 네트워크

검찰은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구조공단 및 각종 사회단체 등 유관단체와 협력 하에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4. 해외 각국의 피해자지원 제도와의 비교 검토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일본, 대만, 인도, 독일의 피해자지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각 국가마다 다양한 고민과 고유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제를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본, 독일, 인도에서 형사절차 중 특히

공판 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직접 참여를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하에는 현행 우리 제도하에서의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의 내용을 위 외국 사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Ⅲ.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1. 문제의 소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형사사법절차가 법원, 검찰, 범죄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는 입증의 방법 내지 증인과 같은 소극적인 지위에만 머무르고 있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점에 대한 고민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지위를 고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세계적인 논의 따라 우리 헌법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소송의 절차 내에서 피해자는 서류의 열람·등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공판정에서의 피해자등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피해자등의 의견진술(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위와 같은 권리는 대부분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오늘 발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 독일, 일본, 인도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가. 독일의 보조기소제도(accessory prosecution)

독일의 경우 보조기소(accessory prosecution)¹²⁾ 제도는, 일정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증거조사 또는 구제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¹³⁾

12) ‘부대공소제도’로 번역한 예(「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 이진국,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1호, 2018. 6. 등 참조)도 있으나 본 토론문은 피해자학회에서 제공한 번역문 기재에 따라 표기함

13) 학술대회 Session2 발제자료 : The position of the victim in German Criminal Proceedings, Presentation at

즉, 법원의 승인에 따라 기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제한 없이 공판심리에 출석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서 직접 피고인,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며, ▲피고인 및 검사와 함께 증거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장의 명령이 위법함을 들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법관이나 감정인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참여 대상 범죄에 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¹⁴⁾

나.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일본 피해자참가 제도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와 달리 피해자 참가인이 사실인정에 관한 조사에 관여할 수 없고 상소권도 인정되지 않지만, 범죄사실 이외의 정상(일반정상)에 관하여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하거나 의견진술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¹⁵⁾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하면 법원이 참가를 결정하고, 이 경우 참가인은 ▲공판기일 출석하여 검찰관의 옆 또는 뒤에 착석하여 공판에 참가하며, ▲검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정상에 관한 사항에 한해 증인 및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고, ▲검찰관 논고 후 공소사실로 특정된 사실 범위 내에서 사실 또는 법률적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¹⁶⁾

일본은 피해자에게 직접 공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검사와 협의하여 정상에 관한 사항에 한해 직접 신문을 허용하는 등 기존 형사절차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피해자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 형의 집행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 “가석방의견청취제도”, “피해자심정전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바, 현재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출소일자를 알려주고,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의 ‘가석방 불원’의 민원이 접수되면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우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the Victims' Symposiums of April, 29th 2022 in Seoul, Prof. Dr. Dr. h.c.mult. Hans-Heiner Kühne, University of Trier

14)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 이진국,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1호,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피해자 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박미숙, 이진국, 형사정책연구원 2015. 12.

15) 학술대회 Session1 발제자료 : 日本における被害者学と被害者支援－過去・現在・未来, 日本被害者学会理事 長,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太田達也

16) 정유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 56집

다. 인도의 경우

인도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¹⁷⁾

- 법원의 허가가 있을 시 구두 및 문서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증거제출에 관한 지시를 구할 권리
- 증인에게 질문하거나 법원을 대상으로 증인에게 제기할 질문을 제안할 권리
- 조사 현황을 알 권리 및, 법원에 대하여 특정 사안을 추가 조사하도록 지시할 것을 신청하거나, 담당경관으로 하여금 진실규명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올바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할 것을 신청할 권리.
- 보석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검사측이 기소를 철회할 경우 의견을 제출하고, 기소계속을 제안할 권리
- 검사측이 변론을 제출한 후 변론을 제기할 권리
- 합의가능범죄(compoundable offence)의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권리

3. 우리나라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

전술한 바와 같이 성폭력·아동폭력 범죄 피해자 이외의 다른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이외에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①공판기록의 열람·등사, ②공판정에서의 피해자등의 진술권 및 ③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습니다.

가. 공판기록의 열람·등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으며,

17) 학술대회 Session2 발제자료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in India, Prof (Dr.) G.S. BAJPAI

이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나. 피해자등의 진술권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1)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94조의2).

다.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34조의10).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위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34조의11).

라. 검토

독일, 일본, 인도의 경우 모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형사소송절차에 피해자가 직접 참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등 직접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공판서류의 열람등사, 증인신문 절차에 의한 진술권, 또는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의견진술 기회만을 부여하고 있고, 이마저도 그 행사여부 및 행사의 범위와 방식이 모두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참여의 방식도 이미 확보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에 답을 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의 의사가 공판절차에서 제대로 표현되거나 그 내용이 반영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 상 참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의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

검찰에서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2017. 2.경부터 범죄피해의 영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공판의 양형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는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는 살인, 중상해, 강도, 지속적 장기적 피해발생범죄(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및 검사가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지원담당관, 심리전문가 등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함과 동시에 피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미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관계적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양식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범죄피해 의견진술서」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① 심리적 피해(트라우마, 스트레스, 우울증 등), ② 신체적 피해(사망, 장애, 상해, 후유증 등), ③ 경제적 피해(치료비, 장례비, 교통비, 이사비 등), ④ 사회관계적 피해(학업단절, 직장손실, 가족해체, 친구나 이웃 관계에 미친 영향 등), ⑤ 2차 피해(가해자의 접촉이나 보복 위협 등) 등 종합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도 시행 후 살인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서가 활용되었고, 피해자는 스스로 위 진술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검찰청 범죄피해자 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으며, 기소 이전에 작성된 경우 검사의 결정에 반영하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맺음말

그 동안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직접 참여의 문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의 직접 참여로 인한 절차의 지연, 재판 절차가 피해자의 사적 복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피고인이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더하여 피해자의 사적 책임추궁까지 감당해야 함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인 면이 고려되어 왔습니다.

반면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알고 있는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촉진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회복 및 공익의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도 존재합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 살펴 본 독일, 일본, 인도의 경우도 위와 같은 피해자 참여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식 등에 있어서는 조율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소극적인 서류 열람등사, 의견진술권 등은 과거보다는 진일보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객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관점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의 방식으로는 위 외국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권 행사에 대한 법관의 재량범위를 조정하고 현재 피해자의 진술권이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보석심문절차, 가석

방심사절차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실질화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학계와 실무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

【종합토론】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심 보 영*

*경찰청

【종합토론】

외국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종합토론

송 귀 채*

1. 일본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질문

오랫동안 한국피해자학회와 학문교류에 힘써오신 오오타 타츠야(Ota Tatsuya)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당시 일본의 초기 「범죄피해자 급부금지급법」(犯罪被害者給付金支給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입법 초기와 같이 현재에도 사망자 유족피해자, 장해피해자, 중상해피해자를 국가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구조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에도 급부대상을 유족급부금, 장해급부금, 중상병급부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행 일본의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적 개선과제는 무엇입니까?.

2.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질문

바쁘신 중에도 '인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바즈파이(G.S. BAJPAI)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도 「형사소송법」은 인식할 수 없는 범죄(non-cognizable offence)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기소비용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별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도 「형법」에서 규정한 공공과 민간 병원이 피해자에게 무상치료를 제공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3. '독일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질문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피해자학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일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스 하이너 쿨네(Hans-Heiner Kühne) 교수님의 발제를 직접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를 위한 사인기소(Privatklage)와 보조기소(Nebenklage)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복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범죄피해자 보상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금수혜 대상이 되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제와 질의에 응답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